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 및 연구회 기관평가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편람

2020. 1.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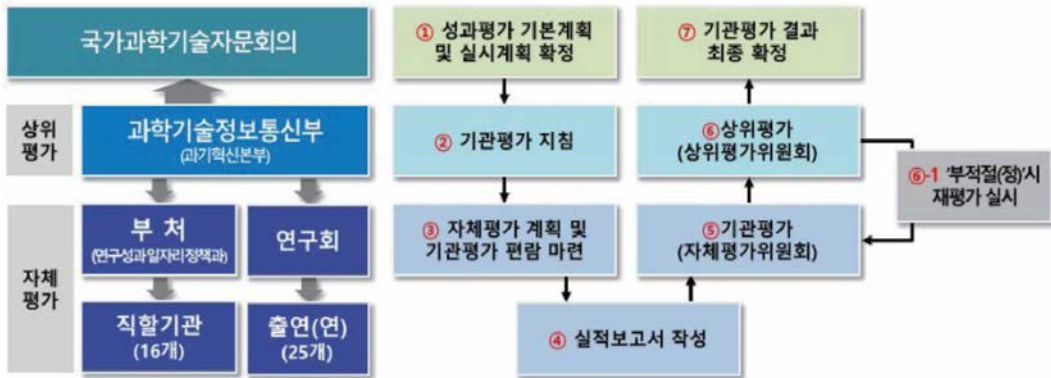
I. 임무중심형 평가체계	1
1. 임무중심형 평가 개요	1
2. 부문별 평가 개요	4
3. 평가결과 활용	5
4. 평가 지적·권고사항 이행관리	8
II. 종합평가 개요	9
1. 평가목적	9
2. 평가근거	11
3. 평가대상	12
4.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13
5. 이행계획서 제출	27
III. 실적보고서 작성 방안 (평가대상기관)	30
IV. 종합평가 방안 (평가위원)	43
【붙임1】 종합평가 실적보고서 작성 양식 (대상기관용)	71
【붙임2】 종합평가 평가의견서 작성 양식 (평가위원용)	126
【붙임3】 수요자 집단 선정 양식 (대상기관용)	165
【붙임4】 목표 달성도 검토 양식 (평가위원회용)	166
【붙임5】 목표 달성도 소명의견서 작성 양식 (대상기관용)	175
【붙임6】 정성평가 소명의견서 작성 양식 (대상기관용)	180
【붙임7】 정성평가 소명의견 검토의견서 작성 양식 (평가위원용)	185
【붙임8】 종합평가 시정조치 이행계획 양식 (대상기관용)	192
【붙임9】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종합평가·중간컨설팅) 지침	196
【붙임10】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및 연구회 자체평가 세부추진계획	228

I 임무중심형 평가체계

1. 임무중심형 평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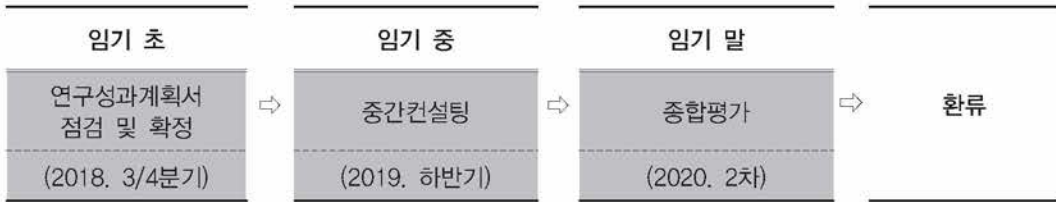
- ⊖ 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장 임기 주기에 따른 고유임무 중심의 맞춤형 기관평가 실시
- ⊖ 기관평가는 부처의 자체평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상위평가로 운영
 - (상위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및 이를 바탕으로 ‘연구성과계획서, 중간 컨설팅 및 종합평가 지침’ 마련
 - (자체평가) 부처는 과기혁신본부의 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편람을 마련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상위평가) 부처·연구회의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점검

《 기관평가 체계도 》



- ⊖ 신임 기관장 취임 후 임기 내 달성 목표를 명시한 연구성과계획서를 확정하고, 기관의 중간컨설팅(자율 점검 및 컨설팅)을 거쳐, 임기 말 종합평가(총 3회 차수별 실시)를 실시하는 절차로 추진

《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추진 절차 (예시) 》



※ '18년 1/4분기 부임, 임기 3년인 경우

※ 임무중심형 평가제도는 '18년도 3/4분기 연구성과계획서 확정 대상기관 이후 종료되어 신규 제도로 개편되며, '20년도에는 총 16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기관운영 계획서와 연구사업 계획서 작성 예정

《 임기중심형 평가 절차 》



《 2020년도 평가 종별 대상기관 》

부문	대상기관
기관운영계획서 수립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과학원(KIAS) 기초과학연구원 (IBS)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과학원(KIAS) 기초과학연구원 (IBS)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중간컨설팅 평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뇌연구원(KBR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COMPA) 한국나노기술원(KANC)
종합평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수리과학연구소(NIMS)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 연간 평가 일정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중간컨설팅	연중 실시 (기관별 자율 선택)											
종합평가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자체		상위	자체		상위	자체		상위			

※ 일정은 실제 기관장 취임·퇴임 시기 및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기관운영계획서, 연구사업계획서 수립은 임기중심형 평가 제도가 아닌 신규 제도 적용

《 기관장 중도 사퇴 시 평가방안 》

사퇴 시기	실시 방안	평가결과 활용
취임 ~ 취임 후 1년 6개월	평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능률성과급은 직전 평가 결과 활용 기관장 성과연봉 미지급 원칙
취임 후 1년 6개월 ~ 임기 만료	사퇴 후 최초 평가 차수에 종합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성과연봉 및 직원 능률 성과급은 종합평가 결과 활용

2. 부문별 평가 개요

- ⊖ **(연구성과계획서 점검)** 기관장 부임 직후 임기 중 달성해야 할 연구지원 및 연구·사업부문의 성과목표를 포함한 연구성과계획서 작성·확정
 - 고유임무와 부합하는 중장기 비전 및 기관장 임기 내 달성목표에 대한 경영목표체계를 제시하고, 기관경영의 준거로 활용
 - 추진 시기 : 기관장 부임 후 6월 내 확정
 - 결과 활용 : 기관장 임기 중 경영활동의 준거로 적용
- ⊖ **(중간컨설팅)** 기관장 임기 중 당초 수립한 연구성과계획서에 대한 자체 중간성과 점검과 추진 방향 조정 및 미래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외부 전문가 컨설팅 자율 실시
 - 추진 시기 : 종합평가 실시 6개월 전까지 결과 제출
 - 결과 활용 : 연구성과계획서 수정 및 향후 종합평가 시 활용
- ⊖ **(종합평가)** 기관장 임기 말, 연구성과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 및 연구지원활동의 성과목표 달성도와, 성과의 우수성 등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평가 실시
 - 추진 시기 : 기관장 임기 만료 전에 평가결과 확정
 - ※ 1차(1월~4월), 2차(5월~8월), 3차(9월~12월)
 - 결과 활용 : 기관장 성과연봉, 직원 능률성과급, 예산 조정 (5~10%) 등

3. 평가결과 활용

☑ 연구성과계획서 점검결과 (임기 초)

- ⊖ 기관 고유임무 수행을 위해 기관장 임기 중 달성할 경영목표 공인
 - 최종 확정된 연구성과계획서는 향후 자율 중간컨설팅 및 종합평가 시 목표 달성도 및 정성평가 기준으로 적용
- ⊖ 임기 중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 추진 준거로 적용

☑ 중간컨설팅 결과 (임기 중)

- ⊖ 연구지원 및 연구·사업부문 컨설팅 결과는 미래 발전전략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연구성과계획서 세부 조정에 적용
 - ※ 전략목표, 성과목표·지표 수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심의·의결 필요

☑ 종합평가 결과 (임기 말)

- ⊖ 기관장 성과연봉, 직원 능률성과급, 예산 및 기관 고유임무 수행조직 조정 등 기관 발전 지원 등과 연계
 - (기관장 성과연봉) 최종등급에 따라 '매우우수' 기본연봉 대비 최대 39%부터 '매우미흡' 성과급 미지급까지 임기 첫 해부터 소급하여 차등 지급
 - ※ 중도사퇴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기관운영·연구성과가 미흡함을 고려하여 기관장 성과연봉 미지급
 - ※ 기관장 성과연봉 지급액의 경우 평가등급별 지급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주의

매년 기관장 성과급 지급 시 미흡등급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되,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정산 시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자율 결정

《 기관장 성과연봉 반영 방법 》

기관평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변경	기본연봉대비 성과연봉 비율	최대 39%	최대 33%	최대 27%	최대 21%	0

※ 기본연봉 :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

- (직원 능률성과급) 결산잉여금에 대한 능률성과급*은 종합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률 차등 적용

*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능률성과급 (기획재정부)

※ 종합평가 실시까지 직전 평가 등급으로 지급률 적용

주의

최초 평가등급이 도출되기 전에는 보통 등급을 기준으로 계상하고,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능률성과급 지급 비율을 차별화하되 차기 종합평가 등급 도출 시까지 같은 등급 적용

《 직원 능률성과급 반영 방법 (예시) 》

기관평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능률성과급 지급률 (%)	50	47.5	45	42.5	40

《 능률성과급 지급방안 (예시) 》

- 능률성과급 지급방안 예시 : '16년도 4분기 신임 기관장 취임(임기 3년) 기관
 - 가정 : '17년 연구성과계획서 확정 → '18년 중간컨설팅 → '19년 종합평가 (우수)
 - 지급 : '17년 45% (보통) → '18년 45% (보통) → '19년 47.5% (우수)
- ※ 최초 평가등급 도출 전까지 '보통' 등급을 기준으로 계상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음

- (임무 및 기능 조정)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성과목표와 관련된 사업 및 기관고유 임무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 세부조직(센터, 연구그룹 등)* 등에 대한 해당기관 기능역할 재편

* 기관 고유임무, 임무체계 또는 자율지표 등에 반영되지 않거나 성과가 미흡한 조직 우선 고려

※ 연속 최하등급을 받으면 해당기관 기능 및 역할 재편 검토

- (예산연계) 종합평가 결과(전략목표별 등급)에 따라 주요사업비*, 기관운영비 등 기관 고유임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연계·조정

* 평가 차년도 예산 검토 시 성과가 우수하거나 미흡한 '전략목표'와 연계되는 주요사업비 조정

※ 기관운영비 등의 산출 등에 종합평가 결과를 연계

※ 증액·삭감 폭은 자체평가 기관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단, 대폭 축소는 지양)

전략목표별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예산연계	5% 이상 증액	3% 이상 증액	-	5% 삭감	10% 삭감

- (우수성과 발굴)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성과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기관 및 공로자는 정부포상(기관, 개인) 추천

※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포상규모 확정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 행안부)

- (연구성과계획서 연계) 종합평가 결과를 연계·활용하여 차기 연구성과계획서를 수립하고 기관 미래발전 방향 도모

※ 평가결과 기관 고유임무와의 부합여부에 대한 평가의견은 차기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시 반영

4. 평가 지적·권고사항 이행관리

㊸ 계획서 점검, 중간컨설팅, 종합평가 등 평가단계별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평가단계별 이행계획 제출 및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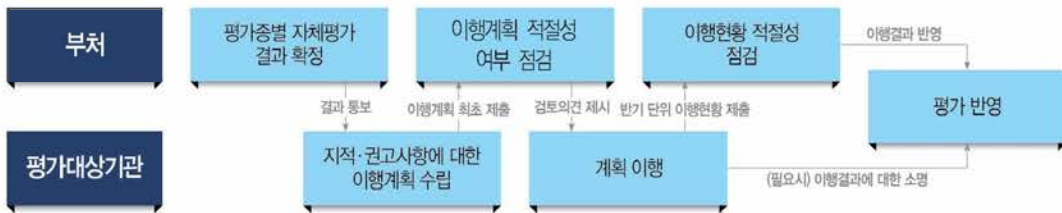
- 평가단계별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최초 제출 후 이행현황*에 대해서는 평가단계별 점검결과 부처 제출

* 최초 제출한 이행계획 중 미 반영, 추진 중 및 향후추진으로 제출한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 부처에서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에 대한 적절성 검토

※ 평가단계별 지적·권고사항 이행결과는 종합평가 시 '대내외 지적사항 및 이행내역' 항목에 포함되어 정성평가 실시

《 자체평가 지적사항 이행·관리 체계 》



㊸ 상위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평가수행기관의 이행내역 지속 점검 및 관리

※ 이행내역을 자체적으로 점검 실시하여 평가편람, 제도개선 등에 반영

《 상위평가 지적사항 이행·관리 체계 》



㊸ 평가결과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각 기관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실시 후 이를 평가 시 반영

II 종합평가 개요

1. 평가목적

⊖ 기관장 부임 시 수립한 연구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의 책임경영 및 연구기관 발전 지원을 위한 연구지원 및 연구·사업부문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기관장 임기를 고려하여 차수별* 평가를 실시하고 임기 만료 전 평가 결과 확정

* 1차(1월~4월), 2차(5월~8월), 3차(9월~12월)

《 연간 종합평가 일정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합평가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자체		상위		자체		상위		자체		상위	

※ 일정은 실제 기관장 취임·퇴임 시기 및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환류

- (연구지원 공통부문) 최종 성과목표별 달성도 점검 및 통합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부여

-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통합 정성평가 시행

- (연구·사업부문) 최종 성과목표별 달성도 점검 및 전문가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부여

- (결과 환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장 성과연봉, 직원 능률성과급, 예산 조정 등에 활용하고, 지적·권고사항에 따라 이행계획 수립

《 평가별 · 부문별 비중 》

부문		가중치
연구		0.8
연구지원	공통	0.2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경영 자율)	

《 종합점수에 따른 최종 등급 부여 방안 》

기관평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종합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2. 평가근거

㊟ 직할 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제8조 (자체성과평가의 실시)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감독관청)

㊟ 『2020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자문회의, '19.10.31)』

☐ 근거 법령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제3항

제32조 제③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등

제6조 제①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전략목표와 이에 따른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제①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대상이 아닌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감독관청) 제3항

제29조 제③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및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

⊖ 평가대상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출연연구기관 3개 기관

- ※ 『2020년 국가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심의회, '19.10.31.)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2020년도 기관자체평가 세부 추진계획(안)』 (과기정통부, '20.1.)
- ※ 『2020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사업계획서/기관운영계획서 작성지침』 (과기혁신본부, '19.12.)

《 종합평가 대상기관 》

평가 대상 기관명	기관장	임 기	평가시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광연	'17.10.23. ~ '20.10.22.	1차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정순영	'18.1.30. ~ '21.1.29.	2차
한국과학기술원	신성철	'17.2.23. ~ '21.2.22.	3차

4.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①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 개요

- ⊕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종합평가 추진
 - 연구성과계획서 점검부터 컨설팅 결과점검, 종합평가까지 동일한 자체평가위원회가 수행토록 하여 전문성 및 기관 이해도를 바탕으로 컨설팅·자문 기능 강화
- ⊕ 평가의 일관성·전문성·책임성 및 평가결과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책임평가위원제·병행평가제·평가실명제 도입, 평가위원(장) 개방형 공모제 시행
 - 평가위원 상피제도 완화, 산학연·민간단체 인사의 평가위원 참여 확대
 - (공모제 병행) 평가위원 후보자 풀 구성 시 평가위원 및 기관 추천 이외에 자유 공모를 병행하여 구성
 - (책임평가위원제) 기관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 및 이전 종합평가 시 참여 위원 등으로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평가 시까지 일정 비율(과반 이상) 지속적으로 평가에 참여 유도
 - (병행평가제) 모든 평가 세부항목에 대해 최소 2인 이상의 병행평가 실시
 - (평가실명제) 평가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의견 실명제 실시

☐ 평가위원 구성 방안

- ⊕ 과기정통부 직할 기관 성격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3개 유형별* 별도 구성·운영

* 기초과학연구형(4개 연구기관), 교육·인력 양성형(5개 연구기관), 지원형(7개 연구기관)

- (위원장) 각 유형별 자체평가위원장은 출연(연) 정책 및 기관평가에 대한 이해도, 연구현장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 후 선정
- (평가위원)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성·경험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 기관 추천 전문가의 경우 기관의 특성을 타 위원에게 전달 (중립성 유지)
 - ※ 임무유형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 중도사퇴나 평가 참여 불가, 평가분야 확대 등의 사유 발생 시 기관 특성 반영을 위해 평가위원 충원

《 임무유형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임무유형	기초과학연구형	교육·인력양성형	지원형
자체평가위원회	기초과학연구형 자체평가위원회	교육·인력양성형 자체평가위원회	지원형 자체평가위원회
평가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과학원 • 기초과학연구원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한국보연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한국원자력의학원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나노종합기술원 • 한국나노기술원

- ※ 임기 : 2년 (연임가능)
- ※ 해촉 : ① 자진사퇴, ②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제외를 요청할 시 ③ 위원장·간사위원·간사기관의 내부의견수렴 결과 불성실·불공정 등에 해당 시
- ※ '20년 신규 기관평가 제도 도입에 따라 평가위원회 유형 재편 예정

《 평가위원 선정 절차 》

전문가 후보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 심의	평가위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임자 • 기관추천 • 자유공모 • 관계 전문가 D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유형별 평가위원장이 주관하여 5인 이내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가 후보의 전문 분야, 선정/제척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별 15~20인 내외 선정

☑ 선정 및 제척 기준

- ⊖ 자체평가위원장 : 과학기술 민간분야에서 권위와 명망이 있는 원로 전문가
 - ※ 각 유형별 자체평가위원장 선정 시 출연(연) 정책 및 기관평가에 대한 전문성·공정성·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평가위원 :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실무경력 또는 10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대상(기관, 사업/과제)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전문가
 - 임무유형별 관련 연구·사업분야의 전문성 및 기관 관리 경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선정
 - ※ 자유공모, 기보유 평가위원 풀, 추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가위원 후보 풀을 마련하고 평가위원 선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선정

☑ 평가위원 심의

- ⊖ 평가위원 위촉 전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제척 기준 심의
 - ※ 평가대상기관 추천 인사의 경우 대상기관에서 적격 여부 심의 후 추천
- ⊖ 제척 기준에 대한 자기 심의
 - ※ 자기 심의 단계에서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하여도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장, 평가주체 및 기관평가 수행기관 간 합의를 거쳐 일부 요건 완화
- ⊖ 평가기간 중 평가위원장·간사위원은 평가위원회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적절·불성실 여부에 대하여 의견수렴 가능

☑ 간 사

- ⊖ 부처의 평가 담당 부서장이 간사로 참여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사무 처리 지원
 - ※ 평가기관의 책임자는 발언권 및 평가의견의 조정·보완 역할 수행

《 선정 기준 및 제척 요건 》

구 분		기 준
선정 요건	평가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산업·인력·재정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자 기관 경영혁신에 대한 경륜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출연(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경륜과 식견을 가진 자 해당 분야 실무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 15년 이상의 전문가 대학의 정교수 이상 전문가 해당 분야 기업의 본부장급 이상 전문가 과학기술분야와 관련한 민간단체 활동 15년 이상의 전문가 기타 상기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
	평가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분야 실무경력 15년 이상의 전문가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문가 해당 분야 기업의 부장급 이상의 전문가 과학기술분야와 관련한 민간단체 활동 5년 이상의 전문가 기타 상기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지닌 전문가 <p>※ 상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 신생 분야로 관계 분야 전문가가 적은 경우 기본 요건 완화 적용</p>
제척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연구부문 전략목표 내 사업(과제) 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 평가 대상기간 중 평가 대상기관이 주관한 전략목표 내 사업(과제)의 책임자 국가R&D사업에 대해 현재 참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전문가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상위평가 수행지원기관의 평가담당 부서 직원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 단, 높은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제척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장, 평가주체, 평가수행기관 간 합의를 거쳐 일부 요건 완화 적용

② 자체평가위원회(종합평가위원회) 구성

㊸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포함 총 25인 내외로 구성

※ 평가 일관성 유지를 위해 연구성과계획서 점검위원 및 중간컨설팅 검토위원 과반 이상 연임 원칙, 기관 특성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 일정비율 위촉

㊸ 소위원회·분과별 담당 분야에 대한 평가 추진

- 종합분석 분과 (4인), 연구지원부문 소위원회 (5인), 연구·사업부문 소위원회 (5~9인) 등 3개 분과 및 소위원회로 구성

㊸ 연구·사업부문 성과의 질적 우수성에 대한 사전 검토 수행

- 멘토단 (4인 내외) 구성 운영

※ 평가위원은 멘토단의 사전검토 내용을 참고하여 성과평가

《 2020년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예시) 》



대상기관	분과	종합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한국과학기술원 	◦ 종합분석분과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평가위원장 (1) ◦ 연구지원부문 간사위원 (1) ◦ 연구부문 간사위원 (1) ◦ 종합분석위원 (4) ◦ 연구지원부문 평가위원 (4) ◦ 멘토단 (4) ◦ 연구부문 평가위원 (8~10) ◦ 간사(전문기관) (1) ※ 간사위원은 종합분석분과 참여
	◦ 연구지원부문 소위원회 (4)	
	◦ 연구부문 소위원회 (9)	
	◦ 멘토단 (4)	
3개 기관	4개 분과	25인 내외

※ 예산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별 역할분담

⊖ 평가위원장 총괄·조정 하에 위원별 전문분야 점검을 거쳐 평가결과 확정

- 평가위원장 : 평가위원회 총괄·조정, 기관별 총평 작성
- 간사위원 : 소관 소위원회 총괄·조정 및 총평 작성 지원
- 평가위원 : 항목별 평가 및 평가의견 작성
- 종합분석 위원 :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 기관비전 및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부합성, 고유임무와 조직과의 연계성, 기관의 당면과제 및 발전전략 등 검토

《 평가위원별 역할분담(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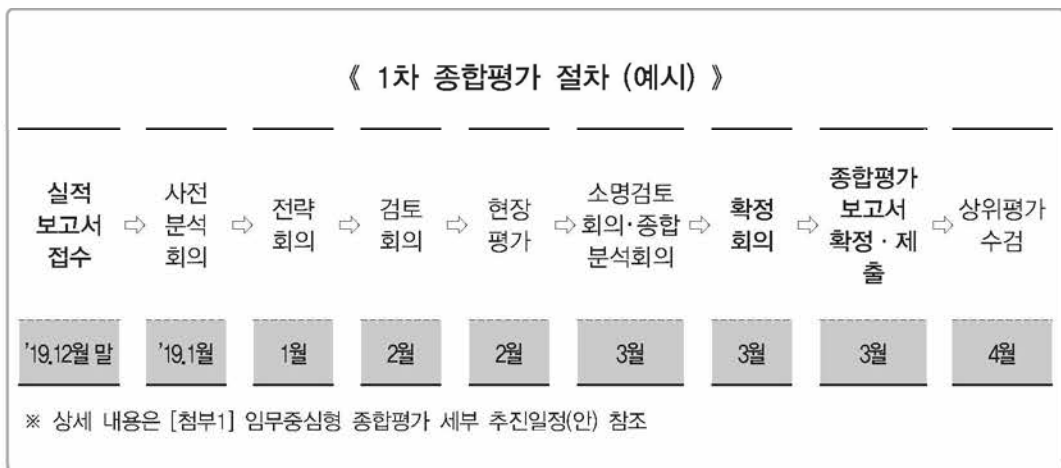
구분	권한 및 역할					
	총괄	평가 조정	평가	수정요청	컨설팅	평가위원 평가
자체평가위원장	○	○	-	○	○	○
간사위원	-	○	○	○	○	○
종합분석위원	-	-	-	○	○	-
평가위원	-	-	○	-	○	-
멘토단	-	-	○	-	-	-
평가 간사기관	-	△ (의견제시)	-	○	○	○

3 멘토단

- ⊕ (목적)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 운영을 통하여 성과의 질적 우수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시함으로써 질적 우수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 ⊕ (구성 방안) 4인 내외
- ⊕ (역할) 연구부문 전략목표별로 배정된 멘토단 위원이 질적 분석이 필요한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질적 우수성 검토의견을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자체평가 위원회에 제공

4 종합평가 절차 및 일정

- ⊕ 1단계 : 기관별 실적보고서 제출
- ⊕ 2단계 : 평가 사전분석회의 (멘토단 질적 성과 분석, 목표달성도 산정 등)
- ⊕ 3단계 : 전략회의, 서면평가, 검토회의, 현장평가
- ⊕ 4단계 : 소명검토회의, 종합분석회의, 확정회의
- ⊕ 5단계 : 상위평가 수검 후 결과 확정 및 평가결과 공개설명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방안

추진방향

- ⊙ 자체평가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위원 참여 다양화
 - 민간위원장 주도의 상설화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 연구성과계획서 점검부터 컨설팅 결과점검, 종합평가까지 동일한 평가위원회가 수행토록 하여 전문성 및 기관이해도를 바탕으로 컨설팅문 기능 강화
 - 산학연 및 민간단체까지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도록 평가위원 구성

세부 운영방안

- ⊙ (운영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구성단위) 직할기관의 임무 특성을 고려하여 3개 유형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 임무 유형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유형별 소관 연구기관 평가를 전담하며 필요시 기관 특성 반영을 위해 평가위원 총원 가능
- ⊙ (선정방법) 중앙부처 및 해당 출연기관 추천과 공모 병행
- ⊙ (운영기간) 유형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소관 연구기관장 취임부터 종합평가 시까지 평가 실시
- ⊙ (위원구성) 산학연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하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강화
 - 평가위원장은 전문성, 공정성, 경험 등을 고려하여 민간분야에서 선정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제한은 없음
 - 평가위원은 연구부문의 경우 전략목표 수*의 배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연구지원 부문**은 3명 이상으로 구성
 - * 고유 미션에 맞추어 3~5개로 구성
 - ** 연구지원부문: 성과 활용, 연구인력 운영, 예산·연구윤리 체계 등
 - 평가위원은 평가위원풀을 2~3배수로 마련하여 선정위원회가 최종 결정
 - ※ 평가위원은 해당 기관의 연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산학연·민간단체를 고루 인배하되 기관특성을 고려
- ⊙ (역할) 연구성과계획서 점검, 컨설팅 결과 점검, 종합평가 수행 등
 - 자체평가결과 확정 등의 역할 수행
- ⊙ (간사) 자체평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부처의 평가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지정
- ⊙ (위원총원) 평가위원 중도사퇴나 평가 참여 불가, 불성실 평가 및 평가분야 확대 등의 사유 발생 시 평가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평가위원 총원 가능
 - 매년 유관기관 추천 등을 통해 전문가 집단으로 평가위원 풀 재구성

※ 상기 운영방안의 경우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제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방안에 해당하며 향후 신규 기관평가 제도에 따른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개정 예정

《 종합평가 추진 일정 》

일 시	내 용			
2019.12월	• 2020년도 기관평가 추진계획 안내			
2019.11~12월	• 자체평가 제도개선 활동 및 2020년도 기관평가 평가편람 개발			
2019.12.4.	• 2020년도 자체평가 세부 추진계획 및 평가 설명회			
2019.10~12월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차수별 추진일정〉				
	1차	2차	3차	
평가위원회 구성	'19.12월	'20.4월	'20.8월	• 기관평가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확정
평가자료 접수	'19.12월말	4월 말	8월 말	• 실적보고서 접수
사전분석회의	'20.1월 초	5월 초	9월 초	• 멘토단 연구성과 질적 수준 분석
전략회의	'20.1월 중순	5월 중순	9월 중순	• 평가위원 위촉 • 평가방법 및 세부전략 논의
서면평가	'20.1월 중순부터 2주	5월 중순부터 2주	9월 중순부터 2주	• 위원별 서면검토 실시 • 평가의견 초안 및 질의서 작성
검토회의	'20.2월 초	6월 초	10월 초	• 서면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현장평가	'20.2월 초	6월 초	10월 초	• 기관장 인터뷰 • 정책(연구)수요자 인터뷰 • 연구성과실적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결과(안) 접수	'20.2월 중순	6월 중순	10월 중순	• 위원별 평가결과(안) 접수
소명의견 수렴	'20.2월(2주)	(2주)	(2주)	• 대상기관 소명의견 수렴
소명검토회의	'20.3월 초	7월 초	11월 초	• 기관 소명사항 반영, 평가의견 수정·보완 • 종합분석의견 작성 방법 등 안내
종합분석회의	'20.3월 초	7월 초	11월 초	• 종합분석 방안 논의
확정회의	'20.3월 중순	7월 중순	11월 중순	• 기관별 소명사항 반영, 평가의견 수정·보완 • 평가결과 도출 및 확정
기관평가결과 제출	'20.3월 말	7월 말	11월 말	• 평가등급 및 평가결과 정부 제출
상위평가 수검	'20.4월 중	8월 중	12월 중	• 평가등급 확정
공개설명회	'20.5월 중	9월 중	'19.1월 중	• 종합평가 결과 설명회

참고

종합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

☑ 사전분석 회의

- ⊕ 목적 :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목표달성도 및 연구부문 성과의 질적 우수성 등 사전 분석 실시
- ⊕ 일시 : (1차)1월, (2차) 5월, (3차) 9월
- ⊕ 참석자 : 멘토단
- ⊕ 주요 내용
 - 연구지원 및 연구·사업분야 목표달성도 1차 산정 점검 및 연구부문 멘토단 분석 대상 지표 선정 및 관련 성과에 대한 질적 우수성 분석
- ⊕ 산출물 : 질적 우수성 검토의견서

☑ 전략회의

- ⊕ 목적 : 평가방안 안내 및 세부 평가전략 협의, 대상기관 실적 발표 질의·응답
- ⊕ 일시 : (1차)1월, (2차) 5월, (3차) 9월
- ⊕ 참석자 : 종합평가위원회, 평가대상기관, 소관 육성부서 담당자
- ⊕ 주요 내용
 - 평가대상기관 측의 실적보고서 요약 발표, 질의·응답
 - 2020년도 기관평가 추진계획 및 평가방안 안내, 역할분담 및 세부전략 협의
- ⊕ 산출물 : 소위별 간사위원 및 위원별 전담 평가지표 선정 결과, 위원별 평가결과(안)

☑ 서면평가

- ⊖ 목적 : 평가대상기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서면평가 실시
- ⊖ 일시 : (1차) 1월 중 2주, (2차) 5월 중 2주, (3차) 9월 중 2주
- ⊖ 주요 내용
 -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추가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위원회 서면검토 실시
- ⊖ 산출물 : 위원별 평가결과(안)

☑ 검토회의

- ⊖ 목적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안) 도출
- ⊖ 일시 : (1차) 2월 중, (2차) 6월 중, (3차) 10월 중
- ⊖ 참석자 : 종합평가위원회
- ⊖ 주요 내용
 - 위원별 평가결과(안) 토론을 통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안) 도출
- ⊖ 산출물 : 평가결과(안), 서면질의 및 추가자료 요청서

☑ 현장평가

- ⊖ 목적 : 연구지원 및 연구·사업부문 현장평가
- ⊖ 일시 : (1차) 2월 중, (2차) 6월 중, (3차) 10월 중
- ⊖ 참석자 : 종합평가위원회 및 평가대상기관 중 00명 (사전 협의 후 결정)
 - ※ 피평가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평가위원 및 해당지표 관련 담당자 간 심층 인터뷰 방식의 개별 또는 소그룹 면담 추진

⊕ 주요 내용

- 기관장 인터뷰 및 주요 질의사항 관련 연구책임자 등 심층 인터뷰 실시
- 전략목표별 정책(연구)수요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실시

*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시 각 전략목표별 정책(연구)수요자를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세부 성과목표·지표 설정

⊕ 산출물 : 평가결과(안), 기관장 및 정책(연구)수요자 인터뷰 결과

☑ 소명 절차

⊕ 목적 : 평가결과(안)에 대한 기관소명

⊕ 일시 : (1차) 3월 초, (2차) 7월 초, (3차) 11월 초

⊕ 주요 내용

- 평가결과(안) 사전 검토 후 이상 유무 판단에 따른 기관 소명 실시

⊕ 산출물 : 소명의견서

☑ 소명검토회의

⊕ 목적 : 연구지원 및 연구·사업부문 평가결과(안)에 대한 기관소명 검토

⊕ 일시 : (1차) 3월 초, (2차) 7월 초, (3차) 11월 초

⊕ 참석자 : 종합평가위원회

⊕ 주요 내용

- 부문별 총괄 의견 작성 방안 논의
- 기관 소명 검토 및 평가결과(안) 조정

⊕ 산출물 : 소명의견 검토결과, 평가결과 조정(안)

☐ 종합분석회의

- ⊕ 목적 : 평가결과 종합분석 및 기관 발전방향 제시
- ⊕ 일시 : (1차) 3월 초, (2차) 7월 초, (3차) 11월 초
- ⊕ 참석자 : 종합분석 분과위원
※ 부문별 간사 2인은 종합분석위원 겸임
- ⊕ 주요 내용
 - 종합평가 결과(안) 검토 및 종합분석 의견 논의
- ⊕ 산출물 : 종합분석 보고서(안)

☐ 확정회의

- ⊕ 목적 : 종합평가결과 확정
- ⊕ 일시 : (1차) 3월 중, (2차) 7월 중, (3차) 11월 중
- ⊕ 참석자 : 종합평가위원회, 평가대상기관, 소관육성부서 담당자
- ⊕ 주요 내용
 - 평가결과(안) 및 종합분석의견 전원 검토 후 세부 조정 및 확정
- ⊕ 산출물 : 종합평가결과

☐ 평가결과 공개설명회

- ⊕ 목적 : 상위평가 수검 및 결과 확정 후 대상기관에 평가결과 설명
- ⊕ 일시 : (1차) '20.5월, (2차) '20.9월, (3차) '21.1월
- ⊕ 참석자 : 종합평가위원회(평가위원장, 부문별 간사위원), 평가대상기관
- ⊕ 주요 내용
 - 평가위원회(위원장·간사위원)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대상기관 임직원 및 대외에 설명하고 안내하는 공개 설명회

〈 (참고) 소명 절차 〉

- ⊕ 목적 : 종합평가 평가결과(안) 확정 전에 평가대상기관 소명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가결과의 수용성과 신뢰성 제고
- ⊕ 소명 기간 및 절차 : 총 14일
 - 1단계 : 평가결과(안) 통보
 - 2단계 : 소명자료 작성 및 제출 (14일)
 - 3단계 : 지표별 평가위원 소명의견 검토 (소명검토회의)
 - 4단계 : 평가위원회 검토 및 심의·의결 (확정회의)
- ⊕ 소명 방안
 - 소명 대상 :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사실관계 해석 등 평가의견 작성 및 제시에 차이가 있는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평가 지표 (향후 반영 계획 등은 제시 불필요)
 - ※ 주의 : '향후 반영 계획'이나 '검토 의견 제시' 등 불필요한 소명 불가
 - 소명 방법 : 소명의견과 함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한 내 서면 제출
- ⊕ 소명의견 검토 및 확정 방안
 - 지표별 평가위원의 1차 검토 후 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 자료 및 사실 누락의 경우에는 근거자료 확인 후 반영하고, 이외 사항은 평가위원회 전원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
- ⊕ 소명의견 검토결과 통보
 - 소명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 소명의견 검토 절차 》



5. 이행계획서 제출

□ 평가결과 통보

- ⊖ 자체평가결과 도출 후 1개월간 상위평가 실시
 - ※ 자체평가에 대한 과기혁신본부 상위평가 실시
- ⊖ 상위평가 평가결과 확정 후 평가결과 최종 확정·통보
 - ※ 상위평가 '평가결과 부적절', '기관별 평가결과 부적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평가 재평가 실시

□ 이행계획서 제출

- ⊖ 자체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지적·권고사항에 따라 개선·조치계획을 수립하고 2개월 내 이행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내
 - 제출방식: 시정조치 이행계획 양식(추후 송부)에 따라 작성 후 공문 제출
 - ※ 이행계획서 최초 제출 후 이행계획 완료여부 반기별 점검 예정
 - ※ 종합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차기 연구성과계획서 점검 및 종합평가에 반영

《 평가제도 개선 대비표 》

부문	2019년도 세부계획	2020년도 세부계획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사업평가와 기관운영평가를 분리 연구사업평가 주기 확대(3·4년 →3·5·6년) 평가위원 풀 추가 확보 및 우수평가위원 재선임 전담 간사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평가위원 중심으로 자체평가위원회 확대 운영 상설 자체평가위원회 세부 전문 연구분야 확대 선정위원회 일원화 (3개→1개) 컨설팅 자문 역할 강화한 평가위원 심층 교육 실시 지적사항 이행관리 체계 간소화 (반기별→평가 3회) 성과연봉 지급 기준을 기본연봉 비례로 변경
기관운영 계획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영역은 외부평가 활용 (30%) 자율영역은 자율 성과목표 수립 (50%) 기관 R&R 재정립 방안 반영 광주과학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나노기술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명절차 개선 적/부 명시 지양 및 점검 의견 중심의 컨설팅형 점검 지향 기초과학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고등과학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5개)
연구사업 계획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6년 단위 연구사업 계획서 수립 달성도 정량 평가 폐지 출연금 내역 사업 단위로 전략목표 수립 기관 R&R 재정립 방안 반영 광주과학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나노기술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명절차 개선 적/부 명시 지양 및 점검 의견 중심의 컨설팅형 점검 지향 기초과학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고등과학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5개)
중간 컨설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R&R 재정립에 따른 컨설팅 실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원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컨설팅 실시 전 이행관리 점검 실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개)
기관운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실시 목표달성도 평가 + 전문가 정성평가 연구지원부문 최대 20점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제도에 따른 기관운영평가 최초 실시 기관운영평가 100점 만점으로 최종 5등급 부여 외부평가 공통영역 평가 + 전문가 정성 평가 기관 R&R 이행 기여도 평가항목 신설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나노기술원 (2개)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 절반 이후 기관장 중도 사퇴시에 한해 종합평가 실시 * 취임 후 1년 이내 중도사퇴 시 기관장 성과연봉 미지급 반기별 현장 점검 실시 및 종합평가 시 점검 결과 반영 기초과학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고등과학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자 인터뷰 시 기관 발전 이슈 발굴 강화를 위해 내부 수요자 포괄하여 확대·운영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최대 3점 감점 실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원 (3개)

참고

종합평가 추진 체계도

《 평가대상기관 》

활동 및 일정	주요 내용
① 평가자료 접수 (1차) 2019년 12월 (2차) 2020년 4월 (3차) 2020년 8월	• 실적보고서 접수
② 전략회의 (1차) 1월 (2차) 5월 (3차) 9월	• 실적보고서 요약 발표
③ 서면평가 실시 (1차) 1월 (2차) 5월 (3차) 9월	• 서면질의 응답 및 추가자료 요청 대응
④ 검토회의 (1차) 2월 (2차) 6월 (3차) 10월	• 서면질의 응답 및 추가자료 제출
⑤ 현장평가 (1차) 2월 (2차) 6월 (3차) 10월	• 기관장 인터뷰 • 기관실적 발표 및 질의응답 대응
⑥ 소명의견 수렴 (1차) 3월 (2차) 7월 (3차) 11월	• 대상기관 소명의견 작성 및 제출
⑦ 종합분석회의	
⑧ 확정회의 (1차) 3월 (2차) 7월 (3차) 11월	• 필요시 대면소명 및 질의응답
⑨ 공개설명회 (1차) 5월 (2차) 9월 (3차) 12월	• 대상기관은 평가결과(안)를 차기 연구성과 계획서 수립 시 반영

《 평가위원 》

활동 및 일정	주요 내용
①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1차) 2019년 12월 (2차) 2020년 4월 (3차) 2020년 8월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평가위원 선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확정
② <좌동>	• 평가방법 및 세부전략 논의 • 실적보고서 관련 질의
③ <좌동>	• 위원별 서면검토 실시 • 평가의견 초안 및 질의서 작성
④ <좌동>	• 기관별 평가결과(안) 보완 및 조정 • 평가지표별 평점 부여·확인
⑤ <좌동>	• 기관장 인터뷰 • 기관실적 관련 질의 응답
⑥ 소명검토회의	• 부문별 총괄 의견 작성 방안 논의 • 기관 소명 검토 및 평가결과(안) 조정
⑦ 종합분석회의 (1차) 3월 초 (2차) 7월 초 (3차) 11월 초	• 종합평가 결과(안) 검토 및 종합분석 의견 논의
⑧ 확정회의 (1차) 3월 (2차) 7월 (3차) 11월	• 기관별 소명사항 반영, 평가의견 수정·보완 • 평가결과 도출 및 확정
⑨ <좌동>	• 종합평가위원회는 종합평가 결과(안)를 평가대상기관 임직원에게 설명

※ 세부사항 및 일정은 <첨부 1>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세부 추진일정(안) 참조

Ⅲ

실적보고서 작성 방안 (평가대상기관)

〈 작성 시 유의사항 〉

⊕ 기관 실적보고서는 성과목표(추진계획) 단위로 목표 달성도와 성과의 질적 우수성 등이 적절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기관 특성과 평가 내용에 부합하도록 작성

※ 분량 제한 없음

※ 성과목표(추진계획)별 달성 성과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

- 기 수립된 성과목표·지표 해당 성과뿐 아니라 그 외 신규성과 및 기관장 임기 종료까지의 예상 성과를 함께 제시
-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비교분석자료에 입각하여 작성
- 대내외 지적사항,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내역 기술
- 해외 선진기관 사례 분석 포함

⊕ 평가대상기간

- 기관장 취임 이후*부터 자체평가 직전 월까지 실적

* 중간컨설팅 평가점수 보유기관은 부처와 협의에 따라 별도 적용 가능

⊕ 기관별 우수 및 미흡사례 제시

- 연구·사업부문 최대 각 3건, 연구지원부문 각 1건

⊕ 제출 방안

- 제출기한까지 공문과 함께 파일 및 인쇄본 송부

※ 상세 내용은 [붙임1] 종합평가 실적보고서 작성 양식 참조

1. 실적보고서 작성 방안

① 총괄 개요

☐ 개요

- ⊖ 성과목표(추진계획) 단위로 목표 달성도(계획 대비 실적)와 세부 성과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하고 증빙자료 첨부
 - 연구지원 공통부문은 영역별 주요성과를 통합하여 작성 ([붙임1] 참조)
 - 실적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성과평가정보공개시스템』 입력 완료
 - ※ 허위기재, 과장, 질적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성과를 포함하는 경우 달성도에서 해당 성과의 비율만큼 차감
 - ※ 자료 미 입력 시 해당 지표에 대해 최하점 부여
- ⊖ 기관장 취임 이후부터 종합평가 직전 월까지의 성과 제시
 - 임기 마지막 해의 목표치·실적치는 평가 직전 월까지 월할 반영 (월할 반영이 불합리한 경우 근거 제출*)
 - * 연도별 추이 및 연구흐름 등을 주요 내용으로 1쪽(성과목표별) 이내로 제출하면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에 따라 예외사항으로 인정 (서술형 지양)
- ⊖ 예상 성과, 당초 성과목표·지표 이외 새로운 성과도 포함 제시
- ⊖ 연구지원부문의 정부정책 관련 사항은 성과목표·지표로 미 제시 되었어도 정성평가에 반영하여 평가하므로 관련 실적 제시
- ⊖ 정성평가 고려항목*에 부합하도록 영역(성과목표)별 달성 성과를 기술하고 관련 세부 내용은 증빙자료 첨부
 - * 질적 우수성, 달성 과정의 적절성 등 선택 및 이외 항목 추가 등은 협의 후 확정
- ⊖ 내·외부 지적사항(감사원, 부처감사, 국회 지적사항* 등), 연구성과계획서(초안) 점검의 견 및 중간컨설팅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도 포함하여 기술
 - *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 필수 포함
- ⊖ 실적보고서 분량 제한은 없으며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 ※ 평가대상기간 중 외부 감사 받은 회계 및 결산보고서 별첨

▣ 작성 항목

- ⊖ 일반 현황 : 설립목적과 임무, 조직, 인력, 예산 및 시설 등
 - ※ 인력 및 예산은 종합평가 직전 월 기준으로 과거 3개년도 현황 제시
 - ※ 전략목표별 관련 예산액(기관고유사업:자체수입, 수탁과제), 기관고유사업 대과제명, 인력(현황, 책임자명) 등의 정보 제시
- ⊖ 비전·경영목표체계
- ⊖ 대내외 환경 분석
 - 기관장 부임 시점 대비 변화된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시사점
 - ※ 중점 분야에 대한 정책·기술·특허·시장동향 조사·분석 필수
 - 임기 초 연구지원 및 연구·사업 현안 해결 성과 및 잔존 현안
- ⊖ 목표 달성도 및 우수성과 (총괄표)
- ⊖ 중장기 발전계획 및 미래 발전전략 (전략목표 별)
 - ※ 핵심 내용만 기술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은 별첨
- ⊖ 총평 및 실적
 - 연구지원 및 연구·사업 부문별 총평 및 실적 요약
- ⊖ 연구지원부문 실적
 - 목표 달성도 : 목표치 대비 실적치를 백분율로 제시
 - ※ 성과지표 성격에 따라 '누적형·독립형·최종형·감소형'으로 구분하여 산정 제시
 - ※ 연구개발 보안 분야는 별도 자료 작성 없이 관계기관의 보안평가 결과 준용
 - 달성 내용 : 정성평가 고려항목*에 부합하도록 영역(성과목표)별 달성 성과를 통합하여 기술하고 관련 세부 내용은 증빙자료 첨부
 - * 정성평가 고려항목인 '질적 우수성, 달성 과정의 적절성,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등 선택 및 이외 항목 추가 등은 협의 후 확정
 - ※ 통합 정성평가를 위한 실적보고서는 기관장 취임 이후 기관운영 실적(조직·인사·사업관리·성과관리제도, 기관특성별 대표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 ※ 성과지표 외 외부평가결과 (공공기관 통합공시, 자체감사활동 감사결과 등) 제시
 - ※ 외부 지적사항은 통합 정성평가 시 반영

㉠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시 예측 어려운 정책 및 기술 환경 변화 등에 대한 기관의 대처 내용(성과) 및 필수 반영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지원 성과 기술

㉡ 연구·사업부문 실적

- 목표 달성도 : 목표치 대비 실적치를 백분율로 제시
 - ※ 성과지표 성격에 따라 '누적형·독립형·최종형·감소형'으로 구분하여 산정, 제시
- 달성 내용 : 정성평가 고려항목*에 부합하도록 성과목표별 달성 성과를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세부 내용은 증빙자료 첨부
 - * 정성평가 고려항목인 '질적 우수성, 달성 과정의 적절성,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등 선택 및 이외 항목 추가 등은 협의 후 확정
- 당초 설정된 성과목표·지표 이외의 새로운 성과
 - ※ 질적 우수성 및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성평가에 반영
- 기관장 임기 내 예상 성과*
 - * 평가대상기간 이후 기관장 임기 종료 전까지 창출이 예상되는 성과
 - ※ 기관장 임기 종료까지 발생이 예상되는 성과는 정성평가에만 반영

㉢ 대내외 지적사항 및 이행내역 (요약)

- 연구성과계획서(초안*) 점검의견 반영 현황
 - * 중간컨설팅 평가 실시 기관은 '경영공통' 부문 이행내역 반영현황 제외
- 중간컨설팅 자율 실시 기관은 컨설팅 의견 및 부처 검토의견 내 지적·권고사항 이행 현황
- 감사결과 등 외부 지적사항 및 이행내역
 - ※ 필수 기술 : 과기정통부 및 감사원 감사결과, 국회 지적사항 (국정감사, 과기정통위, 예결위, 예산정책처 필수), 기타 정부 공식자료

㉣ 달성도 및 달성내용에 대한 상세 증빙자료* 및 목록 제시

- ※ 별도 자료 작성 없이 기존 자료의 관련 내용 첨삭 제출 (증빙자료집 별도 제출 가능)

• 논문·특허·기술료 및 융합연구 인정 실적의 범위

- 논문 : ① NSC, SCI(E), SSCI, A&HCI, SCOPUS, KCI 등재저널 중 하나에 해당,
② 평가대상기간 중 게재*, ③ 제1저자, 제2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해당기관 소속 연구원
(①·②·③ 조건을 모두 만족)

* '게재'가 아닌 '게재확정'은 해당 없음

- 특허 : ① 국내외 특허등록 기관, ② 평가대상기간 중 등록, ③ 발명자 중 1인 이상이 해당기관 소속 연구원 ④ 출원인 중 1인 이상이 해당기관 소속 연구원이거나 해당기관
(①·②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③ 또는 ④ 조건을 만족)

- 기술료 : 계약체결 후 평가대상기간 중 입금된 수입액

※ 계약체결일은 평가대상기간 중에 해당해야 하나 성과의 연속선상이라고 인정될 만한 특이 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외 체결 및 평가대상기간 중 수입분'에 대해서도 포함 가능

- 융합·협동연구의 경우 기여율 조정 : 별도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 우선, 협약이 없거나 미제시 하는 경우 예산 투입비율에 따른 계획과 실적을 산출하여 사용

※ 연구기관 내에서 동일 성과에 대해 성과목표별 중복 실적 제출 불인정

※ 기여율 조정 : ① 중복 성과에 대해 기관 간의 협의 등을 통하여 자율 조정, ② 협의 부재 시 예산 투입 비율에 따라 배분

2 성과 작성 방안

☑ 목표 달성도 산정 방안

➡ 성과목표(추진계획) 내 성과지표별 달성도(계획 대비 실적 비율) 점수화

➡ 평가시기*에 따라 임기 마지막 해 목표치를 조정

* 평가시기 1차 : 0%, 2차 : 4/12, 3차 : 8/12

- 근거 미 제시 혹은 불인정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기준 제시 및 감점

《 평가시기에 따른 목표치 조정 (예시) 》

임기 마지막 해 목표치		3건	반영 비율
평가 시기	1차	0건	0%
	2차	1건	3×4/12
	3차	2건	3×8/12

※ 월할에 따른 균등 반영이 불합리한 경우 근거 및 산정방식을 제시하고 목표치 조정

㉠ 성과목표(추진계획)별 성과지표의 특성에 따라 ‘누적형·독립형·최종형·감소형’으로 구분하여 목표치 및 실적치 산출

- (누적형)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이후 실적이 누적되는 경우로서 계획서 작성 전년도 (n-1년) 실적에서 마지막 평가 년도의 계획(n+2 계획치)까지의 계획량 대비 작성 전년도 (n-1) 실적에서 마지막 평가 연도(n+2)까지의 실적치를 달성도로 산출
- (독립형) 매년 수립된 계획 및 실적이 전년도 및 차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매년 달성도 값의 평균*으로 달성도로 산출(연도별 달성도가 100%를 넘어도 각 연도 달성도는 100%만 인정하여 산출)

* 평가 대상기간 개월 수 대비 해당연도 개월 수를 연도별 비중으로 사용

- (최종형) 기술스펙 등 최종년도의 목표가 핵심일 경우 최종년도 계획 대비 실적으로 달성도를 산출(달성도 산정 기준 제시 필수)
- (감소형) 감소형 지표*가 미달성일 경우, 달성도 산정 시 역수 산정식 (목표치÷실적치)이 아닌, 기준년도 실적(누적형 지표는 계획서 작성 전년도, 독립형 지표는 직전년도)을 기준으로 한 변화량**으로 산정

* ‘○○○검출 농도 ○○ 이하’ 등 수치가 감소하는 것이 목표인 지표

** (기준년도 실적-실적치) ÷ (기준년도 실적-목표치)

《 목표달성도 산출 (예시) 》

성과지표		구분	n-1	n	n+1	n+2	목표 달성도
누적형	○○ 올	계획		4	5	7	$(6-3)/(7-3) \times 100 = 75.00\%$
		실적	3	4	5	6	
독립형	○○ 수입	계획		24	29	41	$\{(23.5/24) \times 12/28 + (29.3/29 \times 12/28) + (40/41 \times 4/28)\} \times 100 = 97.20\%$
		실적	20	23.5	29.3	40	
최종형	○○ 오차율	계획		10	7	3	$3/3 \times 100 = 100\%$
		실적	13	11	8	3	
감소형	○○ 오차율 (% 이하)	계획		10	7	3	$3/5 \times 100 = 60\%$ (x)
		실적	13	11	8	5	$(13-5)/(13-3) \times 100 = 80\%$ (o)

※ n년도 1월부터 실적 제시 기준

⊖ 성과목표(추진계획)별 달성도는 성과지표별 달성도의 가중 합산을 통해 산출

《 목표달성도 산출 (예시) 》

영역	성과지표	가중치	달성도	달성도 소개
○○ (배점 20점)	1. ○○	0.30	85%	93% $(= 0.30 \times 85\% + 0.35 \times 100\% * + 0.25 \times 90\% + 0.10 \times 95\%)$ * 100% 초과 시 실적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상평가 반영
	2. ○○	0.35	120%	
	3. ○○	0.25	90%	
	4. ○○	0.10	95%	

⊖ 정성목표의 경우 연구성과계획서 상 세부 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세부 항목의 수를 기준으로 균등 반영하되, 가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목표도출 근거 기술

⊖ 성과지표의 성격 등에 따라, 평가 마지막 해 실적의 정확한 평가(측정)가 어려울 경우 마지막 해의 목표 달성도는 제외하고 산출 가능

《 목표달성도 산출 (예시) 》

성과지표	n-1년		n년		n+1년		n+2년		목표달성도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조사 (단위: 점)	76	78	78.5	81	81.2	83	-*	$(81.2-76) \div (81-76) \times 100 = 104\%$ <p>* ○○ 조사는 매년 7월에 실시하므로 종합 평가 실적 제출일인 5.30일에는 n+2년의 조사 결과는 산출되지 않아 목표달성도 산출에서 제외</p>	

㉠ 성과목표 간에는 중복성과 불인정, 타 기관과의 공동성과는 기관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반영

* 기여도 산정이 불가피할 경우는 정성평가에서 고려

㉡ 중간컨설팅 결과 성과지표가 전면 수정된 경우 중간컨설팅 이전 성과는 실적치만 제시하고 정성평가(100%) 실시하고, 컨설팅 이후 실적은 목표달성도 및 정성평가 병행 실시

※ 기존 성과지표 관련 실적은 정성평가 대상 추가 실적으로 제시 가능

《 중간컨설팅 결과 수정 지표에 대한 평가 방안 》

- 컨설팅 이전년도 목표치를 유지한 경우 : 목표 달성도와 정성평가 실시
 - 전면 수정 또는 지표·목표치를 포괄하여 수정한 경우 : 컨설팅 이전 년도는 실적치만 제시하고 정성평가(100%) 실시, 컨설팅 이후 실적에 대한 달성도 및 정성평가 실시
- ※ 기존 성과지표 관련 실적은 정성평가 대상 추가 실적으로 제시 가능

〈계획서 수정분 작성 예시〉 '19년도 8월 중간컨설팅 실시 기관 (임기 3년)

성과지표		목표			
		2018	2019	2020	2021
(유형)	(지표명)	8 (실적)	10	12	15

※ 종합평가 시 '18년도는 정성평가만 실시하며, '19~'21년도는 달성도 및 정성평가 실시

☑ 달성 내용 기술 방안

- ⊕ 전문가 정성평가는 성과에 대한 질적 우수성 위주로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질적 우수성, 달성과정의 적절성 외 항목 선택 및 제외 등은 부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

《 정성평가 항목 별 작성 방안 》

구분	작성 방안
질적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객관적 분석 자료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기술하고 증빙자료 첨부 - 지원기관의 경우 성과에 대한 실질적 기여부분을 명확히 기술
달성 과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추진계획 대비 달성 현황 및 임기 내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추진전략 기술 - 연구성과계획서 점검 및 중간컨설팅 결과에 따른 목표 도전성·혁신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시 정성평가 필수 반영 - 별도의 추진체계가 있는 경우 추진체계 제시 - 추진과정에서 지연 혹은 미달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기술

※ 목표의 도전성·혁신성은 과거 3개년도 실적 대비 최종 목표까지의 실적 및 목표치 제고율을 반영하여 작성

- ⊕ 당초 설정된 성과목표·지표 이외의 새로운 성과 및 기관장 임기 내 예상 성과*를 포함하여 작성

* 평가대상기간 이후 기관장 임기 종료 전까지 창출이 예상되는 성과

- ⊕ 기관장 중도 사퇴 시 성과 미진 성과목표별 임기 내 예상 성과 및 중도사퇴로 인한 영향분석 결과 반영

※ 기관장 임기 종료까지 발생이 예상되는 성과는 정성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나, 목표 달성도에는 미반영

정성평가 고려사항

-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토대로 이의 목표 달성도, 외부평가결과,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성과목표 달성/미달성, 기관장 임기 종료까지의 예상 연구성과, 정부의 정책 등에 의한 새로운 성과, 초과달성 성과,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내역, 각 기관별 정책(연구) 수요자 심층 인터뷰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등급 부여 시행

☐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기술 방안

- ⊖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시 예측 어려운 정책 및 기술 환경 변화 등에 대한 기관의 대처 내용(성과) 및 필수 반영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지원 성과 기술
 -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시 성과목표·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종합평가 시 정책 및 기술 환경 변화 등에 대한 기관의 제출 내용 및 추가성과에 대해 기술 시 정성평가 반영
- ⊖ 일자리창출, 연구원 등 직원·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경영, 비정규직 개선, 다양한 계층의 기관 거버넌스 구성, 창업, 안전관리 및 성 평등 등 정부 정책 파트너십 제고 노력 등의 성과 제시
 - 일자리창출 성과 필수 제시하며, 일자리창출 공통지표 예시 중 계획서 내 성과목표와 중복되는 경우 해당성과는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에서 평가
 - ※ 개정 전 연구성과계획서 보유기관의 경우 일자리 창출(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실적 평가 미적용
 - 일자리창출 이외 기타 정부정책 이행실적은 통합 제시
 - 5개 특성화대학은 직원·학생 권익보호에 대한 기타 정부정책 이행에 포함하되 별도 항목으로 평가
 - ‘인권경영’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 매뉴얼’ 인권경영 항목과 내용을 참고하여 실적 제시 시 이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
 - ※ 단, 5대 특성화 대학의 경우도 특성화대학 학생 처우개선 평가를 위한 권리 장전 등 학생 인권 및 권익보호 관련 실적 제시 시 인권경영 평가 방안의 항목과 세부평가 내용을 참고하여 반영토록 권고
 - ‘보수·복리후생 관리’는 기재부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의 관련 성과지표에 따라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에서 정성평가 시행
- ⊖ ‘역할·책임(R&R, Role & Responsibility) 이행 실적’, ‘주요사업(과제) 정보 관리 충실도 (R&D 조사·분석 시 최소 관리과제 단위 입력, 과제정보(연구목표·내용, 기대효과 등)의 명확성 등)’ 필수 점검
- ⊖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기술
 - ※ 혁신기술(예시 : 클라우드 컴퓨팅, IoT 기술, 드론, 센싱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융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생산성·업무효율 향상

《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평가 내용 》

분야	성과 기술 및 평가 내용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실적 (30% 필수 반영) • 보수·복리후생 관리 (기재부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의 성과지표에 대해 정성평가로 반영) • 기타 출연(연) 공통 정부정책 이행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우선 정책 실현 (특성화대학 필수) - 인권경영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 매뉴얼'의 인권경영 항목 참고, 20% 이내 반영) - '역할책임(R&R, Role & Responsibility) 이행 실적 - '주요사업(과제)정보 관리 충실도(R&D조사분석 시 최소 관리과제 단위 입력, 과제정보(연구목표내용, 기대효과 등)의 명확성 -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제고 및 생산성·업무효율 향상 • 기관의 정책 및 기술 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처 내용 • 필수 반영사항에 미 포함된 추가 성과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평가 방안

-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예산·임무 등 기관 특성 및 환경이 상이하고 성과 계획 수립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에 포함하여 평가
- 일자리창출 관련 성과의 경우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내 별도 항목(30%)으로 분리하여 100% 정성 평가 실시
 - 일자리창출 공통지표 중 연구성과계획서 내 성과목표와 일부 중복되는 경우 해당성과는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로 분리하여 제시

부문	일자리창출 공통지표	연구성과계획서 영역
일자리창출 추진체계 구축·운영 (10)	① 전담조직 설치·운영 (7)	영역1 인력운영
	② 일자리 정책·성과 홍보 (3)	영역3 성과활용 체계
근무행태 개선 (10)	③ 초과근무 감축, 연가활성화, 육아휴직 대체 (5)	영역1 인력운영
	④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5)	-
이행노력·협업 (10)	⑤ 기관장 관심, 참여 (7)	
	⑥ 기관 간 협업 (3)	

※ 각 지표별 비중은 예시로 공통지표 확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일자리창출 외 기타 정부정책 이행에 대한 실적은 통합 제시
 - 해당 실적 중 연구지원부문의 성과목표와 중복되는 경우 해당 성과목표에서 평가 시행

특성화대학 학생 처우개선 평가 방안

- 특성화대학의 대학원생 권익보호에 대한 성과는 연구지원부문 ‘고객만족도’ 지표 내 학생권익 관련 지표 반영 및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부문 실적 제시 의무화 동시 적용
 - (고객만족도) 고객만족도 평가지표 내 학생권익보호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이에 따른 고객만족도 결과를 목표달성도 평가에 반영하되 해당 성과목표(영역) 내 별도 정성평가 미실시
 -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정부정책 이행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학생 인권 및 권익보호 관련 실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

구분	연구지원 공통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반영방안	고객만족도(외부기관 평가) 내 학생권익보호 관련 지표 반영	학생 인권 및 권익보호 관련 실적 제시 의무화
평가방식	연구지원 고객만족도 지표 배점 내 목표 달성도 (관계기관 평가결과 반영)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내 정성평가

※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내 배점 비중 협의 필요

인권경영 평가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에 대해서는 정부정책 이행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에 포함하여 정성평가 실시

항목	세부 내용
①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 : 인권경영 전담조직 및 인원배치, 인권경영 실행지침(규정) 제정,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권교육과 훈련 계획 및 실적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기관내·외부(협력사) 확산
② 인권영향 평가 실시	*기관 인권영향평가 : 계획수립,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인권영향 평가·결과보고서 작성·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 계획수립, 인권영향 평가 체크리스트 지표개발, 교육, 평가·결과보고서 작성·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③ 인권경영 실행, 공개	*인권경영 실행,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④ 구제절차 제공	*구제절차 수립 및 시행 *구제절차에 대한 평가·개선(인권경영 추진 2차 년도부터 해당됨)

※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내 배점 비중 협의 필요

- 단, 특성화대학의 인권경영 평가는 특성화 대학 학생 처우 평가 방안에 따라 평가 하되, ‘현안 및 경영자율’ 내 권리 장전 등 학생 인권 및 권익보호 실적 제시 시 인권경영 평가 방안 항목 등을 참고하여 작성토록 권고

2. 우수사례 작성

☑ 목 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출연연구기관 간 우수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활성화를 통해 기관성과 효율성 및 질적 수준 제고 유도

☑ 제출 분량

- ⊕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관의 사업(과제) 혹은 사례
 - 연구·사업부문 최대 3건 및 연구지원부문 1건 (최대 4건)
 - ※ 현재 실적 기준으로 선정 (창출이 예상되는 성과 불인정, 우수사례가 없는 경우 미 제시)

☑ 작성 내용

- ⊕ 개요 : 사업(과제)/사례명, 책임자, 예산, 사업기간 등
- ⊕ 대표성과
- ⊕ 사업목적 및 내용, 추진체계 (외부 참여 기관이 있는 경우 포함)
- ⊕ 증빙자료

IV 종합평가 방안 (평가위원)

〈 평가 시 유의사항 〉

- ➔ **평가위원은 ‘국민과 정부’를 대리하여 판단**

 - ※ 개인의 주관적 가치 지향 금지
- ➔ **(중립성) 특정 기관의 대변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기관과 이해관계 형성을 엄격히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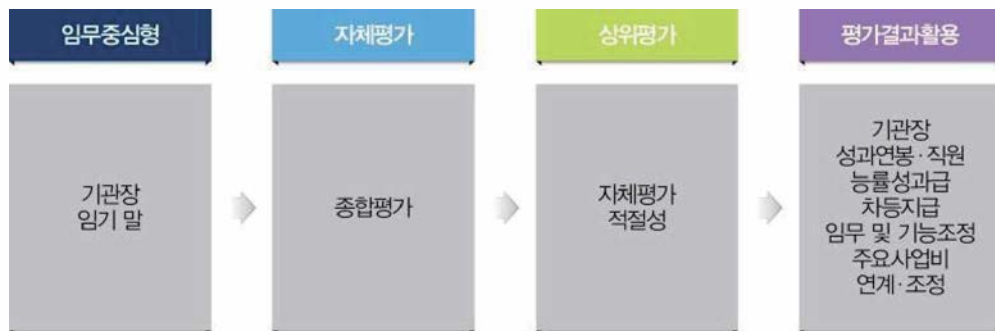
 - ※ 편파적 판단 시 평가위원 자격 심의 가능
- ➔ **(동료의식) 비판적 관점을 유지하되, 기관 발전과 역량 제고를 위해 함께 고민**
한다는 동료의식의 차원에서 접근
- ➔ **(보편성) 전문가적 식견과 양심에 따라 보편타당한 결과 도출**
- ➔ **(평가기준 준수) 사전 명시된 평가지표 및 내용, 자료, 판단기준 등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개인적 판단은 지양**
- ➔ **(비밀 엄수) 모든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 엄수**

 - ※ 특히, ‘평가위원 명단’, ‘실적보고서’, ‘평가보고서’, ‘평가등급’, ‘점수’ 등 보안이 필요한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1. 평가 개요

- ⊖ 국민과 정부를 대리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성과계획서 상의 연구지원 및 연구·사업부문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모든 성과목표(추진계획) 별 목표 달성 정도 및 성과의 질적 우수성 등에 대해 종합평가 실시
 - 기관별 임무특성을 고려한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산학연·민간 단체를 고루 안배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관 기관장 취임 이후부터 종합평가 직전까지의 성과 평가 실시
 - 연구·사업부문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멘토단이 사전 분석 및 평가위원회에 제공하여 평가의견의 질적 수준 제고
- ⊖ 자체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해 과기혁신본부 상위평가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 확정
 - ※ 상위평가 결과 '부적절' 혹은 '부정적' 등급이 도출되는 경우 재평가 실시
- ⊖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 성과연봉, 직원 능률성과급, 예산 조정 등에 활용하고, 지적·권고사항에 따라 이행계획 수립
 - ※ 기관장 성과급의 경우 평가등급에 따라 '매우우수' 최대 55백만원에서 '매우미흡' 미지급까지 차등 지급

《 평가 절차 》



2. 종합평가 방안

□ 평가 개요

- ⊖ 연구·사업 및 연구지원 부문의 성과목표(추진계획)별 목표 달성 정도, 성과의 우수성 등에 대해 종합평가 실시
 - 목표 달성도 평가와 함께 제시한 성과에 대한 정성평가 병행
 - 평가결과를 토대로 **비전과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부합성, 고유임무와 조직의 연계성, 기관의 당면과제(주요이슈) 및 미래 발전전략(전략목표 별)** 등 종합분석 제시
 - ※ 기관 고유임무의 전략목표체계 반영 여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조직·예산사업 구조 등의 분석 강화

《 부문별 평가점수 비중 》

구 분		평가점수 비율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연구지원	목표 달성도	0 ~ 60%										
	통합 정성평가						0 ~ 40%					
연구·사업	목표 달성도	0 ~ 40%										
	전문가 정성평가					0 ~ 60%						

※ 각 성과목표별 평가점수 비율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 종합평가 시 연구지원부문과 연구·사업부문의 비율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가점'과 '감점'을 최종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 부문별 평가점수 비율 》

부문	연구·사업부문	연구지원부문	가점	감점	합계
비중	80%	20%	최대 +2점	최대 -3점	100%

□ 평가 항목 및 내용

⊖ **(연구지원부문 공통분야)** 성과목표(추진계획)별 달성도 평가(60%)와 통합 정성평가(40%)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산출

⊖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이행 노력 성과, 예측 어려운 정책 및 기술 환경 변화 등에 대한 기관의 대처 내용(성과) 및 필수 반영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지원 실적에 대하여 정성평가 100% 실시

- 일자리창출*, 연구원 등 직원·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 경영, 비정규직 개선, 이사진의 다양성, 창업, 안전관리 및 성 평등,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 등 정부 정책 파트너십 제고 노력 등의 성과 평가

* 일자리창출은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배점의 30% 반영

** 5개 특성화대학은 대학원생 권익보호에 대한 기타 정부정책 이행에 포함하되 별도 항목으로 평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 위반 시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에 반영
- 역할·책임(R&R, Roles & Responsibility) 이행 실적, 주요사업(과제)정보 충실도 필수 점검

⊖ **(연구·사업부문)** 전략목표 내 성과목표별 달성도 평가 40%와 전문가 정성평가 60% 비중으로 점수 산출

-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시 세계적 수준의 도전·혁신목표로 인정된 경우 종합평가 달성도 평가 미실시 및 정성평가 기본점수 60% 부여하여 평가
- 연구·사업부문 내 전략목표별 정책(연구) 수요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는 정성평가 및 기관발전전략에 활용

* 계획서 수립 시 정책(연구) 수요자 미 선정 기관은 종합평가 시 선정 후 심층 인터뷰 실시

《 도전·혁신 성과목표 평가 비중 》

평가등급	S	A	B	C	D
점수(%)	100	90	80	70	60

㉠ 당초 설정된 목표·지표 이외의 새로운 성과*도 평가에 포함

* 외부환경의 변화,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성과는 관련 높은 성과목표에 연구기관이 제시하며, 해당 성과목표의 정성평가 시 반영

㉡ 성과목표 미달성 시 최초 목표치의 도전성과 미달성 사유 (환경변화 등), 기관장 임기 종료 시까지의 예상 성과, 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절성 및 외부 지적사항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정성평가에 반영

미달성 사유 고려 대상

- 수탁사업 조기 종료, 관련 정부 정책 및 상위계획에 따른 세부 운영 방향 조정
- 기타 불가피한 출연(연) 외적 환경 변화에 관해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평가 방안

-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예산임무 등 기관 특성 및 환경이 상이하고 성과계획 수립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에 포함하여 평가
- 일자리창출 관련 성과의 경우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내 별도 항목(30%)으로 분리하여 100% 정성 평가 실시
 - 일자리창출 공통지표 중 연구성과계획서 내 성과목표와 일부 중복되는 경우 연구기관은 해당성과를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로 분리하여 제시

부문	일자리창출 공통지표	연구성과계획서 영역
일자리창출 추진체계 구축·운영 (10)	① 전담조직 설치·운영 (7)	영역1 인력운영
	② 일자리 정책·성과 홍보 (3)	영역3 성과활용 체계
근무형태 개선 (10)	③ 초과근무 감축, 연가활성화, 육아휴직 대체 (5)	영역1 인력운영
	④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5)	-
이행노력·협업 (10)	⑤ 기관장 관심, 참여 (7)	
	⑥ 기관 간 협업 (3)	

* 각 지표별 비중은 예시로 공통지표 확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일자리창출 외 기타 정부정책 이행에 대한 실적은 통합 제시
 - 해당 실적 중 연구지원부문의 성과목표와 중복되는 경우 해당 성과목표에서 평가 시행

특성화대학 학생 처우개선 평가 방안

- 특성화대학의 대학원생 권익보호에 대한 성과는 연구지원부문에서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부문 실적 제시 의무화 동시 적용
 -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정부정책 이행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학생 인권 및 권익보호 관련 실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
 - ※ 단, 권리 장전 등 학생 인권 및 권익보호 실적 제시 시 인권경영 평가 방안 항목 등을 참고하여 작성토록 권고

구분	연구지원 공통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반영방안	고객만족도(외부기관평가) 내 학생권익보호 관련 지표 반영	학생 인권 및 권익보호 관련 실적 제시 의무화
평가방식	연구지원 고객만족도 지표 배점 내 목표달성도 (관계기관 평가결과 반영)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내 정성평가

※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내 배점 비중 협의 필요

정책(연구) 수요자 평가 방안

- 기관의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시 각 전략목표별 정책(연구)수요자를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세부 성과목표·지표 설정
 - 정책 수요자는 평가기간(임기) 내 상시 참여를 의무화하고 종합평가 시 해당 수요자 인터뷰 결과를 정성평가에 반영

《 사전제시가 아닌 해당기관 자체마련 제시 (DGIST 예시) 》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정책(연구) 수요자	참여 연구원 및 기업, 지역 기술이전 업체, 학생	지역공동체(상공회의소 등), 과학계(협력희망 연구자집단), 졸업생 수요기업, 학생·학부모
성과목표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융합형 인재양성
측정지표	- 정량 : 전담 교원 수, 교과 개설 수, 강의만족도, 논문·특허 - 정성 : 기술사업화 역량향상	- 정량 : 인력배출 및 진로, 주력산업 고도화/신산업 창출 대표성과 - 정성 : 재학생·졸업생 연구능력, 업무적응력 향상도(기관장 취임 전후)
측정방법	학부생 강의만족도 등	졸업생 채용기업의 만족도 등

인권경영 평가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에 대해서는 정부정책 이행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에 포함하여 정성평가 실시

항목	세부 내용
① 인권경영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 : 인권경영 전담조직 및 인원배치, 인권경영 실행지침(규정) 제정,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인권교육과 훈련 계획 및 실적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기관내·외부(협력사) 확산
② 인권영향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인권영향평가 : 계획수립,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인권영향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 계획수립, 인권영향 평가 체크리스트 지표개발, 교육, 평가·결과보고서 작성·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③ 인권경영 실행,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실행,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④ 구제절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절차 수립 및 시행 * 구제절차에 대한 평가·개선(인권경영 추진 2차 년도부터 해당됨)

※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내 배점 비중 협의 필요

- 단, 특성화대학의 인권경영 평가는 특성화 대학 학생 처우 평가 방안에 따라 평가 하되, '현안 및 경영자율' 내 권리 장전 등 학생 인권 및 권익보호 실적 제시 시 인권경영 평가 방안 항목 등을 참고하여 작성토록 권고

연구지원(경영)부문 평가방법

⊖ (개정 전) 연구성과계획서 경영부문

구분	성과목표	목표달성도 평가 (가중치 60%)	정성 평가 (가중치 40%)
공통	조직·인사·복리후생	각 성과목표 下 추진계획의 성과지표 별 달성도 평가 (기존 평가방법과 동일)	기관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통합 정성평가 ※ 기관장 취임 이후 기관운영 실적에 대한 종합적 평가
	예산·연구윤리·보안		
	성과창출·활용·확산		
	정책분야		
자율분야		기존 평가 방법과 동일	기존 평가 방법과 동일

※ '18년 종합평가와의 차이점: 1) 목표달성도, 정성 평가 비중 (40:60 → 60:40)
2) 경영 공통 정성평가 단위의 통합 (추진계획 단위 → 기관 통합 정성평가)

※ 통합 정성평가 시 외부 지적사항을 정성평가 등급 산정에 반영 (평가의견에 반드시 언급)

1

⊖ (개정 후) 연구성과계획서 연구지원부문

구분	영역	목표달성도 평가 (가중치 60%)	정성 평가 (가중치 40%)
공통	임무중심형 연구환경 조성	각 영역 下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별 달성도 평가 (기존 평가방법과 동일)	기관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통합 정성평가 ※ 기관장 취임 이후 기관운영 실적에 대한 종합적 평가
	효율적 기관운영		
	성과관리·활용·확산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현안 대응 노력 중심 정성평가

※ 통합 정성평가 시 외부 지적사항을 정성평가 등급 산정에 반영 (평가의견에 반드시 언급)

① 목표 달성도

⊖ 기관에서 제시한 지표별 목표 달성도를 기준으로 성과 성립 요건, 인정성과 등을 감안하여 인정 목표 달성도 도출

- (성립 요건) 평가대상기간 내 성과, 평가지표별 목표의 내용에 부합하는 성과, 성과계획서에 명시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성과
 - * 목표 도출 근거에 제시된 세부 목표치, 산출식, 검증방법 등
- (차감 요인) 성과가 중복·과다 계상 및 질적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성과의 비율만큼 달성도에서 차감
 - * 허위·부당 실적을 제시한 경우 불인정 및 감점 고려
- (인정 성과) 기관이 제출한 성과 중 성립 요건, 차감 요인에 따른 불인정 달성 내용을 제외한 최종 인정 성과
 - * 증빙자료에 근거한 객관적 달성도 산정, 인정 달성도 산출식 및 (불)인정 사유 기재
 - * 정성적인 성과지표(예, 〇〇 계획 수립, 〇〇 개발 또는 기반구축 등)의 경우에도 달성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도 인정기준 및 의견 기재
- 성과 달성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까지만 인정
 - * 100% 초과 달성분은 정성평가에 반영

⊖ 정성목표의 경우 세부항목에 따른 반영 비율이 적절한지 판단

- 연구성과계획서 상 세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세부항목의 수를 기준으로 균등 반영
- 세부 항목별 가중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지, 근거는 타당한지 판단
 - * 근거가 타당하지 않거나 미 제시한 경우 균등 반영으로 조정
- 당초 세부 항목이 없었으나 새롭게 세부 항목을 제시하였다면 세부 항목이 타당한지 판단하고, 세부 항목 대비 이행 항목 비율로 산정
 - * 필수 요소 불합리 혹은 미 제시 시 질적 수준 저하로 차감 적용

㉠ 성과지표의 유형(누적형·독립형·최종형·감소형)에 따라 인정 달성도 산출

《 성과지표 유형 목표달성도 산출 (예시) 》

성과지표		구분	n-1	n	n+1	n+2	목표 달성도
누적형	○○율	계획		4	5	7	$(6-3)/(7-3) \times 100 = 75.00\%$
		실적	3	4	5	6	
독립형	○○수입	계획		24	29	41	$\{(23.5/24) \times 12/28 + (29.3/29 \times 12/28) + (40/41 \times 4/28)\} \times 100 = 97.20\%$
		실적	20	23.5	29.3	40	
최종형	○○오차율	계획		10	7	3	$3/3 \times 100 = 100\%$
		실적	13	11	8	3	
감소형	○○오차율 (% 이하)	계획		10	7	3	$3/5 \times 100 = 60\%$ (X) $(13-5)/(13-3) \times 100 = 80\%$ (O)
		실적	13	11	8	5	

※ n년도 1월부터 실적 제시 기준

※ 달성도 점검 시 증빙자료에 근거한 객관적 달성도 산정, 인정달성도 산출식 및 (불)인정 사유 기재

※ 정성적인 성과지표(예, ∞ 계획 수립, ∞ 개발 또는 기반구축 등)의 경우에도 달성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도 인정기준 및 의견 기재

- (누적형)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이후 실적이 누적되는 경우로서 계획서 작성 전년도(n-1년) 실적에서 마지막 평가 년도의 계획(n+2 계획치)까지의 계획량 대비 작성 전년도(n-1) 실적에서 마지막 평가 년도(n+2)까지의 실적치를 달성도로 산출

- (독립형) 매년 수립된 계획 및 실적이 전년도 및 차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매년 달성도 값의 평균*으로 달성도로 산출(연도별 달성도가 100%를 넘어도 각 연도 달성도는 100%만 인정하여 산출)

* 평가 대상기간 개월 수 대비 해당연도 개월 수를 연도별 비중으로 사용

- (최종형) 기술스펙 등 최종년도의 목표가 핵심일 경우 최종년도 계획 대비 실적으로 달성도를 산출 (달성도 산정 기준 제시 필수)

- (감소형) 감소형 지표*가 미달성일 경우, 달성도 산정 시 역수 산정식 (목표치÷실적치)이 아닌, 기준년도 실적(누적형 지표는 계획서 작성 전년도, 독립형 지표는 직전년도)을 기준으로 한 변화량**으로 산정

* '○○○검출 농도 ○○ 이하' 등 수치가 감소하는 것이 목표인 지표

** (기준년도 실적-실적치) ÷ (기준년도 실적-목표치)

- ⊖ 성과목표(추진계획) 간에는 중복성과 불인정, 타 기관과의 공동성과에 대해서는 기관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반영(불가피할 경우 정성평가에서 고려)

《 목표달성도 산출 (예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인정 달성도	계
○○ 개발 (배점 20점)	1. ○○	0.40	72%	84.55% (예)목표달성도 점수 산정 (20×0.8455×0.4)=6.76*점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
	2. ○○	0.35	100%	
	3. ○○	0.25	83%	

- ※ 증빙자료에 근거한 객관적 달성도 산정, 인정 달성도 산출식 및 (불)인정 사유 기재
- ※ 정성적인 성과지표(예, ○○ 계획 수립, ○○ 개발 또는 기반구축 등)의 경우에도 달성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목표달성도 인정기준 및 의견 반드시 기재

- ⊖ 성과지표의 성격 등에 따라, 평가 마지막 해 실적의 정확한 평가(측정)가 어려울 경우 마지막 해의 목표달성도는 제외하고 산출 가능

《 목표달성도 산출 (예시) 》

성과지표	n-1년		n년		n+1년		n+2년		목표달성도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조사 (단위: 점)	76	78	78.5	81	81.2	83	-*	$(81.2-76) \div (81-76) \times 100 = 104\%$ *○○○ 조사는 매년 7월에 실시하므로 종합평가 실적 제출일인 5.30일에는 n+2년의 조사 결과는 산출되지 않아 목표달성도 산출에서 제외	

《 목표 달성도 산정 (예시) 》

(단위: 천원)

성과지표 (배점)	연도	목표	실적		지표별 달성도		인정 목표달성도
			기관제시	인정	기관제시	인정	
1-1 JCR 상위 10% 논문 건수 (50) [누적형]	'15	-	6	-	100%	93.33%	
	'16	-	10	-			
	'17	-	15	-			
	'18	21	20	20			
	'19	27	26	26			
'20,조정	30	30	29				
1-2 기술료 (천 원) (30) [독립형]	'15	-	960	-	100%	97.44%	95.90%
	'16	-	1,020	-			
	'17	-	1,200	-			
	'18	1,340	1,350	1,260			
	'19	1,500	1,510	1,510			
'20,조정	1,600	1,640	1,640				
1-3 ○○ 전환 효율 (%) (20) [최종형]	'15	-	3.5	-	100%	100%	
	'16	-	6.2	-			
	'17	-	9.0	-			
	'18	12	12	12			
	'19	14	13	13			
'20,조정	15	14	14				

※ '14~'16 : 과거 실적치, '17.1월~'19.조정: 평가대상기간

⊖ 성립요건 미준수 해당 성과

- (성과지표 1-2. 기술료, 독립형) '17년도 실적으로 제시한 기술료 중 일부(90천원)가 '13년 12월에 입금된 기술료로 판명되어 해당 실적 불인정

⊖ 차감 요인 해당 성과

- (성과지표 1-1. JCR 상위 10% 논문 건수, 누적형) '19년도 실적으로 제시한 논문 중 1개 논문이 타 성과목표에서 제시한 실적과 중복되어 본 성과목표의 실적에서 불인정

⊖ 최종 인정 성과 및 달성도

- (성 지표 1-1. JCR 상위 10% 논문 건수, 누적형) '19년도 1개 논문이 실적에서 불인정되어 달성도는 93.33%
 - 달성도(누적형) : $[(29-15)/(30-15)]*100 = 93.33\%$
- (성과지표 1-2. 기술료, 독립형) '14년도 기술료 실적이 일부 불인정 되어 달성도는 97.44%
 - 달성도 : $[(1,260/1,340*12/28)+(1,510/1,500*12/28)+(1,640/1,600*4/28)]*100 = 97.44\%$
 - ※ 연도별 달성도 100% 초과 시 100%까지만 인정하여 산출
- (성과지표 1-3. ○○ 전환 효율, 최종형) 당초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도는 100%
 - 달성도 : $(14/14)*100 = 100\%$
- ☞ 최종 인정 목표 달성도 : JCR 상위 10% 논문 건수 93.33%*0.5 + 기술료 97.44%*0.3 + ○○ 전환 효율 100%*0.2 = 95.90%

목표 달성도 산정 예시

㊸ 성립요건 적용 예시

유형	성과지표	기관 제시 달성도			산정	인정 달성도
		목표	계획 수립 및 적용			
평가기준 미이행	성과연봉제 적용	목표	계획 수립 및 적용	100%	미실행된 '적용' 부분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만 50% 인정	50%
		실적	3개 계획(안) 수립			
평가대상 기간 불일치	정부 3.0 확산	목표	공공데이터 6건 개방	200%	12건 중 평가 대상기간 중 실적이 아닌 6건 제외	100%
		실적	12건 개방			
목표 내용 불일치	친화적 연구비 관리	목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100%	제도개선으로 제시된 성과가 친화적 연구비 관리에 적합하지 않아 50%만 인정	50%
		실적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㊸ 차감 요인 적용 예시

유형	성과지표	기관 제시 달성도			산정	인정 달성도
		목표	실적			
허위 부당 실적	핵심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 조직 설립	목표	4건	100%	실적 중 1건이 서류상 조직으로 판명되어 달성도 25% 차감	75%
		실적	4건			
과다계상	논문게재	목표	100건	120%	실적 중 60건이 타 기관과 공동융합연구를 통해 게재되어 60건 중 50%만 인정	90%
		실적	120건			
질적 수준	국제 컨퍼런스 개최	목표	3회 개최	133%	모든 실적이 국외 연구자는 초빙 연사나 패널 참여 등에 한정되고, 실제 성과 발표·보고는 국내 참여자가 절대 다수 차지하여 모두 불인정	0%
		실적	4건 개최			

② 전문가 정성평가

⊖ 기관 임무유형, 성장단계, 성과목표 내용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성 성과에 대한 질적 우수성(필수), 달성과정의 적절성 외 추가 항목 설정 등 자율적 평가요소를 도입하여 평가 시행

※ 성과목표에 따라 1~2개의 항목만으로 평가 가능

- **(질적 우수성)** 국제적 수준, 국내외 공인기관에 의한 평가·인증 결과, 정부 공식 발표자료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비교 대상과의 실적발생시점, 기술개발단계를 고려한 세계 최고 수준 판정 필요

- (실적발생시점 기준 오류) 계획서 수립 시점(예: '15년)에서의 세계 최고 수준을 최종년도(예: '18년) 목표치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것에 대해 정성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판정
- (기술개발단계 기준 오류) 상용화된 제품의 성능치 또는 실용화 레벨에 있는 기술의 성능치와 해당 출연기관의 연구실 레벨에서의 성능치를 비교하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판정

- **(달성 과정의 적절성)** 달성과정의 계획적·체계적 수행 여부,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목표 달성 여부 및 외부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성과목표(추진계획)의 도전성·혁신성은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시 점점하고 종합평가 시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되 계획서 점검 결과 도전성·혁신성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 '달성 과정의 적절성' 항목에 반드시 포함하여 평가

※ 중간컨설팅 결과에 따라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시 정성평가 필수 반영

- 평가항목(질적 우수성 등)별 비중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성과목표(추진계획)별로 5단계 등급(S~D)을 부여한 후 각 등급에 부여된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전문가 정성평가 등급 및 등급별 점수 부여 기준 》

등급	S	A	B	C	D
등급별 가중치	1.0	0.75	0.5	0.25	0.0

⊖ 당초 설정된 목표·지표 이외의 새로운 성과는 기관이 제시한 성과목표의 정성평가 시 반영

※ 외부환경의 변화,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성과는 해당기관의 판단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성과 목표에 제시

- ⊖ 기관장 중도 사퇴 시 성과가 미진한 성과목표별 임기 내 예상 성과 및 중도사퇴로 인한 영향분석 결과 반영
- ⊖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 부적절 시 정성평가 결과 등급 강등 고려
 - 연구성과계획서 초안 점검의견, 중간컨설팅 점검의견 등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내역 대상 검토 결과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등급 강등 여부 결정 (지표 당 1회 1등급 한도로 적용)
 - ※ 이행내역 부적절 사항은 정성평가 의견으로 반드시 기술하고 등급 강등 여부 결정
 - ※ 대내외 지적사항 누락의 경우 추가자료 요청·질의를 통해 보완 후 최종 누락 판단
- ⊖ 공공부문 갑질근절 및 인권경영 관련 부적절 시 연구지원부문 통합 정성평가 등급을 추가로 한 등급 강등하여 결과 반영
 - ※ 연구지원부문 전체 20점 중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5점을 제외한 15점 기준

정성평가 고려사항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토대로 이의 목표 달성도, 외부평가결과,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성과 목표 달성/미달성, 기관장 임기 종료까지의 예상 연구성과, 정부의 정책 등에 의한 새로운 성과, 초과달성 성과,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내역, 각 기관별 정책(연구) 수요자 심층 인터뷰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등급 부여 시행

- ※ 자체평가위원회는 기관특성 및 성과목표의 임무유형에 따라 각 요소의 비중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음
(예: 연구지원부문은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요소를 제외, 기초연구형은 달성과정의 적절성 제외 등)

《 질적 우수성, 과정의 적절성, 목표의 도전적·혁신적 개념 》

구분		개념
성과	질적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지원) 효과적인 경영활동을 바탕으로 전 조직단위에 걸쳐 높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수준 • (연구·사업) 각 임무유형별 질적 우수성 판단 기준 참고
과정	과정 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가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수준
목표	도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전적) 기존 수준을 월등히 초월하여 선진 기관 또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 가능한 목표 • (의욕적) 내적 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대 활용했을 때 도달가능한 목표
	혁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 기존의 관행·추세·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목표

《 설립경과년도에 따른 기관의 성장단계 (예시) 》

성장단계	설립초기	성장기	성숙기
설립경과년도	설립이후 5년 이하	설립이후 5년 이상 ~ 10년 이하	설립이후 10년 이상

《 전문가 정성평가 등급 판단 기준 (예시)* 》

질적 우수성 (70%)	달성 과정의 적절성(30%)	등급
S	S	S
	A	S
	B	A
	C	A
	D	A
A	S	A
	A	A
	B	A
	C	B
	D	B
B	S	A
	A	B
	B	B
	C	B
	D	C
C	S	B
	A	B
	B	C
	C	C
	D	C
D	S	C
	A	C
	B	C
	C	D
	D	D

* 기관특성 및 성과목표의 임무유형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및 중간컨설팅 결과에 따라 '목표의 도전성·혁신성'을 지적받은 경우 종합평가 시 '달성 과정의 적절성' 항목에 '목표의 도전성·혁신성'을 반드시 포함하여 평가

- 달성과정의 적절성 등급* = 달성과정의 적절성(50%)+도전성·혁신성(50%)

*등급별 점수 구간: S=1~0.875이상, A=0.875미만~0.625이상, B=0.625미만~0.375이상, C=0.375미만~0.125이상, D=0.125미만~0

※ 정성평가등급 산출식: 질적 우수성 등급 가중치×0.7+과정의 적절성 등급 가중치×0.3 = 등급*

*등급별 점수 구간: S=1~0.875이상, A=0.875미만~0.625이상, B=0.625미만~0.375이상, C=0.375미만~0.125이상, D=0.125미만~0

예) 질적 우수성 A (0.75)×0.7 +과정의 적절성 B (0.5)×0.3= 0.68 = 'A'등급

《 정성평가 판단 기준-질적 우수성 (예시) 》

㉠ 연구지원부문

등급	전문가 정성평가 등급별 수준
S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과 개선노력이 전 조직 단위에 걸쳐 체질화됨에 따라 매우 높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단계
A	• 체계적이고 일반적 수준의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유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성과향상이 이루어지는 단계
B	• 당초 제시한 목표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일반적 수준의 개선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C	• 일부에서만 목표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단계
D	•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단계

㉡ 연구·사업부문

① 기초·미래선도형(R형)

등급	전문가 정성평가 등급별 수준
S	•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성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거나 소관 분야의 문제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Breakthrough형 지식 또는 기술
A	• 국내 학문 및 기술적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지식 또는 기술
B	• 기존 지식 또는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 결과로 학문 및 기술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식 또는 기술
C	• 연구개발 결과는 새롭지만 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학문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힘든 지식 또는 기술
D	• 기존 지식 또는 기술과 차별성이 없거나 답습한 수준의 지식 또는 기술

② 공공·인프라형(R&D형)

등급	전문가 정성평가 등급별 수준
S	• 사회 혹은 국방 등 국가적인 현안 해결에 있어 핵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지식 또는 기술
A	• 국가·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기존 연구에 비하여 보다 향상된 지식 또는 기술
B	• 기 수행된 연구 성과에 비하여 차별성이 있으며 어느 정도 기여가 가능한 수준의 지식 또는 기술
C	• 기존 수행된 연구 성과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성과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식별하기 어려운 지식 또는 기술
D	• 기존 연구와 대비하여 그 수준이 답습한 수준의 지식 또는 기술

③ 실용화형(R&BD형)

등급	전문가 정성평가 등급별 수준
S	• 기술개발의 완성도나 기존 기술대비 혁신성 및 차별성이 뛰어나 해당 산업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거나 개척이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
A	•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 성과를 통해 해당 산업에서의 시장 점유율이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나 지식
B	• 기술개발을 통해 해당분야의 산업 육성 혹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또는 지식
C	• 기존 수행된 연구와의 차별성 식별이 어려우며 이를 통한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또는 지식
D	• 기존 수행된 연구를 답습한 수준이거나 이를 통한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기술 또는 지식

④ 연구·교육형(R&E형)

등급	전문가 정성평가 등급별 수준
S	• 수요측면을 고려한 핵심 인적자원 역량(competency)의 확보 및 육성이 차별화되어 매우 우수하며 이를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탁월한 연구 및 활동
A	• 기존 연구와 대비 양적·질적으로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인력 육성 정도가 뛰어나고 이를 통해 경제적 파급성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 및 활동
B	• 연구 성과를 통해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육성 혹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 및 활동
C	• 기존 수행된 연구와 양적·질적 측면에서 연구인력 육성에 대한 차별성 식별이 어려우며 이에 따른 파급효과가 또한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 및 활동
D	• 기존 수행된 연구를 답습한 수준이거나 이를 통한 인적자원 육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연구 및 활동

⑤ 정책연구·지원형(R&P형)

등급	전문가 정성평가 등급별 수준
S	• 사회·경제·과학 등의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혹은 시책지원을 위한 독창적이고 선도적이며 그 효과성이 탁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 또는 지원 활동
A	• 기존의 사회·경제·과학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그 효과성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 또는 지원 활동
B	• 기존의 사회·경제·과학 등의 제반문제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그 효과성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연구 또는 지원 활동
C	• 기존 수행된 연구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거나 연구 성과가 제반문제 해결에 관한 효과성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 또는 지원 활동
D	• 기존 수행된 연구를 답습한 수준이거나 이를 통한 정책 효과성 및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연구 또는 지원 활동

※ 상기 판단기준은 예시이며 기관 및 연구·사업 목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판단

《 정성평가 판단 기준-과정의 적절성,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예시) 》

⊖ 과정의 적절성

등급	전문가 정성평가 등급별 수준
S	•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타 기관의 모범이 될 만한 수준
A	•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목표 달성과정이 효율적인 수준
B	• 대체로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목표 달성과정이 일반적인 수준
C	• 계획과 상당 부분이 어긋나게 추진되었으며 체계적이지 못함
D	• 계획과 연계성 없이 추진

⊖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등급	전문가 정성평가 등급별 수준
S	• 기관의 역량이나 세계적 수준 대비 도전성과 혁신성이 모두 매우 높은 경우
A	• 기관의 역량이나 세계적 수준 대비 도전성·혁신성이 높은 경우
B	• 기관의 역량이나 세계적 수준 대비 도전성·혁신성이 일반적인 수준
C	• 기관의 역량이나 세계적 수준 대비 도전성·혁신성이 낮은 경우
D	• 기관의 역량이나 세계적 수준 대비 도전성·혁신성이 매우 낮은 경우

3 평가점수

☐ 성과목표별 점수 산출

☞ 목표 달성도와 정성평가 결과를 연구지원부문(6:4), 연구·사업부문(4:6)의 비율로 각각 가중 합산하여 점수 산출

※ (연구·사업부문 예시) 세부항목별 평가점수 = 목표 달성도 점수 [배점*목표 달성도(0~100%)*40%] + 정성평가 점수 [배점*정성평가 가중치(0~100%)*60%]

※ 성과목표 점수 최종 산출 시 소수점 둘째자리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목표(추진계획)별 평가점수 산출 예시 》

성과목표 (배점)	성과지표 (가중치)	목표 달성도 (40%)		정성평가 (60%)			평가 점수		
수월성 중심의 연구강화 (20)	IF 상위 20%이상 논문 (20)	95%	92% ¹⁾	7.36점 ²⁾	A	대내외 지적사항 부적절	B ³⁾	6.00점 ⁴⁾	13.36점 ⁵⁾
	SMART 5등급 이상 특허 (20)	100%							
	평가 모델링 기술 (30)	91%							
	분석기술 고도화 (30)	84%							

1) 인정 목표 달성도 : $(0.20 \times 95\%) + (0.20 \times 100\%) + (0.30 \times 91\%) + (0.30 \times 84\%) = 92\%$

2) 목표 달성도 점수 : 배점20점 \times 92% \times 40% = 7.36점

3) 정성평가 : 대내외 지적사항 부적절로 한 등급 강등

4) 정성평가 점수 : 배점20점 \times 0.5 \times 60% = 6점

5) 평가점수 : 목표 달성도 7.36점 + 정성평가 6.00점 = 13.36점

☐ 부문별 종합점수 산정

☞ 종합평가 시 연구지원부문과 연구·사업부문의 비율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가점'과 '감점'을 최종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 연구지원 부문은 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100점 만점)

- 연구·사업부문은 성과목표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100점 만점)

☐ 종합점수 산출 시 가·감점 기준

⊖ (가점) 기관장 취임 이후부터 종합평가 시점까지 가점 항목 발생 시 적용최대 2점 이내에서 부여

- 기관에서 제시한 성과들에 대해 자체평가위원회가 객관적 근거자료(연구계 및 언론 등)를 참고로 가점 인정여부 결정
- 세계 유수의 상은 예외적으로 한도 외 적용 (1점~10점/건)

《 대상항목별 가점기준 》

대상항목	가점기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0.1점/건
(연구부문) 국무총리 표창(상) 이상 포상 (개인, 기관 포함)	국무총리: 0.1점/건, 대통령: 0.2점/건, 포장: 0.3점/건, 훈장: 0.5점/건
(비연구부문) 대통령 표창(상) 이상 포상 (개인, 기관 포함)	대통령, 포장, 훈장: 0.1점/건
세계 유수*의 상(노벨상, 필즈상 등)	1점~10점/건

* 자체평가위원회가 객관적 근거자료(연구계 및 언론 등)를 참고로 인정여부 결정

⊖ (감점) 기관장 취임 이후부터 종합평가기간 내에 감점 항목 발생 시 최대 3점 이내에서 감점 부여 및 통합정성평가에 반영

- 건전한 평가문화 저해* (최대 3점)

- ※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저하, 공정한 평가 저해, 평가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하는 허위기재, 과장자료, 실적 미부합 등 불성실한 자료 및 무분별하고 과도한 소명자료 제출
- ※ 불성실 자료 제출과 과도한 소명자료 제출 구분하여 최대 3점 내에서 합산하여 감점 처리
- ※ 다만, 성과·소명 불인정률에 따른 감점 적용 여부는 일괄 적용이 아닌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성과·소명 불인정률에 따른 감점 기준 (예시) 》

불인정 사유		감점
성과 불인정률*	소명 불인정률**	
5% 이상 ~ 1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0.3점
10% 이상 ~ 25% 미만	40% 이상 ~ 55% 미만	1.0점
25% 이상 ~ 40% 미만	55% 이상 ~ 70% 미만	1.5점
40% 이상 ~	70% 이상 ~	3.0점

*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저하, 공정한 평가 저해 등을 초래하는 허위기재, 과장자료, 실적 미 부합하는 자료 제출

** 평가 행정력 낭비 등을 유발하는 과도한 소명자료 제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 위반 시 연구지원부문의 통합 정성평가에 반영

☑ 종합등급

⊖ 최종 종합점수의 점수 구간에 따라 5단계 종합등급 부여

《 종합점수에 따른 최종 등급 기준 》

기관평가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종합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종합등급 산출 예시]

□ 종합평가 평가점수

- 연구지원부문 (A) : 80.47점
- 연구·사업부문 (B) : 78.19점
- 가점 (C) : 2.0점
- 감점 (D) : 0.3점
- 종합점수 : $(A \times 0.2) + (B \times 0.8) + C - D$

항목	연구지원 (A, 20%)	연구·사업 (B, 80%)	점수 (안)	가점 (C)	감점 (D)	최종 종합점수	등급
점수	16.09점 (80.47×0.2)	62.55점 (78.19×0.8)	78.65점	2.0점	0.3점	80.35점	우수

4] 종합분석

- ⊖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하여 기관 발전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종합의견 제시
 - 기관의 비전 및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부합성
 - 기관 고유임무와 조직과의 연계성
 - 기관의 당면 과제(주요 이슈) 및 미래 발전전략(전략목표 별) 등을 별도 제시

5] 우수 및 미흡사례 선정

☑ 우수사례의 선정

- ⊖ 자체평가위원회는 우수사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기관별로 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
 - 배경, 관련분야 동향, 성과 내용, 추진 성과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선정된 우수사례는 홍보 및 성과확산, 포상 등에 활용
- ⊖ 선정된 기관별 1건의 우수사례에 대하여 간사위원이 우수사례 선정 사유와 사업 개요, 성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미흡사례 선정

- ⊖ 종합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미흡사례 선정
 - ※ 특별한 미흡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미선정

붙임

【붙임1】 종합평가 실적보고서 작성 양식 (대상기관용)	71
【붙임2】 종합평가 평가의견서 작성 양식 (평가위원용)	126
【붙임3】 수요자 집단 선정 양식 (대상기관용)	165
【붙임4】 목표 달성도 검토 양식 (평가위원회용)	166
【붙임5】 목표 달성도 소명의견서 작성 양식 (대상기관용)	175
【붙임6】 정성평가 소명의견서 작성 양식 (대상기관용)	180
【붙임7】 정성평가 소명의견 검토의견서 작성 양식 (평가위원용)	185
【붙임8】 종합평가 시정조치 이행계획 양식 (대상기관용)	192
【붙임9】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종합평가·중간컨설팅) 지침	196
【붙임10】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및 연구회 자체평가 세부추진계획	228

붙임1 종합평가 실적보고서 작성 양식 (대상기관용)

실적보고서 작성방법

〈기본사항〉

- ⊖ 종합평가 실시 직전 월 말 성과를 기준으로 연구지원 부문 및 연구·사업 부문의 실적보고서 작성
- ⊖ 작성 양식 및 기준을 준수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 달성도 및 달성 내용을 제시하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증빙자료 제시

〈보고서 작성요령〉

구 분	원 칙
① 작성 대상기간	- 기관장 부임 이후부터 종합평가 직전 월까지의 실적 ※ 중간컨설팅 평가점수 보유 기관 : 경영공통 분야는 중간컨설팅 이후부터 종합평가 직전 월까지의 실적 제시
② 용지 기준규격 및 편집방법	- A4 용지 규격 - 글자체/크기 : 휴먼명조 12pt(제목·본문), 중고딕 9pt(표) * 본문 이외의 제목 등은 자율
③ 분량	- 분량 제한 없음 * 평가대상기간 중 외부 감사 받은 회계 및 결산보고서 별첨
④ 인쇄 및 제출방법	- 흑백 인쇄본(A4 양면·좌철) 80부 제출 - 제출공문 및 전자파일(hwp, pdf) 별송
⑤ 제출기한	- 기관별 평가일정에 따라 별도 공지

☐ 실적보고서 양식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종합평가 실적보고서**

2020. .

○ ○ ○ 연구원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연구원의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실적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월

○ ○ ○ 연구원장 ○ ○ ○ (서명)

목 차

제1장 기관 현황

1. 일반현황
2. 비전 및 경영목표체계
3. 대내외 환경 분석
4. 성과목표별 목표 달성도 요약 (총괄표)
5. 중장기 발전계획 및 미래 발전전략

제2장 연구지원

- 제1편 총평 및 실적 요약
- 제2편 성과목표별 실적

제3장 연구·사업

- 제1편 총평 및 실적 요약
- 제2편 성과목표별 실적 요약

제4장 종합의견 및 정책건의

1. 종합의견
2. 정책건의

제5장 우수 및 미흡사례

- [붙임1] 연구성과계획서 점검의견 반영/미반영 현황 (세부내역)
- [붙임2] 중간컨설팅(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 개선·조치 현황 (세부내역)
- [붙임3] 감사결과 등 외부 지적사항 및 이행내역 (전체)
- [붙임4] 용어 정리

제1장 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가. 설립목적

○○○ (설립근거법, 정관 등 출처 기재)

나. 임무

- 설립근거법, 정관, 운영규정 등에 기재되어 있는 기관의 주요 사업 기술
-
-

다. 연혁

연도	주요 내용	비고
000.00.00.		

라. 인력 및 예산 현황

□ 조직도

- 기관 조직도 삽입

□ 인력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고용별	정규직	xxx (%)				
	무기직	xxx (%)				
	비정규직	xxx (%)				
	소 계	xxx (100%)				
직종별 (정규직)	연구직	xxx (%)				
	행정직	xxx (%)				
	교원	xxx (%)				
	기타	xxx (%)				
	소계	xxx (100%)				
박사학위자 수 (정규직)	연구직	xxx (%)				
	행정직	xxx (%)				
	교원	xxx (%)				
	기타	xxx (%)				
	소계	xxx (100%)				
성비 (정규직)	남/여 (여성 비율)	남성 명 / 여성 명 (%)				
평균연령 (정규직)	연구직	세				
	행정직	세				
	교원	세				
	기타	세				
	소계	세				

* 평가대상기관은 차수별 종합평가 직전 월까지의 기준으로 제시

※ 기관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 변경 가능

□ 부서별 직무현황

(단위: 명)

부서명	주요 직무	성과목표 ¹⁾	인원 ²⁾	세부 현황				
				정규직 ³⁾				비 정규직 ³⁾
				연구직 ⁴⁾	기술직 ⁴⁾	행정직 ⁴⁾	기타 ⁴⁾	
합 계								

1. 연구성과계획서에 제시된 부서별 담당 성과목표
2. 인원 = 정규직 + 비정규직
3.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름 (취업목적 여부)
4. 기관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 변경 가능

□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총 수입(A)	금 액	금액(100%)					
	증가율	%					
정부 출연금	금 액	금액(%)					
	증가율						
수탁	금 액	금액(%)					
	증가율						
자체 수입	금 액	금액(%)					
	증가율						
기타 수입	금 액	금액(%)					
	증가율						
전년도 이월금	금 액	금액(%)					
	증가율						
총 지출(B)	금 액	금액(100%)					
	증가율	%					
인건비	금 액						
	증가율						
직접비	금 액						
	증가율						
간접비	금 액						
	증가율						
시설 사업비 등	금 액						
	증가율						

※ 외부 회계감사 받은 결산 기준 작성 (2020년도의 경우 예산 기준)

□ 전략목표별 예산 및 인력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전략목표	성과목표	사업(과제)					예산				인력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대과제명	사업기간	주관기관	사업비		자체 수입	매칭 여부	연구 책임자명 (소속 직위)	참여 인력 수	실행부서
							출연금	수탁					
1. xxx													
소 계													
2. xxx													
소 계													
총 계													

※ 당해연도 기준

마. 주요 시설·장비 현황

연번	시설 장비명	제작사 및 모델명		취득비용 (백만 원)	취득방법	취득일	시설 장비용도	기타
		제작사 (국가명)	모델명					
1	○○○ (영문명)				구매, 임대, 제작의뢰, 자체 제작, 기타 중 택일	xxxxxx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중 택일	
2								
3								
4								
5								

※ 3천만 원 이상 시설·장비만 제시

2. 비전 및 경영목표체계

- 연구성과계획서에 제시된 비전·경영목표체계도 제시

3. 대내외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변화 분석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시점	종합평가 시점
정책적 환경	정책적 환경
○ ○ ○	○ ○ ○
과학·기술적 환경	과학·기술적 환경
○ ○ ○	○ ○ ○
경제·산업적 환경	경제·산업적 환경
○ ○ ○	○ ○ ○
사회·문화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 ○ ○	○ ○ ○
↓↓↓↓↓	
시사점	
○ ○ ○	

□ 내부 역량 변화 분석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시점	종합평가 시점
예산	예산
○ ○ ○	○ ○ ○
인력	인력
○ ○ ○	○ ○ ○
조직구조	조직구조
○ ○ ○	○ ○ ○
성과관리	성과관리
○ ○ ○	○ ○ ○
↓↓ ↓ ↓	
시사점	
○ ○ ○	

□ 종합 분석결과

		강점(S) 변화	약점(W) 변화
		내부역량 분석	[계획 수립 시점] ○ ○ ○
외부환경 분석		[평가 시점] ○ ○ ○	[평가 시점] ○ ○ ○
기회 (O) 변화		SO 전략 변화	WO 전략 변화
	[계획 수립 시점] ○ ○ ○	[계획 수립 시점] ○ ○ ○	[계획 수립 시점] ○ ○ ○
	[평가 시점] ○ ○ ○	[평가 시점] ○ ○ ○	[평가 시점] ○ ○ ○
위협 (T) 변화		ST 전략 변화	WT 전략 변화
	[계획 수립 시점] ○ ○ ○	[계획 수립 시점] ○ ○ ○	[계획 수립 시점] ○ ○ ○
	[평가 시점] ○ ○ ○	[평가 시점] ○ ○ ○	[평가 시점] ○ ○ ○

※ 제시된 양식은 예시이며 기관 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4 목표 달성도 총괄표

□ 연구지원 부문 (구 경영부문)

영역 1. xxx			배점 : 00점 / 78점 만점 ⁴⁾		
성과목표	배점 (%) ¹⁾	달성도 ³⁾	성과지표	배점 (%) ²⁾	달성도 ³⁾
x-x. xxx	00 (00%)	000%	x-x-x xxx	00 (00%)	000%
			x-x-x xxx	00 (00%)	000%
			x-x-x xxx	00 (00%)	000%
합 계	00 (00%)	-	-	-	-
영역 2. xxx			배점 : 00점 / 78점 만점 ⁴⁾		
성과목표	배점 (%) ¹⁾	달성도 ³⁾	성과지표	배점 (%) ²⁾	달성도 ³⁾
합 계	00 (00%)	-	-	-	-
영역 3. xxx			배점 : 00점 / 78점 만점 ⁴⁾		
성과목표	배점 (%) ¹⁾	달성도 ³⁾	성과지표	배점 (%) ²⁾	달성도 ³⁾
합 계	00 (00%)	-	-	-	-
영역 4. xxx			배점 : 00점 / 78점 만점 ⁴⁾		
성과목표	배점 (%) ¹⁾	달성도 ³⁾	성과지표	배점 (%) ²⁾	달성도 ³⁾
합 계	00 (00%)	-	-	-	-
영역 5. (자율) xxx			배점 : 00점 / 22점 만점 ⁴⁾		
성과목표	배점 (%) ¹⁾	달성도 ³⁾	성과지표	배점 (%) ²⁾	달성도 ³⁾
합 계	00 (00%)	-	-	-	-

1. 연구지원 부문 총점(100)에 대한 백분율
2. 성과목표(구 추진계획)배점에 대한 성과지표 배점 백분율
3.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4. 계획서 수립 시점에 따라 '78점:22점', '80점:20점'으로 기재

□ 연구사업부문

전략목표 1. xxx			배점 : 00점 / 100점 만점		
성과목표	배점 (%) ¹⁾	달성도 ³⁾	성과지표	배점 (%) ²⁾	달성도 ³⁾
x-x, xxx	00 (00%)	000%	x-x-x, xxx	00 (00%)	000%
			x-x-x, xxx	00 (00%)	000%
			x-x-x, xxx	00 (00%)	000%
합 계	00 (00%)	-	-	00 (00%)	-

전략목표 2. xxx			배점 : 00점 / 100점 만점		
성과목표	배점 (%) ¹⁾	달성도 ³⁾	성과지표	배점 (%) ²⁾	달성도 ³⁾
x-x, xxx	00 (00%)	000%	x-x-x, xxx	00 (00%)	000%
			x-x-x, xxx	00 (00%)	000%
			x-x-x, xxx	00 (00%)	000%
합 계	00 (00%)	-	-	00 (00%)	-

전략목표 n. xxx			배점 : 00점 / 100점 만점		
성과목표	배점 (%) ¹⁾	달성도 ³⁾	성과지표	배점 (%) ²⁾	달성도 ³⁾
x-x, xxx	00 (00%)	000%	x-x-x, xxx	00 (00%)	000%
			x-x-x, xxx	00 (00%)	000%
			x-x-x, xxx	00 (00%)	000%
합 계	00 (00%)	-	-	00 (00%)	-

1. 연구사업 부문 총점(100)에 대한 백분율
2. 성과목표 배점에 대한 성과지표 배점 백분율
3.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 중장기 계획 및 미래 발전전략

- 중장기 계획 및 미래 발전전략 요약 기술

※ 중장기 발전전략 별첨

제2장 연구지원

제1편 총평 및 실적 요약

1. 총평

총괄 의견

- 연구지원 분야 달성 성과의 우수한 점, 미흡한 점, 개선점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기술

◇

○

○

◇

○

○

◇

○

○

◇

○

○

2. 영역별 우수성과

영역	우수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16년도 하반기 이전 계획서 수립 기관은 조직인사복지후생, 예산연구윤리보안, 성과창출활용확산, 정책, 경영 자율로 구성

※ '16년도 하반기 이후 계획서 수립 기관은 4개 영역으로 구성 (『2017~2018년도 과기정통부 직할 출연(연) 및 연구회 평가 세부계획』 참조)

3. 주요 현안 해결 성과

□ ○ ○ ○	
배경	○ ○
주요 현안	○ ○
해결 성과 또는 향후 계획	○ ○

제2편 영역별 실적

1. 연구지원 공통분야

1] 성과목표별 달성도

작성 방법

- 성과목표(구 추진계획)의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 기재
 - (목표 달성도) 연구성과계획서에 제시한 목표치 대비 달성률을 0~100%로 제시
 - 목표치와 실적치를 모두 작성한 후 달성도를 산출·기재
 - 기관장 취임 이후부터 종합평가 실시 직전 월까지의 실적 제시
 - ※ 경영 공통영역에 대한 중간컨설팅 평가점수 보유기관은 평가 이후부터 종합평가 실시 직전까지의 실적 제시

(1) (영역/성과목표 1)

□ (성과목표/추진계획명 기재)

< 목표 달성도 >

성과 목표	배점	성과지표			연도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⁷⁾ (%)	지표 달성도	목표 달성도		
		지표명	유형 ¹⁾	가중치 ²⁾								
○○○○○		○○○○○			과거 실적 ³⁾	Y-3	-		00.00% ⁸⁾			
					Y-2							
					Y-1							
					중간 컨설팅 ⁴⁾	Y ⁶⁾						
					Y+1							
					종합 ⁵⁾ 평가	Y+2						
					Y+3(조정) ¹⁰⁾							
					과거 실적 ³⁾	Y-3	-				00.00% ⁸⁾	
					Y-2							
					Y-1							
중간 컨설팅 ⁴⁾	Y ⁶⁾											
Y+1												
종합 ⁵⁾ 평가	Y+2											
Y+3(조정) ¹⁰⁾												

1) 지표 특성에 따라 누적형, 독립형, 최종형, 감소형으로 구분하여 기재

2) 합이 100이 되도록 지표별 가중치 기재

- 3) 기관장 부임 이전 3년치 실적
- 4) 기 평가 받은 중간컨설팅 목표치 및 인정 실적치
- 5) 종합평가 대상 목표치 및 실적치
- 6) 기관장 부임연도
- 7) 연도별 달성률 (%) = 연도별 실적치 / 목표치 × 100
- 8) 성과지표별 달성도 = (정량목표) 본문 내 성과지표 유형별 산정기준 참조, (정성목표) 세부 추진항목을 대상으로 정량 달성도 제시
- 9) 성과목표별 달성도 : Σ(성과지표별 달성도×성과지표별 가중치)
 ※ 목표달성도 점수 산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10) 평가시기에 따른 임기 말 목표 조정치 기재

〈 성과지표 및 목표치 현황 〉

성과지표 (배점)	세부내용		목표 도출근거	목표치 조정	측정산식
○○○○○ (00)	2018년	○○○	목표치 도출 근거 (산정 근거 등) 기재	임기 마지막 해 목표치 상세 조정 내역	지표별 측정산식 기재
	2019년	○○○			
	2020년 최종 ¹⁾	○○○			
	2020년 조정 ²⁾	○○○			
○○○○○ (00)	2018년	○○○	목표치 도출 근거 (산정 근거 등) 기재	임기 마지막 해 목표치 상세 조정 내역	지표별 측정산식 기재
	2019년	○○○			
	2020년 최종 ¹⁾	○○○			
	2020년 조정 ²⁾	○○○			

- 1) 연구성과계획서상 임기말 목표치 기재
- 2) 평가시기에 따른 임기 말 목표 조정치 기재

〈 증빙자료 〉

성과지표	증빙자료명	쪽 번호
1. ○○○	1-1-1. ○○○	p.00
	1-2-1. ○○○	
2. ○○○	2-1-1. ○○○	

(2) (영역 2/성과목표) <상동>

(3) (영역 3/성과목표) <상동>

(4) ...

2 통합 우수성과 및 실적

작성 방법

- 영역별 성과
 - 영역(성과목표)별 주요 성과를 개조식으로 작성
- 종합 성과
 - 기관장 취임 이후 기관운영 실적(조직·인사·사업관리·성과관리제도, 기관특성별 대표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

(1) 영역별 주요 성과

[성과목표별 주요 요약]

영역명	내 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성과를 개조식으로 작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2) 종합 성과

- 기관장 취임 이후 기관운영 실적(조직인사사업관리성과관리제도, 기관특성별 대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
- 성과의 질적 우수성
 -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대변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논리적으로 기술
 -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비교분석 자료에 입각하여 작성
 - 지원기관의 경우 성과에 대한 실질적 기여부분을 명확히 기술
- 달성 과정의 적절성 (선택)
 - 중간컨설팅 평가 이후 추진계획 대비 달성 현황 기술
 - ※ 중간컨설팅 평가점수 미 보유 기관은 기관장 부임년도부터 기술
 - 임기 내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였던 추진전략 기술
 - ※ 별도의 추진체계가 있는 경우 추진체계 제시

- 추진과정에서 성과 도출의 지연 혹은 목표치 미달성 시 사유 기술
- 당초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선택)
 -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시 설정한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 기술
 - ※ 목표가 아닌 달성한 성과의 혁신성은 '질적 우수성' 항목에서 제시 요망
- 기관장 임기 내 예상 성과
 - 기관장 임기 종료 전까지 달성 가능한 예상 성과 기술 (정량 수치 포함)

〈 기관장 임기 내 예상 성과 〉

성과	성과 내용
○○○	○ ○ ○
○○○	○ ○ ○

- 기관장 중도사퇴가 성과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시
 - ※ 기관장 중도 사퇴 시에만 작성

〈 기관장 중도사퇴로 인한 특이사항 〉

성과	미달성 사항	미달성 요인 분석	기타
○○○	○ ○ ○		
○○○	○ ○ ○		

〈 (참고) 선진기관 대비 비교 · 분석표 〉

연구 분야	기관명	성과수준	기관 성과	
			현재	D+2년후
			(선진기관 대비 수준 %)	(선진기관 대비 수준 %)

○ 정부정책 반영 현황 (필요 시)

정책명	정책목표	추진 현황

○ 대내외 지적사항 및 이행내역

〈 요약 〉

구분	지적사항 수	이행내역		
		추진 완료	개선 중 /향후추진	미반영
연구성과계획서(초안) 점검의견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중간컨설팅 평가 지적·권고사항 (평가점수 보유기관 해당)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중간컨설팅 컨설팅 의견 (컨설팅 자율 실시 기관 해당)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중간컨설팅 결과 검토의견 (컨설팅 자율 실시 기관 해당)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부처 감사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감사원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국회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기타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 외부 지적사항은 국회(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산, 예산정책처), 과기정통부, 감사원 지적사항 필수 포함

〈 세부 지적사항 이행내역 〉

구분	지적사항	이행내역	쪽번호
경영성과계획서 (초안) 점검의견			
중간컨설팅 평가 지적· 권고사항 (평가점수 보유기관 해당)			
중간컨설팅 컨설팅 의견 (컨설팅 자율 실시 기관 해당)			
중간컨설팅 결과 검토의견 (컨설팅 자율 실시 기관 해당)			
부처 감사			
감사원			
국회			
기타			

※ 지적사항의 이행내역 중 '개선 중' 및 '향후추진'은 추진현황 및 계획, '미반영'은 미 이행 사유 제시
(붙임자료에서 기재한 이행내역을 요약 제시하고 해당 세부내역이 기재된 쪽 번호 기재)

〈 증빙 자료 〉

※ 목표 달성도 및 달성 내용에 대한 상세 증빙자료 제시

- 별도 자료 작성 없이 기존 자료의 관련 내용 첨삭 제출 (별도 첨부 가능)
- 예시 : 공문, 기안문, 내부 규정, 내부 결재 문서 등
 - 예산 절감률, 참석률, 이행률 등의 정량 목표치의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해당 수치가 계산되어야 함
 - 계획 수립 및 실시 등의 정성적 목표치의 경우 관련 안건의 첫 페이지 및 주요 내용이 기재된 본문을 발췌 제시

2. 경영 자율분야 (자율 목표가 설정된 기관에 해당)

작성 방법

- 경영부문 자율분야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와 '달성 내용' 기재
 - (목표 달성도) 연구성과계획서에 제시한 목표치 대비 실적치를 0~100%로 제시
 - 목표치와 실적치를 모두 작성한 후 달성도를 산출·기재
 - 기관장 취임 이후부터 종합평가 직전 월까지의 실적 기재
 - (달성 내용) 성과지표로 제시된 성과의 질적 우수성, 달성 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 질적 우수성, 달성 과정의 적절성 등의 평가항목은 사전 협의 필요
 - ※ 달성 성과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

(1) (성과목표명 기재)

1) 목표 달성도

성과 목표	배점	성과지표			연도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⁶⁾ (%)	지표 달성도	목표 달성도					
		지표명	유형 ¹⁾	가중치 ²⁾											
○○○○○		○○○○○			과거 실적 ³⁾	Y-3	-								
						Y-2									
						Y-1									
					종합평가 ⁴⁾	Y ⁶⁾		00.00% ⁷⁾							
						Y+1									
						Y+2									
						Y+3(조정) ⁸⁾									
					○○○○○		○○○○○			과거 실적 ³⁾	Y-3	-			
											Y-2				
											Y-1				
종합평가 ⁴⁾	Y ⁶⁾		00.00% ⁷⁾												
	Y+1														
	Y+2														
	Y+3(조정) ⁸⁾														

- 1) 지표 특성에 따라 누적형, 독립형, 최종형, 감소형으로 구분하여 기재
- 2) 합이 100이 되도록 지표별 가중치 기재
- 3) 기관장 부임 이전 3년치 실적치
- 4) 종합평가 대상 목표치 및 실적치
- 5) 기관장 부임연도
- 6) 연도별 달성률 (%) = 연도별 실적치 / 목표치 × 100
- 7) 성과지표별 달성도 = (정량목표) 본문 내 성과지표 유형별 산정기준 참조, (정성목표) 세부 추진항목을 대상으로 정량 달성도 제시
- 8) 성과목표별 달성도 : $\Sigma(\text{성과지표별 달성도} \times \text{성과지표별 가중치})$
 ※ 목표달성도 점수 산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9) 평가시기에 따른 임기 말 목표 조정치 기재

〈 성과지표 및 목표치 현황 〉

성과지표 (배점)	세부내용		목표 도출근거	목표치 조정	측정산식
○○○○○ (00)	2018년	000	목표치 도출 근거 (산정 근거 등) 기재	임기 마지막 해 목표치 상세 조정 내역	지표별 측정산식 기재
	2019년	000			
	2020년 최종 ¹⁾	000			
	2020년 조정 ²⁾	000			
○○○○○ (00)	2018년	000	목표치 도출 근거 (산정 근거 등) 기재	임기 마지막 해 목표치 상세 조정 내역	지표별 측정산식 기재
	2019년	000			
	2020년 최종 ¹⁾	000			
	2020년 조정 ²⁾	000			

1) 연구성과계획서상 임기말 목표치 기재

2) 평가시기에 따른 임기 말 목표 조정치 기재

〈 증빙자료 〉

성과지표	증빙자료명	쪽 번호
1. 000	1-1-1. 000	p.00
	1-2-1. 000	
2. 000	2-1-1. 000	

2) 달성내용

□ 성과지표 ○○○

- 성과의 질적 우수성
 -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대변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논리적으로 기술
 -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비교분석 자료에 입각하여 작성
 - 지원기관의 경우 성과에 대한 실질적 기여부분을 명확히 기술
- 달성 과정의 적절성
 - 당초 추진계획 대비 달성 현황 기술
 - 임기 내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였던 추진전략 기술
 - ※ 별도의 추진체계가 있는 경우 추진체계 제시
 - 추진과정에서 성과 도출의 지연 혹은 목표치 미달성 시 사유 기술
- 당초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시 설정한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 기술
 - ※ 목표가 아닌 달성한 성과의 혁신성은 '질적 우수성' 항목에서 제시 요망
- 기관장 임기 내 예상 성과
 - 기관장 임기 종료 전까지 달성 가능한 예상 성과 기술 (정량 수치 포함)

〈 기관장 임기 내 예상 성과 〉

성과	성과 내용
○○○	○ ○ ○
○○○	○ ○ ○

- 기관장 중도사퇴가 성과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시
 - ※ 기관장 중도 사퇴 시에만 작성

〈 기관장 중도사퇴로 인한 특이사항 〉

성과	미달성 사항	미달성 요인 분석	기타
○○○	○ ○ ○		
○○○	○ ○ ○		

〈 (참고) 유사기관 대비 비교·분석표 〉

연구 분야	기관명	성과수준	기관 성과	
			현재 (선진기관 대비 수준 %)	D+2년후 (선진기관 대비 수준 %)

3) 새로운 성과

성과명	○○○
달성내용	
성과의 질적 우수성	
성과목표와의 부합성	

※ 당초 설정된 목표·지표 이외에 새로운 성과가 있을 시 기술

※ 질적 우수성 및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성평가에 반영

4) 대내외 지적사항 및 이행내역

〈 요약 〉

구분	지적사항 수	이행내역		
		추진 완료	개선 중 /향후추진	미반영
연구성과계획서(초안) 점검의견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중간컨설팅 평가 지적·권고사항 (평가점수 보유기관 해당)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중간컨설팅 컨설팅 의견 (컨설팅 자율 실시 기관 해당)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중간컨설팅 결과 검토의견 (컨설팅 자율 실시 기관 해당)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부처 감사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감사원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국회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기타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 외부 지적사항은 국회(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산, 예산정책처), 과기정통부, 감사원 지적사항 필수 포함

〈 세부 지적사항 이행내역 〉

구분	지적사항	이행내역	쪽번호
경영성과계획서 (초안) 점검의견			
중간컨설팅 평가 지적· 권고사항 (평가점수 보유기관 해당)			
중간컨설팅 컨설팅 의견 (컨설팅 자율 실시 기관 해당)			
중간컨설팅 결과 검토의견 (컨설팅 자율 실시 기관 해당)			
부처 감사			
감사원			
국회			
기타			

※ 지적사항의 이행내역 중 '개선 중' 및 '향후추진'은 추진현황 및 계획, '미반영'은 미 이행 사유 제시 (붙임자료에서 기재한 이행내역을 요약 제시하고 해당 세부내역이 기재된 쪽 번호 기재)

5) 증빙 자료

※ 목표 달성도 및 달성 내용에 대한 상세 증빙자료 제시

- 별도 자료 작성 없이 기존 자료의 관련 내용 첨삭 제출 (별도 첨부 가능)
- 예시 : 공문 기안문 내부 규정, 내부 결재 문서 등
 - 예산 절감률, 참석률, 이행률 등의 정량 목표치의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해당 수치가 계산되어야 함
 - 계획 수립 및 실시 등의 정성적 목표치의 경우 관련 안건의 첫 페이지 및 주요 내용이 기재된 본문을 발췌 제시

2.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작성 방법

- 기관장 임기 동안의 연구지원 및 현안대응 성과 기재
 - 일자리 창출 실적 (30% 반영)
 - 기타 출연(연) 공통 정부정책 이행 실적
 - 인권 우선 정책 실현 (특성화대학 필수)
 - 기관의 정책 및 기술 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처 내용
 - 필수 반영사항에 미 포함된 추가 성과

□ 일자리 창출 실적 (필수)

- 성과의 질적 우수성
 -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대변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논리적으로 기술
 -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비교분석 자료에 입각하여 작성
- 달성 과정의 적절성
 - 당초 추진계획 대비 달성 현황 기술
 - 임기 내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였던 추진전략 기술
 - ※ 별도의 추진체계가 있는 경우 추진체계 제시
- 기관장 임기 내 예상 성과
 - 기관장 임기 종료 전까지 달성 가능한 예상 성과 기술 (정량 수치 포함)
 - 기관장 중도사퇴가 성과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시
 - ※ 기관장 중도 사퇴 시에만 작성

□ 기타 출연(연) 공통 정부정책 이행 실적

○ 성과의 질적 우수성

-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대변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논리적으로 기술
-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비교분석 자료에 입각하여 작성
- ※ 달성 과정의 적절성 외 추가항목 설정 가능

□ 기관의 정책 및 기술 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처 내용

○ 성과의 질적 우수성

-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대변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논리적으로 기술
-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비교분석 자료에 입각하여 작성
- ※ 달성 과정의 적절성 외 추가항목 설정 가능

□ 필수 반영사항에 미 포함된 추가 성과

○ 성과의 질적 우수성

-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대변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논리적으로 기술
-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비교분석 자료에 입각하여 작성
- ※ 달성 과정의 적절성 외 추가항목 설정 가능

제3장 연구·사업

제1편 총평 및 실적 요약

1. 총평

총괄 의견

- 연구·사업부문 달성 성과의 우수한 점, 미흡한 점, 개선점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기술

◇

○

○

◇

○

○

◇

○

○

◇

○

○

◇

○

○

2. 성과목표별 실적 요약

1. (전략목표 1)		배점 : 00점 / 100점 만점	
성과목표	배점 (%) ¹⁾	주요 성과	달성도
0-0, 000		- 주요 성과를 요약 제시	000%
합 계	00 (000%)	-	-

2. (전략목표 2)		배점 : 00점 / 100점 만점	
성과목표	배점 (%) ¹⁾	주요 성과	달성도
0-0, 000		- 주요 성과를 요약 제시	000%
합 계	00 (000%)	-	-

4. (전략목표 n)		배점 : 00점 / 100점 만점	
성과목표	배점 (%) ¹⁾	주요 성과	달성도
0-0, 000		- 주요 성과를 요약 제시	000%
합 계	00 (000%)	-	-

1. 연구·사업부문 배점 100점에 대한 백분율

3. 추진 체계

전략목표	구분	내용				
전략목표 ○○○	사업	사업명 (출연, 수탁 중 택일)		○○○ 백만 원		
		사업명 (출연, 수탁 중 택일)		○○○ 백만 원		
		합 계		총 백만 원		
	조직·인력	부서명	업무	인력		
				정규직	비정규직	
		부서명 기재	추진체계 내 담당 업무 기재			
		부서명 기재	추진체계 내 담당 업무 기재			
		부서명 기재	추진체계 내 담당 업무 기재			
	전략목표 ○○○	사업	사업명 (출연, 수탁 중 택일)		○○○ 백만 원	
			사업명 (출연, 수탁 중 택일)		○○○ 백만 원	
합 계			총 백만 원			
조직·인력		부서명	업무	인력		
				정규직	비정규직	
		부서명 기재	추진체계 내 담당 업무 기재			
		부서명 기재	추진체계 내 담당 업무 기재			
		부서명 기재	추진체계 내 담당 업무 기재			

5.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전략

전략목표 000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향후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p>(참고) 목표 달성 로드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15%;">연구분야</th> <th style="width: 15%;">과거 (xxxx~xxxx)</th> <th style="width: 15%;">현 기관장 임기 (xxxx~xxxx)</th> <th style="width: 15%;">향후 (xxxx~xxxx)</th> <th style="width: 15%;">최종목표 (xxxx)</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연구분야	과거 (xxxx~xxxx)	현 기관장 임기 (xxxx~xxxx)	향후 (xxxx~xxxx)	최종목표 (xxxx)															
연구분야	과거 (xxxx~xxxx)	현 기관장 임기 (xxxx~xxxx)	향후 (xxxx~xxxx)	최종목표 (xxxx)																	

제2편 성과목표별 실적

작성 방법

- 연구·사업부문 성과목표의 '목표 달성도' 및 '달성내용' 기재
 - (목표 달성도) 연구성과계획서에 제시한 목표치 대비 달성도를 0~100%로 제시
 - 목표치와 실적치를 모두 작성한 후 달성도를 산출·기재
 - 기관장 취임 이후부터 종합평가 직전 월까지의 실적 기재
 - (달성 내용) 성과지표별로 제시된 성과의 질적 우수성, 달성 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 질적 우수성, 달성 과정의 적절성 등의 평가항목은 사전 협의 필요
 - ※ 달성 성과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

1. (전략목표명 기재)

(1) (성과목표명 기재)

1) 목표 달성도

성과 목표	배점	성과지표			연도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⁶⁾ (%)	지표 달성도	목표 달성도							
		지표명	유형 ¹⁾	가중치 ²⁾													
○○○○○		○○○○○			과거 실적 ³⁾	Y-3	-		00.00% ⁷⁾	00.00% ⁸⁾							
						Y-2											
						Y-1											
					종합평가 ⁴⁾	Y ⁵⁾											
						Y+1											
						Y+2											
						Y+3(조정) ⁵⁾											
					○○○○○		○○○○○					과거 실적 ³⁾	Y-3	-		00.00% ⁷⁾	00.00% ⁸⁾
													Y-2				
													Y-1				
종합평가 ⁴⁾	Y ⁵⁾																
	Y+1																
	Y+2																
	Y+3(조정) ⁵⁾																

- 1) 지표 특성에 따라 누적형, 독립형, 최종형, 감소형으로 구분하여 기재
- 2) 합이 100이 되도록 지표별 가중치 기재
- 3) 기관장 부임 이전 3년치 실적치
- 4) 종합평가 대상 목표치 및 실적치
- 5) 기관장 부임연도
- 6) 연도별 달성률 (%) = 연도별 실적치 / 목표치 × 100
- 7) 성과지표별 달성도 = (정량목표) 본문 내 성과지표 유형별 산정기준 참조, (정성목표) 세부 추진항목을 대상으로 정량 달성도 제시
- 8) 성과목표별 달성도 : $\Sigma(\text{성과지표별 달성도} \times \text{성과지표별 가중치})$
 ※ 목표달성도 점수 산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9) 평가시기에 따른 임기 말 목표 조정치 기재

〈 성과지표 및 목표치 현황 〉

성과지표 (배점)	세부내용		목표 도출근거	목표치 조정	측정산식
○○○○○ (00)	2018년	000	목표치 도출 근거 (산정 근거 등) 기재	임기 마지막 해 목표치 상세 조정 내역	지표별 측정산식 기재
	2019년	000			
	2020년 최종 ¹⁾	000			
	2020년 조정 ²⁾	000			
○○○○○ (00)	2018년	000	목표치 도출 근거 (산정 근거 등) 기재	임기 마지막 해 목표치 상세 조정 내역	지표별 측정산식 기재
	2019년	000			
	2020년 최종 ¹⁾	000			
	2020년 조정 ²⁾	000			

1) 연구성과계획서상 임기말 목표치 기재

2) 평가시기에 따른 임기 말 목표 조정치 기재

〈 증빙자료 〉

성과지표	증빙자료명	쪽 번호
1. 000	1-1-1. 000	p.00
	1-2-1. 000	
2. 000	2-1-1. 000	

2) 달성 내용

□ 성과지표 ○○○

- 성과의 질적 우수성
 -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대변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논리적으로 기술
 -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비교분석 자료에 입각하여 작성
 - 지원기관의 경우 성과에 대한 실질적 기여부분을 명확히 기술
- 달성 과정의 적절성
 - 당초 추진계획 대비 달성 현황 기술
 - 임기 내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였던 추진전략 기술
 - ※ 별도의 추진체계가 있는 경우 추진체계 제시
 - 추진과정에서 성과 도출의 지연 혹은 목표치 미달성 시 사유 기술
- 당초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시 설정한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 기술
 - ※ 목표가 아닌 달성한 성과의 혁신성은 '질적 우수성' 항목에서 제시 요망
- 기관장 임기 내 예상 성과
 - 기관장 임기 종료 전까지 달성 가능한 예상 성과 기술 (정량 수치 포함)

〈 기관장 임기 내 예상 성과 〉

성과	성과 내용
○○○	○ ○ ○
○○○	○ ○ ○

- 기관장 중도사퇴가 성과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시

※ 기관장 중도 사퇴 시에만 작성

〈 기관장 중도사퇴로 인한 특이사항 〉

성과	미달성 사항	미달성 요인 분석	기타
○○○	○ ○ ○		
○○○	○ ○ ○		

〈 (참고) 유사기관 대비 비교·분석표 〉

연구 분야	기관명	성과수준	기관 성과	
			현재	D+2년후
			(선진기관 대비 수준 %)	(선진기관 대비 수준 %)

3) 새로운 성과

성과명	○○○
달성내용	
성과의 질적 우수성	
성과목표와의 부합성	

※ 당초 설정된 목표·지표 이외에 새로운 성과가 있을 시 기술

※ 질적 우수성 및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성평가에 반영

4) 대내외 지적사항 및 이행내역

〈 요약 〉

구분	지적사항 수	이행내역		
		추진 완료	개선 중 /향후추진	미반영
연구성과계획서(초안) 점검의견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중간컨설팅 평가 지적·권고사항 (평가점수 보유기관 해당)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중간컨설팅 컨설팅 의견 (컨설팅 자율 실시 기관 해당)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중간컨설팅 결과 검토의견 (컨설팅 자율 실시 기관 해당)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부처 감사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감사원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국회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기타	00개	00개	00개	00개
	100%	00%	00%	00%

※ 외부 지적사항은 국회(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산, 예산정책처), 과기정
통부, 감사원 지적사항 필수 포함

〈 세부 지적사항 이행내역 〉

구분	지적사항	이행내역	쪽번호
경영성과계획서 (초안) 점검의견			
중간컨설팅 평가 지적· 권고사항 (평가점수 보유기관 해당)			
중간컨설팅 컨설팅 의견 (컨설팅 자율 실시 기관 해당)			
중간컨설팅 결과 검토의견 (컨설팅 자율 실시 기관 해당)			
부처 감사			
감사원			
국회			
기타			

※ 지적사항의 이행내역 중 '개선 중' 및 '향후추진'은 추진현황 및 계획, '미반영'은 미 이행 사유 제시
(붙임자료에서 기재한 이행내역을 요약 제시하고 해당 세부내역이 기재된 쪽 번호 기재)

(참고) 사업·예산·인력·조직

내역사업명	대과제명	예산	인력	수행 조직 ¹⁾
(출연/수탁)				

1) 실행부서 단위

5) 증빙 자료

※ 목표 달성도 및 달성 내용에 대한 상세 증빙자료 제시

- 별도 자료 작성 없이 기존 자료의 관련 내용 첨삭 제출 (별도 첨부 가능)
- 예시 : 특허 청구항, 공문, 기안문, 내부 규정, 내부 결재 문서 등
 - 특허 및 논문은 일자, 성명, 소속 등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발췌 제시
 - 기술이전 성과는 관련 기안, 공문, 계약서 등 발췌 제시
 - 기술성능 성과지표는 해당 기술의 성능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시

2. (전략목표 2)

<상동>

3. (전략목표 n)

<상동>

제4장 종합의견 및 정책건의

1. 종합의견

2. 정책건의

구 분	의 건
평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기관 육성 및 발전정책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제5장 우수사례

작성 방법

- 연구지원 및 연구·사업 부문의 우수사례 기술
- 대표 우수사례를 기재하되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작성
 - 연구·사업부문의 경우 필요 시 전략목표를 기준으로 작성 가능
 - 연구지원 부문 1건, 연구·부문 3건, 총 4건 이내 제출
 - ※ 우수사례가 없는 경우 미 제시 가능

1. 연구지원 부문

사례명	○○○○
구분	연구지원
관련 성과목표	○○○
책임자	○○○ 직위/직급 (부서명)
참여 인력	○○○ 외 ○○ 명
추진 기간	0000.00. ~ 0000.00. (총 개월)
요지	○ ○

<p>제안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p>추진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사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p>대표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기타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2. 연구·사업부문

사례명	○○○○		
구분	연구사업 또는 경영 자율		
관련 성과목표	○○○		
책임자	○○○ 직위/직급 (부서명)		
참여 인력	○○○ 외 ○○ 명		
외부 참여 기관	총 ○○개 기관	(참여형태)	(기관명)
		(참여형태)	(기관명)
		(참여형태)	(기관명)
예산	총 예산	백만 원	
	집행 예산	백만 원	
사업 기간	0000.00. ~ 0000.00. (총 개월)		
요지	○ ○		
제안 사유	○ ○		

<p>사업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사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p>대표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p>파급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기타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 참여형태 : 협동, 공동, 위탁, 기타 중 택일

※ 예산 : 다년도 과제의 경우 사업의 총 예산과 현재까지 사용된 예산 금액 기재

[붙임 1] 연구성과계획서 점검의견 반영/미반영 현황 (세부내역)

No.	부문	성과목표	평가위원회 점검의견	평가대상기관 이행현황			비고 (반영쪽)
				이행 여부	이행내역 및 계획	완료 예정일*	
경영 목표- 1	경영 목표 체계	경영목표 체계	○	반영 / 추진중 / 미반영	○	18.12 월	
경영 목표- 2	경영 목표 체계	임무체계	○	반영 / 추진중 / 미반영	○		
연구- 1	연구 사업	1-1. ○○○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	반영 / 추진중 / 미반영	○		
연구- 2	연구 사업	1-1. ○○○	○ (성과지표 0-0-0 - 대표성)	반영 / 추진중 / 미반영	○		
연구 지원- 1	연구 지원	1-1. ○○○	○ (우수 연구인력 및 우수 연구지원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 ○○○	반영 / 추진중 / 미반영	○		
					○		
					○		
연구 지원- 2	연구 지원	1-1. ○○○	○ (성과지표 0-0-0 - 대표성)	반영 / 추진중 / 미반영	○		

* 기관장 임기 내 완료 예정일 기재

120 •• [붙임 2] 중간컨설팅(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 개선·조치 현황 (세부내역)

□ 기관 자율 중간컨설팅 의견 이행현황

No.	부문	성과목표	평가위원회 점검의견	평가대상기관 이행현황			비고 (반영쪽)
				이행 여부	이행내역 및 계획	완료 예정일*	
연구-1	연구 사업	1-1. 0000	○	반영 / 추진중 / 미반영	○		
연구-2	연구 사업	1-1. 0000	○	반영 / 추진중 / 미반영	○		
연구 지원-1	연구 지원	1-1. 0000	○	반영 / 추진중 / 미반영	○		
					○		
					○		
연구 지원-2	연구 지원	1-1. 0000	○	반영 / 추진중 / 미반영	○		

* 기관장 임기 내 완료 예정일 기재

② 부처 검토의견 이행현황

No.	부문	성과목표	평가위원회 점검의견	평가대상기관 이행현황			비고 (반영쪽)
				이행 여부	이행내역 및 계획	완료 예정일*	
연구 1	연구 사업	1-1. 000	○	반영 / 추진중 / 미반영	○		
연구 2	연구 사업	1-1. 000	○	반영 / 추진중 / 미반영	○		
연구 지원- 1	연구 지원	1-1. 000	○	반영 / 추진중 / 미반영	○		
					○		
					○		
연구 지원- 2	연구 지원	1-1. 000	○	반영 / 추진중 / 미반영	○		

* 기관장 임기 내 완료 예정일 기재

② 연구성과계획서 수정

□ 성과목표명

수정 제안 주체		평가대상기관 / 컨설팅위원회
경영 계획서	성과목표	
	추진계획	
	성과지표	
	측정방안	
컨설팅 제안	성과목표	
	추진계획	
	성과지표	
	측정방안	
반영 결과	성과목표	
	추진계획	
	성과지표	
	측정방안	

- 수용 혹은 불수용 근거
 -
 - ※ 목표치의 단순 하향 조정 및 임의 변경은 불허

- 수정 방안
 -
 - ※ 수용 근거에 따른 수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③ 검토결과 종합

수정 전			컨설팅	수정근거	수정 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붙임 3] 감사결과 등 외부 지적사항 및 이행내역 (전체)

□ 〇〇〇 (과기정통부/감사원/국회 등)

번호	관련 성과 목표	일시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여부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1		0000.00	- 시장처리사항 요약 기재	추진 완료 / 개선중 / 향후 추진 / 미완료	가. 시장처리결과 - (추진시기) 추진시기 기재 - (추진 완료) 시장내역 기재 나. 향후 추진계획 - (개선중 미완료 향후 추진) 개선중 미완료 향후 추진 사유 및 추진계획 기재 - 시정 완료시기 기재
2		0000.00	- 시장처리사항 요약 기재	추진 완료 / 개선중 / 향후 추진 / 미완료	가. 시장처리결과 - (추진시기) 추진시기 기재 - (추진 완료) 시장내역 기재 나. 향후 추진계획 - (개선중 미완료 향후 추진) 개선중 미완료 향후 추진 사유 및 추진계획 기재 - 시정 완료시기 기재
3					

※ 국회 지적사항은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산, 예산정책처 지적 사항 필수 포함

[붙임 4] 용어 정리

용어(약어)	설명	비고
...		

※ 일반 국민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적보고서상 제시된 전문적인 용어 혹은 약어에 대한 설명 작성

1. 종합

1. 종합평가 결과

□ 최종 종합점수 및 등급

기관명	최종 종합점수	등급
	00.00점 / 100.00점	

(참고) 종합등급 기준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종합평가	9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이상	60점 미만

□ 부문별 종합점수

기관명	부문		종합점수	
	경영 공통	중간컨설팅 평가 (30%)	00.00점 / 20.00점 (00%)	
		종합평가 (48%)		
	경영 자율 (22%)			
	연구·사업 (100%)			00.00점 / 80.00점 (00%)
	가점			00.00점
	감점			-00.00점
	총합			00.00점 / 100.00점 (00%)

(참고) 가감점 기준

가점	- 기관장 취임 이후 종합평가 시점까지 가점 항목 발생 시 최대 2점 이내에서 가점 부여 ※ 세계 유수의 상은 예외적으로 한도 외 적용
감점	-기관장 취임 이후부터 종합평가기간 내에 감점 항목 발생 시 최대 3점 감점

2. 종합 분석

※ 평가결과의 종합분석을 토대로 기관 전반적 평가의견 기술

■ 비전과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부합성

- 기관 고유임무와 전략목표체계 간 연계성·부합성 등
-

■ 고유임무와 조직과의 연계성

-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관의 조직·예산·사업구조의 효과적 구성 여부 분석
-

※ 부족한 평가를 받은 성과목표의 조직, 사업, 인력 등에 대한 조정 등 검토의견 필수

■ 고유임무와 주요성과의 연계성

-
-

■ 기관의 당면 과제

-
-

■ 미래 발전전략

-
-

■ 정책제언

○ 정부에 대한 제언

-
-

○ 기관장에 대한 제언

-
-

○ 평가제도에 대한 제언

-
-

II. 연구지원부문

제1장. 연구지원부문 평가결과

□ 종합점수

부문		최종 종합점수
연구지원	공통	00.00점 / 48.00점
	자율	00.00점 / 22.00점

□ 성과목표별 종합점수

부문	성과목표 (배점)	추진계획 (배점)	목표달성도 (60%)		정성평가 (40%)		종합점수	
			달성도%	점수	등급	점수		
연구지원 공통	성과목표 1.0000				A	00.00	00.00점 /78점	
	성과목표 2.0000							
	성과목표 3.0000							
	성과목표 4.0000							
자율	성과목표 5-1.						00.00점 /22점	
	성과목표 5-2							
합계						100.00점	00.00점	

제2장. 연구지원부문 총괄 의견 [간사위원 작성]

※ 평가 의견의 단순 요약이 아닌 핵심적인 평가 사안을 중심으로 기술

■ 종합의견

-
-

■ 우수한 점 (가장 눈에 띄는 핵심성과 2~3가지만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
-

〈 우수 사례 (안) 〉

관련 성과목표/지표	사례 선정 사유
○	-
○	-
○	-

■ 미흡한 점 (가장 눈에 띄는 미흡한 점 2~3가지만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
-

〈 미흡 사례 (안) 〉

관련 성과목표/지표	사례 선정 사유
○	-
○	-
○	-

※ 매우미흡을 받은 지표 등을 중심으로 최소 1건에서 최대 3건 제시 (미흡사례가 없는 경우 미선정 사유 필요)

■ 개선 및 발전사항

-
-

※ 개선 및 발전사항의 경우 평가의견을 '~방안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여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제안함' 등으로 구체적 제시

■ 정책제언 등 기타

-
-

제3장. 영역별 평가결과

1. 연구지원 공통분야

1] 성과목표별 달성도

연구지원부문 목표달성도 평가기준

- ✓ 평가대상 최종년도 목표치 산정 시 실적의 균등 (월할) 반영 여부
 - ※ 불균등 반영 시 근거 및 산정방식 제시 여부, 근거의 타당성
- ✓ 초과 실적의 달성도
 - ※ 100%를 초과하는 성과지표 달성도에 대해 100%까지만 반영하여 항목별 달성도 산정
- ✓ 세부 이행항목 제시, 이행항목 및 비율의 적정성
 - ※ 정성목표의 경우 세부 이행항목의 제시 및 타당성
 - ※ 정성목표의 세부항목별 가중치 미설정시 세부항목 수 기준 균등 반영
- ✓ 기관 제시 달성도 성립 요건 및 차감 요인 적용
 - ※ 달성도 성립 요건 판단 기준

- 평가기준 미이행 : 성과계획서 수립 시 제시한 세부 목표치, 산출식, 검증방법 등 평가기준 미이행 시 해당 비율만큼 달성도 차감
- 평가지표별 목표 내용 불일치 : 성과계획서에 제시한 지표별 성과목표 내용에 적절하지 않은 성과 제시 시 해당 비율만큼 달성도 차감
- 평가대상기간 불일치 : 평가대상기간 중 실적이 아닌 경우 해당 비율만큼 달성도 차감

※ 달성도 차감 요인 판단 기준

- 허위·부당 실적 : 허위 또는 부당 실적일 경우 해당 비율만큼 달성도 차감
- 중복·과다계상 : 평가 기준에 비주어 과다계상 되었을 경우 해당 비율만큼 달성도 차감
- 질적수준 : 질적 수준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해당 비율만큼 달성도 차감

※ 중복 적용 시 가장 큰 하나의 해당 항목에서만 차감

《 전문가 정성평가 등급 판단 기준 (예시)* 》

질적 우수성 (70%)	달성 과정의 적절성(30%)	등급
S	S	S
	A	S
	B	A
	C	A
	D	A
A	S	A
	A	A
	B	A
	C	B
	D	B
B	S	A
	A	B
	B	B
	C	B
	D	C
C	S	B
	A	B
	B	C
	C	C
	D	C
D	S	C
	A	C
	B	C
	C	D
	D	D

* 기관특성 및 성과목표의 임무유형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및 중간컨설팅 결과에 따라 '목표의 도전성·혁신성'을 지적받은 경우 종합평가 시 '달성 과정의 적절성' 항목에 '목표의 도전성·혁신성'을 반드시 포함하여 평가

- 달성과정의 적절성 등급* = 달성과정의 적절성(50%)+도전성·혁신성(50%)

*등급별 점수 구간: S=1~0.875이상, A=0.875미만~0.625이상, B=0.625미만~0.375이상, C=0.375미만~0.125이상, D=0.125미만~0

※ 등급산출 산식: 질적 우수성 등급 가중치×0.7+과정의 적절성 등급 가중치×0.3 = 등급*

*등급별 점수 구간: S=1~0.875이상, A=0.875미만~0.625이상, B=0.625미만~0.375이상, C=0.375미만~0.125이상, D=0.125미만~0

예) 질적 우수성 A (0.75)×0.7 +과정의 적절성 B (0.5)×0.3= 0.68 = 'A'등급

□ 성과목표 1. ○○○

추진 계획	1-1.	평가 위원	부문		연구지원 공통	
			위원장			
			연구지원 간사위원			
			평가위원			
			평가위원			
평가 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연도		목표치
	성과지표	유형	가중치			
	[1-1-1] ○○○○○			과거 실적	Y-1	
				중간 컨설팅	Y	
					Y+1	
					종합 평가	Y+2
					Y+3 (조정)	
	[1-1-2] ○○○○○			과거 실적	Y-1	
				중간 컨설팅	Y	
					Y+1	
					종합 평가	Y+2
					Y+3 (조정)	
평가 결과	배점 ^a	인정 목표 달성도 ^b		달성도 점수 ^{bxa}		

추진 계획	배점	성과지표			연도	목표치	실적치 (a)	인정 실적치 (c)	지표 달성도	① 인정 지표 달성도 (d)	목표 달성도	② 인정 목표 달성도
		지표명	유형	가중치								
					2014							
					과거 실적							
					2015							
					2016							
					2017							
					종합 평가							
					2018							
					2019							
					2020 (조정)							
					과거 실적							
					2014							
					2015							
					2016							
					2017							
					종합 평가							
					2018							
					2019							
					2020 (조정)							

※ 지표 특성 : 누적형, 독립형, 최종형, 감소형으로 구분하여 기재

※ 인정 목표달성도 : $\sum(\text{지표별 인정달성도} \times \text{가중치})$

① 인정 지표별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차감 요인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인정 성과 [(c) = (a) -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도 : ○ 달성도 (독립형)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조정 목표치 : - ('18년도 달성도*00/00 + '19년도 달성도*00/00 + '20년도 달성도*00/00) * 100 = [(1*00/00) + (1*00/00) + (1*00/00)] * 100 =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차감 요인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인정 성과 [(c) = (a) -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도 : ○ 달성도 (누적형)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조정 목표치 : - ('20년도 실적-'15년 기 보유실적) / ('20년도 목표치-'15년 기 보유실적) * 100

	$= [(0-0) / (0-0)] * 100 =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차감 요인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인정 성과 [(c) = (a) -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 ○ 달성도 (최종형)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조정 목표치 : - ('20년도 실적) / ('20년도 목표) * 100 = (0 / 0) * 100 = 000%
② 인정 목표 달성도 (Σ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 목표 달성도 - (00%*60) + (00%*40) = 00.00%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평가실적보고서, pp.66-69 ○ 종합평가실적보고서 증빙자료, pp. 104-108 ○ 연구성과계획서, pp.77-78
요청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2 연구지원부문 통합 정성평가

구 분	정성평가 결과 요약*		영역별 정성평가 등급**	통합 정성평가 등급***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실적 등급조정****	최종등급* ****
	질적 우수성	달성과정의 적절성				
조직인사관리	S/A/B/C/D	S/A/B/C/D	S ~ D	S ~ D	유지/ 강등/ ※정성평가 등급에 반영 시 평가의견 필수 제시	S ~ D
사업관리	S/A/B/C/D	S/A/B/C/D	S ~ D			
성과관리	S/A/B/C/D	S/A/B/C/D	S ~ D			
정부정책	S/A/B/C/D	S/A/B/C/D	S ~ D			

* 영역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S-D 등급 부여

** “전문가 정성평가 등급 산출 기준” 을 참조하여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 부여

*** 영역별 비중을 각 정성평가 등급에 가중 합산하여 통합 정성평가 등급 부여

**** 하단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내역 검토 후 등급 조정 여부 결정

*****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실적 검토결과 유지일 경우 기존 등급 기재, 강등일 경우 한 등급 강등

※ 정성평가 결과 및 등급은 검토회의 이후 작성하므로 서면평가 시 해당 란 공란 유지 요청

※ ‘추가 성과’, ‘임기 내 예상 성과’ 등 평가 반영 요청

평 가 의 건

※ 실적보고서에 제시된 기관장 취임 이후 기관운영 실적(조직인사·사업관리·성과관리제도, 기관특성별 대표성과 등)과 연구성과계획서 상의 목표 - 성과목표에서 제시한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 등을 함께 표현

□ 질적 우수성

※ 단문 형식의 평가의견은 허용되지 않으며 개별 평가의견 당 300자 이내 (4-5줄)로 작성

※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 등을 함께 표현하고 판단 근거를 반드시 명기

※ 성과의 우수성에 대한 현재의 국제적 수준 및 선진기관과의 비교, 변화된 환경 등을 포함하여 상세 기술

※ 영역별(조직·인사, 예산·윤리, 연구성과 활용·확산, 정부정책) 주요 의견 및 세부사항, 제안사항 제시

※ ‘추가 성과’, ‘임기 내 예상 성과’ 등 평가 반영 요청

※ 목표달성도 초과 달성분에 대한 정성적 평가의견 기술

※ 경영 공통부문 성과의 질적 우수성에 대한 종합의견 제시 (검토회의 시 도출)

○ (영역별 주요 의견)

- (세부 사항) 미흡한 점 및 우수한 점 등을 함께 표현하고 객관적 판단 근거를 반드시 명기
- (개선 및 발전 방향)

○ 종합의견

-

□ 달성 과정의 적절성

- ※ 단문 형식의 평가의견은 허용되지 않으며 개별 평가의견 당 300자 이내 (4-5줄)로 작성
- ※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 등을 함께 표현하고 판단 근거를 반드시 명기
- ※ 시기적·계절적 요인, 환경변화 등에 의해 목표달성도가 미흡한 경우 기관에서 제시한 기관장 임기 종료까지의 예상 성과도 고려하여 평가의견 기술
- ※ 주요 영역별(조직·인사, 예산·윤리, 연구성과 활용·확산, 정부정책) 주요 의견 및 세부 사항, 제안사항 제시
- ※ 경영 공통부문 달성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종합의견 제시 (검토회의 시 도출)

○ (영역별 주요 의견)

- (세부 사항) 미흡한 점 및 우수한 점 등을 함께 표현하고 객관적 판단 근거를 반드시 명기
- (개선 및 발전 방향)

○ 종합의견

출처 :

- 종합평가실적보고서, pp.00-00
- 종합평가실적보고서 증빙자료, pp.00-00
- 경영성과계획서, p.1000
- 000000, p.000

□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내역 검토결과 : 유지 / 강등

※ 대내외지적사항 이행내역이 부적절한 경우, 추진계획의 목표달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차감 여부 판단

※ 등급조정이 아닌 정성평가 등급에 반영인 경우 해당 정성의견에 반드시 언급

-

-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내역
1) 경영성과계획서 점검 내용 ○
2) 중간컨설팅평가 의견 ○
2) 국회 지적사항 ○
○ ○ ○ ○ 시정·처리결과 -
3)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
4) 언론 지적사항 ○
출처 : ○ ○

▶ 서면질의 및 추가자료 요청 항목

- ※ 본란에 기술된 질의사항 및 추가자료 요청에 한하여 평가 진행 중에 기관에 전달 됨에 유의
- ※ 상기 정성평가 의견은 소명의견 절차 이전에는 기관에 미 제시함. 따라서 서면질의 및 추가자료 요청에 대한 사유 기술 필요
- 예시) 성과지표 (1-1-1) 의 유망기술 확보 건수와 관련하여 기관에서 확보한 특허권의 등급을 확인할 수 없어 질적 우수성 판단이 불가하므로 “특허권 등급이 제시된 자료” 요청함
-

2. 연구지원 자율분야

1] 성과목표별 평가결과

연구지원 자율부문 목표달성도 평가기준

○ 목표 달성도

- ✓ 평가대상 최종년도 목표치 산정 시 실적의 균등 (월할) 반영 여부
 - ※ 불균등 반영 시 근거 및 산정방식 제시 여부, 근거의 타당성
- ✓ 초과 실적의 달성도
 - ※ 100%를 초과하는 성과지표 달성도에 대해 100%까지만 반영하여 항목별 달성도 산정
- ✓ 세부 이행항목 제시, 이행항목 및 비율의 적정성
 - ※ 정성목표의 경우 세부 이행항목의 제시 및 타당성
 - ※ 정성목표의 세부항목별 가중치 미설정시 세부항목 수 기준 균등 반영
- ✓ 기관 제시 달성도 성립 요건 및 차감 요인 적용
 - ※ 달성도 성립 요건 판단 기준

- 평가기준 미이행 : 성과계획서 수립 시 제시한 세부 목표치, 산출식, 검증방법 등 평가기준 미이행 시 해당 비율만큼 달성도 차감
 - 평가지표별 목표 내용 불일치 : 성과계획서에 제시한 지표별 성과목표 내용에 적절하지 않은 성과 제시 시 해당 비율만큼 달성도 차감
 - 평가대상기간 불일치 : 평가대상기간 중 실적이 아닌 경우 해당 비율만큼 달성도 차감
 - ※ 달성도 차감 요인 판단 기준

- 허위·부당 실적 : 허위 또는 부당 실적일 경우 해당 비율만큼 달성도 차감
 - 중복·과다계상 : 평가 기준에 비추어 과다계상 되었을 경우 해당 비율만큼 달성도 차감
 - 질적수준 : 질적 수준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해당 비율만큼 달성도 차감
 - ※ 중복 적용 시 가장 큰 하나의 해당 항목에서만 차감

○ 정성평가 평가기준

- ✓ 질적 우수성, 달성과정의 적절성,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중 선택 (이외 추가항목)

- 질적 우수성 : 유관 기관 수준, 공인기관 평가·인증 결과, 정부 발표 자료 등을 고려
 - 달성과정의 적절성 : 계획적·체계적 수행 여부, 외부 환경 변화 반영 여부 등을 고려
 -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 성과목표가 세계적 수준 또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을 만큼 도전적·혁신적인지 여부 등

※ 한국뇌연구원(18년도 종합평가 1차)은 질적 우수성, 달성 과정의 적절성 중심으로 평가
- ✓ 목표 달성도 평가 시 초과 달성 실적 감안
- ✓ 기관장 임기 내 예상 성과
- ✓ 정부정책 이행 달성 실적 감안

○ 평가 등급 조정

- ✓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내역의 적절성
 - 경영성과계획서 조정의견, 중간컨설팅 지적사항 이행의 부적절
 - 대내외 지적사항 누락 혹은 이행내역 부적절

※ 지표당 1회 한도

《 전문가 정성평가 등급 판단 기준 (예시)* 》

질적 우수성 (70%)	달성 과정의 적절성(30%)	등급
S	S	S
	A	S
	B	A
	C	A
	D	A
A	S	A
	A	A
	B	A
	C	B
	D	B
B	S	A
	A	B
	B	B
	C	B
	D	C
C	S	B
	A	B
	B	C
	C	C
	D	C
D	S	C
	A	C
	B	C
	C	D
	D	D

* 기관특성 및 성과목표의 임무유형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및 중간컨설팅 결과에 따라 '목표의 도전성·혁신성'을 지적받은 경우 종합평가 시 '달성 과정의 적절성' 항목에 '목표의 도전성·혁신성'을 반드시 포함하여 평가

- 달성과정의 적절성 등급* = 달성과정의 적절성(50%)+도전성·혁신성(50%)

*등급별 점수 구간: S=1~0.875이상, A=0.875미만~0.625이상, B=0.625미만~0.375이상, C=0.375미만~0.125이상, D=0.125미만~0

※ 등급산출 산식: 질적 우수성 등급 가중치×0.7+과정의 적절성 등급 가중치×0.3 = 등급*

*등급별 점수 구간: S=1~0.875이상, A=0.875미만~0.625이상, B=0.625미만~0.375이상, C=0.375미만~0.125이상, D=0.125미만~0

예) 질적 우수성 A (0.75)×0.7 +과정의 적절성 B (0.5)×0.3= 0.68 = 'A'등급

□ **성과목표 5.**

성과 목표	평가 위원	부문		경영자율		
		위원장				
		연구·사업 간사위원				
		평가위원				
		평가위원				
유형	연구교육형		평가위원			
평가 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연도		목표치
	성과지표	유형	가중치			
	[1-1-1] ○○○○○			과거 실적	Y-1	
				중간 컨설팅	Y	
					Y+1	
					종합 평가	Y+2
					Y+3 (조정)	
	[1-1-2] ○○○○○			과거 실적	Y-1	
				중간 컨설팅	Y	
					Y+1	
					종합 평가	Y+2
					Y+3 (조정)	
평가 결과	배점 ^a	평가점수 ^b			종합점수 ^{b+a}	
		인정 목표 달성도				
		정성평가				

① 목표달성도 평가

추진 계획	배점	성과지표			연도	목표치	실적치 (a)	인정 실적치 (c)	지표 달성도	① 인정 지표 달성도 (d)	목표 달성도	② 인정 목표 달성도
		지표명	유형	가중치								
					과거 실적	2014						
						2015						
						2016						
						2017						
					종합 평가	2018						
						2019						
						2020 (조정)						
					과거 실적	2014						
						2015						
						2016						
						2017						
					종합 평가	2018						
						2019						
						2019 (조정)						

※ 지표 특성 : 누적형, 독립형, 최종형, 감소형으로 구분하여 기재

※ 인정 목표달성도 : Σ(지표별 인정달성도 × 가중치)

<p>① 인정 지표별 달성도</p>	<p>□ ○○○</p> <p>○ 차감 요인 [(b)]</p> <p>- ○○○</p> <p>○ 인정 성과 [(c) = (a) - (b)]</p> <p>- '18년도 :</p> <p>○ 달성도 (독립형) [(d)]</p> <p>- '20년도 조정 목표치 :</p> <p>- ('18년도 달성도*00/00 + '19년도 달성도*00/00 + '20년도 달성도*00/00) * 100</p> <p>= [(1*00/00) + (1*00/00) + (1*00/00)] * 100 = 00%</p> <hr/> <p>□ ○○○</p> <p>○ 차감 요인 [(b)]</p> <p>- ○○○</p> <p>○ 인정 성과 [(c) = (a) - (b)]</p> <p>- '18년도 :</p> <p>○ 달성도 (누적형) [(d)]</p> <p>- '20년도 조정 목표치 :</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실적-'15년 기 보유실적) / ('20년도 목표치-'15년 기 보유실적) * 100 <li style="padding-left: 20px;">= [(0-0) / (0-0)] * 100 = 000%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차감 요인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인정 성과 [(c) = (a) -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 ○ 달성도 (최종형)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조정 목표치 : - ('20년도 실적) / ('20년도 목표) * 100 <li style="padding-left: 20px;">= (0 / 0) * 100 = 000%
<p>② 인정 목표 달성도 (Σ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 목표 달성도 - (00%*60) + (00%*40) = 00.00%
<p>출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평가실적보고서, pp.66-69 ○ 종합평가실적보고서 증빙자료, pp. 104-108 ○ 연구성과계획서, pp.77-78
<p>요청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② 정성평가

정성평가 결과 요약*		정성평가 등급**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실적 등급 조정***	최종등급****
질적 우수성	달성과정의 적절성			
S	S	S ~ D	유지/ 강등 ※정성평가 등급에 반영 시 평가의견 필수 제시	S ~ D
A	A			
B	B			
C	C			
D	D			

* 평가결과를 토대로 S-D 등급 부여

** “전문가 정성평가 등급 산출 기준” 을 참조하여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 부여

*** 하단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내역 검토 후 등급 조정 여부 결정

****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실적 검토결과 유지일 경우 기존 등급 기재, 강등일 경우 한 등급 강등

※ 정성평가 결과 및 등급은 검토회의 이후 작성하므로 서면평가 시 해당 란 공란 유지 요청

※ ‘추가 성과’, ‘임기 내 예상 성과’ 등 평가 반영 요청

평가의견

※ 평가항목(질적 우수성 등)을 중심으로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 등을 함께 표현

※ 연구성과계획서 상의 목표(성과지표 이외의 성과목표에서 제시한 목표) 및 연도별 추진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성과의 우수성에 대한 현재의 국제적 연구수준 및 선진기관과의 비교, 변화된 연구환경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평가의견을 기술

□ 질적 우수성

※ 단문 형식의 평가의견은 허용되지 않으며 개별 평가의견 당 300자 이내 (4-5줄)로 작성

※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 등을 함께 표현하고 판단 근거를 반드시 명기

※ 성과의 우수성에 대한 현재의 국제적 수준 및 선진기관과의 비교, 변화된 환경 등을 포함하여 상세 기술

※ 목표달성도 초과 달성분에 대한 정성적 평가의견 기술

-

-

□ 달성 과정의 적절성

- ※ 단문 형식의 평가의견은 허용되지 않으며 개별 평가의견 당 300자 이내 (4~5줄)로 작성
- ※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 등을 함께 표현하고 판단 근거를 반드시 명기
- ※ 연도별 추진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의견 기술
- ※ 연구환경 변화, 기관장 임기 종료까지의 예상 성과도 고려하여 평가의견 기술
- ※ 목표달성도가 미흡한 경우 및 연차별 목표 달성 등에 대해 시기적 요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 평가의견 기술

-

-

출처 :

- 종합평가실적보고서, pp.00-00
- 종합평가실적보고서 증빙자료, pp.00-00
- 경영성과계획서, p.1000
- 000000, p.000

□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내역 검토결과 : 유지 / 강등

- ※ 대내외지적사항 이행내역이 부적절한 경우, 추진계획의 목표달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차감 여부 판단
- ※ 등급조정이 아닌 정성평가 등급에 반영인 경우 해당 정성의견에 반드시 언급

-

-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내역
1) 경영성과계획서 점검 내용 ○
2) 중간컨설팅평가 의견 ○
2) 국회 지적사항 ○

<p>○ ○ ○ ○ 시정·처리결과</p> <p>.</p> <p>3)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p> <p>○</p> <p>4) 언론 지적사항</p> <p>○</p> <p>출처 :</p> <p>○</p> <p>○</p>

□ 개선 및 발전사항

- ※ 단문 형식의 의견은 허용되지 않으며 개별 의견 당 300자 이내 (4~5줄)로 기술
- ※ 상기 정성평가 의견 중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및 발전 사항 필수 제시
- ※ ‘~방안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여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제안함’ 등으로 개선 및 발전사항 구체적 제시

-

-

▶ 서면질의 및 추가자료 요청 항목

- ※ 본란에 기술된 질의사항 및 추가자료 요청에 한하여 평가 진행 중에 기관에 전달 됨에 유의
- ※ 상기 정성평가 의견은 소명의견 절차 이전에는 기관에 미 제시함. 따라서 서면질의 및 추가자료 요청에 대한 사유 기술 필요
- 예시) 성과지표 (1-1-1) 의 유망기술 확보 건수와 관련하여 기관에서 확보한 특허권의 등급을 확인할 수 없어 질적 우수성 판단이 불가하므로 “특허권 등급이 제시된 자료” 요청함
-

III. 연구 · 사업

1. 연구·사업부문 평가결과

종합점수 및 등급

부문	최종 종합점수
연구·사업	00.00점 / 100.00점

성과목표별 종합점수 및 등급

전략목표	성과목표	배점	종합점수
			00.00점
			00.00점
			00.00점
			00.00점
			00.00점
	합 계	100.00	00.00점

2. 연구·사업부문 총괄 의견 [간사위원 작성]

※ 평가 의견의 단순 요약이 아닌 핵심적인 평가 사안을 중심으로 기술

■ 종합의견

- 기관의 고유임무와 전략목표체계 간 부합성 등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종합적 저견 제시
-

■ 우수한 점 (가장 눈에 띄는 핵심성과 2~3만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
-

■ 미흡한 점 (가장 눈에 띄는 미흡한 점 2~3가지만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
-

〈 미흡 사례(안) 〉

관련 성과목표/지표	사례 선정 사유
○	-
○	-
○	-

※ 매우미흡을 받은 지표 등을 중심으로 최소 1건에서 최대 3건 제시 (미흡사례가 없는 경우 미선정 사유 필요)

■ 개선 및 발전사항

-
-

※ ‘~방안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여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제안함’ 등으로 개선 및 발전사항 구체적 제시

■ 정책제언 등 기타

-
-

3. 세부평가항목(성과목표)별 평가결과

《 연구·사업부문 평가기준 》

○ 목표 달성도

- ✓ 평가대상 최종년도 목표치 산정 시 실적의 균등 (월할) 반영 여부
 - ※ 불균등 반영 시 근거 및 산정방식 제시 여부, 근거의 타당성
- ✓ 초과 실적의 달성도
 - ※ 100%를 초과하는 성과지표 달성도에 대해 100%까지만 반영하여 항목별 달성도 산정
- ✓ 세부 이행항목 제시, 이행항목 및 비율의 적정성
 - ※ 정성목표의 경우 세부 이행항목의 제시 및 타당성
 - ※ 정성목표의 세부항목별 가중치 미설정시 세부항목 수 기준 균등 반영
- ✓ 기관 제시 달성도 성립 요건 및 차감 요인 적용
 - ※ 달성도 성립 요건 판단 기준

- 평가기준 미이행 : 성과계획서 수립 시 제시한 세부 목표치, 산출식, 검증방법 등 평가 기준 미이행 시 해당 비율만큼 달성도 차감
- 평가지표별 목표 내용 불일치 : 성과계획서에 제시한 지표별 성과목표 내용에 적절하지 않은 성과 제시 시 해당 비율만큼 달성도 차감
- 평가대상기간 불일치 : 평가대상기간 중 실적이 아닌 경우 해당 비율만큼 달성도 차감

※ 달성도 차감 요인 판단 기준

- 허위·부당 실적 : 허위 또는 부당 실적일 경우 해당 비율만큼 달성도 차감
- 과다계상 : 평가 기준에 비추어 과다계상 되었을 경우 해당 비율만큼 달성도 차감
- 질적수준 : 질적 수준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해당 비율만큼 달성도 차감

※ 중복 적용 시 가장 큰 하나의 해당 항목에서만 차감

○ 정성평가 평가기준

- ✓ 질적 우수성, 달성과정의 적절성,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 질적 우수성 : 기술동향, 글로벌 경쟁력, 공인기관 평가·인증 결과 등을 고려
- 달성과정의 적절성 : 계획적·체계적 수행 여부, 외부 환경 변화 반영 여부 등을 고려
-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 성과목표가 세계적 수준 또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을 만큼 도전적·혁신적인지 여부 등

※ 목표의 도전성·혁신성은 이전 연구성과계획서 점검 및 중간컨설팅평가 시 도전성·혁신성 관련 지적사항 발생 성과목표에 한하여 평가

- ✓ 목표 달성도 평가 시 초과 달성 실적 감안
- ✓ 기관장 임기 내 예상 성과
- ✓ 신규 성과 제시 시 성과목표와의 부합성 및 질적 우수성 점검

○ 평가 등급 조정

- ✓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내역의 적절성
 - 경영성과계획서 점검의견조정의견, 중간컨설팅 지적사항 이행의 부적절
 - 대내외 지적사항 누락 혹은 이행내역 부적절

※ 지표당 1회 한도

《 전문가 정성평가 등급 판단 기준 (예시)* 》

질적 우수성 (70%)	달성 과정의 적절성(30%)	등급
S	S	S
	A	S
	B	A
	C	A
	D	A
A	S	A
	A	A
	B	A
	C	B
	D	B
B	S	A
	A	B
	B	B
	C	B
	D	C
C	S	B
	A	B
	B	C
	C	C
	D	C
D	S	C
	A	C
	B	C
	C	D
	D	D

* 기관특성 및 성과목표의 임무유형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및 중간컨설팅 결과에 따라 '목표의 도전성·혁신성'을 지적받은 경우 종합평가 시 '달성 과정의 적절성' 항목에 '목표의 도전성·혁신성'을 반드시 포함하여 평가

- 달성과정의 적절성 등급* = 달성과정의 적절성(50%)+도전성·혁신성(50%)

*등급별 점수 구간: S=1~0.875이상, A=0.875미만~0.625이상, B=0.625미만~0.375이상, C=0.375미만~0.125이상, D=0.125미만~0

※ 등급산출 산식: 질적 우수성 등급 가중치×0.7+과정의 적절성 등급 가중치×0.3 = 등급*

*등급별 점수 구간: S=1~0.875이상, A=0.875미만~0.625이상, B=0.625미만~0.375이상, C=0.375미만~0.125이상, D=0.125미만~0

예) 질적 우수성 A (0.75)×0.7 +과정의 적절성 B (0.5)×0.3= 0.68 = 'A'등급

□ 전략목표 1. 과학기술인 전생애주기 역량강화

성과 목표		평가 위원	부문		연구·사업	
			위원장			
			연구·사업 간사위원			
			평가위원			
유형	연구교육형		평가위원			
평가 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연도		목표치
	성과지표	유형	가중치			
	[1-1-1] ○○○○○			과거 실적	Y-1	
				중간 컨설팅	Y	
					Y+1	
					Y+2	
				종합 평가	Y+3 (조정)	
	과거 실적	Y-1				
	[1-1-2] ○○○○○			중간 컨설팅	Y	
					Y+1	
					Y+2	
				종합 평가	Y+3 (조정)	
	평가 결과	배점 ^a	평가점수 ^b			종합점수 ^{bxa}
		인정 목표 달성도				
		정성평가				

① 목표달성도 평가

추진 계획	배점	성과지표			연도	목표치	실적치 (a)	인정 실적치 (c)	지표 달성도	① 인정 지표 달성도 (d)	목표 달성도	② 인정 목표 달성도
		지표명	유형	가중치								
					과거 실적	2014						
						2015						
						2016						
						2017						
					종합 평가	2018						
						2019						
						2020 (조정)						
					과거 실적	2014						
						2015						
						2016						
						2017						
					종합 평가	2018						
						2019						
						2019 (조정)						

※ 지표 특성 : 누적형, 독립형, 최종형, 감소형으로 구분하여 기재

※ 인정 목표달성도 : $\sum(\text{지표별 인정달성도} \times \text{가중치})$

① 인정 지표별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차감 요인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인정 성과 [(c) = (a) -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도 : ○ 달성도 (독립형)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조정 목표치 : - ('18년도 달성도*00/00 + '19년도 달성도*00/00 + '20년도 달성도*00/00) * 100 = [(1*00/00) + (1*00/00) + (1*00/00)] * 100 =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차감 요인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인정 성과 [(c) = (a) -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도 : ○ 달성도 (누적형)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조정 목표치 :

	<p>- ('20년도 실적-'15년 기 보유실적) / ('20년도 목표치-'15년 기 보유실적) * 100 = [(0-0) / (0-0)] * 100 = 000%</p> <hr/> <p>□ ○○○ ○ 차감 요인 [(b)] - ○○○ ○ 인정 성과 [(c) = (a) - (b)] - '20년도 : ○ 달성도 (최종형) [(d)] - '20년도 조정 목표치 : - ('20년도 실적) / ('20년도 목표) * 100 = (0 / 0) * 100 = 000%</p>
<p>② 인정 목표 달성도 (Σd×e)</p>	<p>○ 인정 목표 달성도 - (00%*60) + (00%*40) = 00,00%</p>
<p>출처</p>	<p>○ 종합평가실적보고서, pp.66-69 ○ 종합평가실적보고서 증빙자료, pp. 104-108 ○ 연구성과계획서, pp.77-78</p>
<p>요청자료</p>	<p>□ ○○○ -</p>

② 정성평가

정성평가 결과 요약*			정성평가 등급**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실적 등급 조정***	최종등급****
질적 우수성	달성과정의 적절성	도전성· 혁신성			
S	S	S	S ~ D	유지/ 강등	S ~ D
A	A	A			
B	B	B			
C	C	C			
D	D	D			

* 평가결과를 토대로 S-D 등급 부여

** “전문가 정성평가 등급 산출 기준”을 참조하여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 부여

*** 하단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내역 검토 후 등급 조정 여부 결정

****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실적 검토결과 유지일 경우 기존 등급 기재, 강등일 경우 한 등급 강등

※ 정성평가 결과 및 등급은 검토회의 이후 작성하므로 서면평가 시 해당 란 공란 유지 요청

※ ‘추가 성과’, ‘입기 내 예상 성과’ 등 평가 반영 요청

평가의견

- ※ 평가항목(질적 우수성 등)을 중심으로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 등을 함께 표현
- ※ 연구성과계획서 상의 목표(성과지표 이외의 성과목표에서 제시한 목표) 및 연도별 추진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성과의 우수성에 대한 현재의 국제적 연구수준 및 선진기관과의 비교, 변화된 연구환경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평가의견을 기술

□ 질적 우수성

- ※ 단문 형식의 평가의견은 허용되지 않으며 개별 평가의견 당 300자 이내 (4-5줄)로 작성
- ※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 등을 함께 표현하고 판단 근거를 반드시 명기
- ※ 성과의 우수성에 대한 현재의 국제적 수준 및 선진기관과의 비교 등을 포함하여 상세 기술
- ※ 목표달성도 초과 달성분에 대한 정성적 평가의견 기술

-

-

□ 달성 과정의 적절성

- ※ 단문 형식의 평가의견은 허용되지 않으며 개별 평가의견 당 300자 이내 (4-5줄)로 작성
- ※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 등을 함께 표현하고 판단 근거를 반드시 명기
- ※ 연도별 추진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의견 기술
- ※ 연구환경 변화, 기관장 임기 종료까지의 예상 성과도 고려하여 평가의견 기술
- ※ 목표달성도가 미흡한 경우 및 연차별 목표 달성 등에 대해 시기적 요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 평가의견 기술

-

-

□ 당초 목표의 도전성 · 혁신성 (이전 평가 지적 시)

- ※ 단문 형식의 평가의견은 허용되지 않으며 개별 평가의견 당 300자 이내 (4-5줄)로 작성
- ※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 등을 함께 표현하고 판단 근거를 반드시 명기
- ※ 연구성과계획서 점검 및 중간컨설팅 평가 결과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미흡에 해당하는 성과목표에 한해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평가

-

-

출처 :

- 종합평가실적보고서, pp.00-00
- 종합평가실적보고서 증빙자료, pp.00-00
- 경영성과계획서, p.1000
- 000000, p.000

□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내역 검토결과 : 유지 / 강등

- ※ 대내외지적사항 이행내역이 부적절한 경우, 추진계획의 목표달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차감 여부 판단
- ※ 등급조정이 아닌 정성평가 등급에 반영인 경우 해당 정성의견에 반드시 언급

-

-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내역
1) 경영성과계획서 점검 내용 ○
2) 중간컨설팅평가 의견 ○
2) 국회 지적사항 ○
○ ○ ○ ○ 시정·처리결과 -
3)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
4) 언론 지적사항 ○
출처 : ○ ○

□ 개선 및 발전방향 (임무부합성 및 미래발전방향)

- ※ 단문 형식의 의견은 허용되지 않으며 개별 의견 당 300자 이내 (4~5줄)로 기술
- ※ 상기 정성평가 의견 중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및 발전 사항 필수 제시
- ※ ‘~방안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여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제안함’ 등으로 개선 및 발전사항 구체적 제시

-

-

▶ 서면질의 및 추가자료 요청 항목

- ※ 본란에 기술된 질의사항 및 추가자료 요청에 한하여 평가 진행 중에 기관에 전달 됨에 유의
- ※ 상기 정성평가 의견은 소명의견 절차 이전에는 기관에 미 제시함. 따라서 서면질의 및 추가자료 요청에 대한 사유 기술 필요
- 예시) 성과지표 (1-1-1) 의 유망기술 확보 건수와 관련하여 기관에서 확보한 특허권의 등급을 확인할 수 없어 질적 우수성 판단이 불가하므로 “특허권 등급이 제시된 자료” 요청함
-

붙임3 수요자 집단 선정 양식 (대상기관용)

□ 기관명 :

전략목표	수요자군	수요자			고객집단 및 인터뷰 대상자 선정 사유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전략목표 1] 실용화 연구를 통한 지역산업발전	지역공동체 (지역기업 상공회의소 등)	○○○	(주)○○ 시스템 과장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 전략목표 1은 실용화 연구를 통한 기술사업화가 주요 내용으로 지역기업 등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를 수요자군으로 선정 - (주)○○시스템은 성과목표 1-3 관련 기술이전 업체로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 ※ 계약액 300만원(16.1.27.)
[전략목표 2] 창의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졸업생 수요기업	○○○	(주)○○○ 부장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 전략목표 2는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졸업생 수요기업을 수요자군으로 선정 - (주)○○○는 졸업생이 다수 취업한 기업으로 졸업생 채용기업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

붙임4

목표 달성도 검토 양식 (평가위원회용)

2020년도 차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종합평가 목표 달성도 검토결과

[○○○ 연구원]

2020. .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 총괄

연구지원

영역 1. 000				배점 : 00점 / 100점 만점			
성과목표	배점 (%)	달성도	인정 달성도	성과지표	배점 (%)	달성도	인정 달성도
합 계							

연구·사업

전략목표 1. 000				배점 : 00점 / 100점 만점			
성과목표	배점 (%)	달성도	인정 달성도	성과지표	배점 (%)	달성도	인정 달성도
합 계							

II. 연구지원

영역 1. 000

성과목표 1-1. 000

성과목표	배점	성과지표			연도	목표치	실적치 (a)	인정 실적치 (c)	지표 달성도	① 인정 지표 달성도 (d)	목표 달성도	② 인정 목표 달성도							
		지표명	유형	가중치 (e)															
○○○○○	○○○○○	○○○○○			과거 실적	Y-3	-												
						Y-2													
						Y-1													
					중간 컨설팅	Y													
						Y+1													
					종합 평가	Y+2													
						Y+3(조정)													
					○○○○○	○○○○○	○○○○○			과거 실적			Y-3	-					
													Y-2						
													Y-1						
중간 컨설팅	Y																		
	Y+1																		
종합 평가	Y+2																		
	Y+3(조정)																		

① 인정 지표별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차감 요인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인정 성과 [(c) = (a) -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도 : ○ 달성도 (독립형)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조정 목표치 : - ('18년도 달성도*00/00 + '19년도 달성도*00/00 + '20년도 달성도*00/00) * 100 = [(1*00/00) + (1*00/00) + (1*00/00)] * 100 =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차감 요인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인정 성과 [(c) = (a) -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도 : ○ 달성도 (누적형)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조정 목표치 : - ('20년도 실적-'15년 기 보유실적) / ('20년도 목표치-'15년 기 보유실적) * 100 = [(0-0) / (0-0)] * 100 =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차감 요인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인정 성과 [(c) = (a) -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 ○ 달성도 (최종형)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조정 목표치 : - ('20년도 실적) / ('20년도 목표) * 100 = (0 / 0) * 100 =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차감 요인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인정 성과 [(c) = (a) -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 ○ 달성도 (감소형)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조정 목표치 : - ('14년 기 보유실적-'20년도 실적) / ('14년 기 보유실적- '20년도 목표) * 100 = [(0-0) / (0-0)] * 100 = 000%
<p>② 인정 목표 달성도 (Σ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 목표 달성도 - (00%*60) + (00%*40) = 00.00%
<p>출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평가실적보고서, pp.66-69 ○ 종합평가실적보고서 증빙자료, pp. 104-108 ○ 연구성과계획서, pp.77-78
<p>요청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III. 연구 · 사업

전략목표 1. 000

성과목표 1-1. 000

성과목표	배점	성과지표			연도	목표치	실적치 (a)	인정 실적치 (c)	지표 달성도	① 인정 지표 달성도 (d)	목표 달성도	② 인정 목표 달성도			
		지표명	유형	가중치 (e)											
○○○○○		○○○○○			과거 실적	-	Y-3								
					Y-2										
					Y-1										
					중간 컨설팅	Y									
					Y+1										
					종합 평가	Y+2									
					Y+3(조정)										
					과거 실적	-	Y-3								
					Y-2										
					Y-1										
중간 컨설팅	Y														
Y+1															
종합 평가	Y+2														
Y+3(조정)															

① 인정 지표별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차감 요인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인정 성과 [(c) = (a) -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도 : ○ 달성도 (독립형)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조정 목표치 : - ('18년도 달성도*00/00 + '19년도 달성도*00/00 + '20년도 달성도*00/00) * 100 = [(1*00/00) + (1*00/00) + (1*00/00)] * 100 =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차감 요인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인정 성과 [(c) = (a) -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도 : ○ 달성도 (누적형)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조정 목표치 : - ('20년도 실적-'15년 기 보유실적) / ('20년도 목표치-'15년 기 보유실적) * 100 = [(0-0) / (0-0)] * 100 =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감 요인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인정 성과 [(c) = (a) -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 ○ 달성도 (최종형)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조정 목표치 : - ('20년도 실적) / ('20년도 목표) * 100 = (0 / 0) * 100 = 000%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차감 요인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인정 성과 [(c) = (a) -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 ○ 달성도 (감소형)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조정 목표치 : - ('14년 기 보유실적-'20년도 실적) / ('14년 기 보유실적- '20년도 목표) * 100 = [(0-0) / (0-0)] * 100 = 000%
<p>② 인정 목표 달성도 ($\sum d \times 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 목표 달성도 - (00%*60) + (00%*40) = 00.00%
<p>출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평가실적보고서, pp.66-69 ○ 종합평가실적보고서 증빙자료, pp. 104-108 ○ 연구성과계획서, pp.77-78
<p>요청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붙임5

목표 달성도 소명의견서 작성 양식 (대상기관용)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 종합평가 목표 달성도 검토결과(안)에 대한 소명의견서

2020. .

○○○ 연구원

□ 종합

- 연구지원 부문 핵심 소명의견
-
- 연구·사업 부문 핵심 소명의견
-

< 소명의견 요약표 >

(단위 : 건, %)

부문	구분	달성도 검토의견 수	기관 소명 내역	
			수용	소명
연구지원	영역 1	10	6(60%)	4(40%)
	영역 2			
	영역 3			
	영역 4			
	영역 5			
연구사업	전략목표 1			
	전략목표 2			
	전략목표 3			
합 계				

[요약]

가. 연구지원 부문

영역 1. 000					배점 : 00점 / 100점 만점				
성과목표	배점 (%)	달성도	인정 달성도	소명 달성도	성과지표	배점 (%)	달성도	인정 달성도	소명 달성도
합 계									

나. 연구·사업 부문

전략목표 1. 000					배점 : 00점 / 100점 만점				
성과목표	배점 (%)	달성도	인정 달성도	소명 달성도	성과지표	배점 (%)	달성도	인정 달성도	소명 달성도
합 계									

작성

가. 연구지원 부문

연구지원 소명의견 - 1	
영역	2. 000
성과목표	2-1. 000
성과지표	2-1-2. 000
관련	목표 달성도 검토결과 10쪽
평가항목	목표 달성도
기관 소명의견	
평가의견(안)	평가의견 수정(안)
○ 달성도 (감소형) [(d)] - '18년도 조정 목표치 : - ('14년 기 보유실적·'18년도 실적) / ('14년 기 보유실적· '18년도 목표) * 100 = [(0-0) / (0-0)] * 100 = 000%	○ 달성도 (감소형) [(d)] - '18년도 조정 목표치 : - ('14년 기 보유실적·'18년도 실적) / ('14년 기 보유실적· '18년도 목표) * 100 = [(0-0) / (0-0)] * 100 = 000%
소명의견	
○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모수에 해당하는 000가 제시되지 않아 성과 불인정 - 000 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공공기관 알리오(Alio)” 경영공시자료의 000 자료를 추가 제출하고자 함	
추가 증빙자료 목록	
- 000(알리오 공시) - 000(알리오 공시)_엑셀 - 000(알리오 공시) - 000(알리오 공시)_엑셀	

나. 연구·사업 부문

연구·사업 소명의견 - 1	
전략목표	2. 000
성과목표	2-1. 000
성과지표	2-1-2. 000
관련	목표 달성도 검토결과 10쪽
평가항목	목표 달성도
기관 소명내역	
평가의견(안)	평가의견 수정(안)
○ 달성도 (감소형) [(d)] - '18년도 조정 목표치 : - ('14년 기 보유실적·'18년도 실적) / ('14년 기 보유실적· '18년도 목표) * 100 = [(0-0) / (0-0)] * 100 = 000%	○ 달성도 (감소형) [(d)] - '18년도 조정 목표치 : - ('14년 기 보유실적·'18년도 실적) / ('14년 기 보유실적· '18년도 목표) * 100 = [(0-0) / (0-0)] * 100 = 000%
소명의견	
○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모수에 해당하는 000가 제시되지 않아 성과 불인정 - 000 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공공기관 알리오(Alio)” 경영공시자료의 000 자료를 추가 제출하고자 함	
추가 증빙자료 목록	
- 000(알리오 공시) - 000(알리오 공시)_엑셀 - 000(알리오 공시) - 000(알리오 공시)_엑셀	

붙임6

정성평가 소명의견서 작성 양식 (대상기관용)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 종합평가
정성평가 결과(안)에 대한 소명의견서**

2020. .

○○○ 연구원

□ 종합

○ 연구지원 부문 핵심 소명의견

-

○ 연구·사업 부문 핵심 소명의견

-

< 소명의견 요약표 >

(단위 : 건, %)

구분	평가(위) 평가 의견(안)	기관 요청 내역				
		수용	수정 요청			계
			의견 삭제	의견 수정	항목 이동*	
연구 지원 부문	정성평가	00 %				
	대내외 지적사항	00 %				
	소 계	00 100%				
연구 사업 부문	정성평가	00 %				
	대내외 지적사항	00 %				
	소 계	00 100%				
합 계		00				

* 당초 평가의견을 '미흡한 점'에서 '개선 및 발전사항'으로 이동 등 평가의견의 타 항목 이관 요청

[요약]

가. 연구지원 부문

번호	영역	성과목표	평가의견 요약	소명의견 요약	비고
1	1. 000	1-1. 000	[정성평가-질적 우수성] • 000	[의견 삭제] • 000	
2			[정성평가-달성 과정] • 000	[항목 이동] • 000	
3			[대내외 지적사항] • 000	[의견 수정] • 000	

※ 소명의견 번호는 본문 번호와 일치하게 작성

나. 연구·사업 부문

번호	전략목표	성과목표	평가의견 요약	소명의견 요약	비고
1	1. 000	1-1. 000	[정성평가-달성 과정] • 000	[전면 수정] • 000	

※ 소명의견 번호는 본문 번호와 일치하게 작성

가. 연구지원 부문

연구지원 소명의견 - 1	
영역	2. 000
성과목표	2-1. 000
관련	평가의견서(안) 10쪽
평가항목	정성평가(질적 우수성/달성 과정/목표의 도전성) / 대내외 지적사항 중 택일
기관 소명내역	
요청내역	의견 삭제 / 의견 수정 / 항목 이동 중 택일
평가의견(안)	평가의견 수정(안)
<input type="checkbox"/> 달성과정의 적절성 ○ 산업체 경력 교원 및 외국인 교원 초빙의 경우 초빙 활동이 홍보나 국내외 저널·학회에 공고문 게시 등으로 단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능동적 홍보 및 제도적 장치완화, 지원 방안 등의 전략을 통한 실행 방안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	<input type="checkbox"/> 달성과정의 적절성 ○ 산업체 경력 교원 및 외국인 교원 초빙의 경우 초빙 활동이 홍보나 국내외 저널·학회에 공고문 게시 등으로 단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능동적 홍보 및 제도적 장치완화, 지원 방안 등의 전략을 통한 실행 방안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
소명의견	
<input type="checkbox"/> 달성과정의 적절성 ○ 국내외 우수 산업체 경력 교원 및 외국인 교원 유치를 위해 국내외 주요저널 및 학회 공고, 신문 공고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리쿠르팅 시행 - 우수 과학자에 대해서는 Search&Scout 형식의 특별채용 진행 -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간담회 개최 등 타겟 리쿠르팅 시행 ○ 상시 공개 초빙 제도 운영 - 초빙제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상시 공개 초빙을 시행함으로써 초빙심사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국내외 우수 인재 유입의 유연적 대응 ○ 산업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 - 교원 임용시 연구실적, 교육경력 및 실무경력연수 통산 인정(시행령 제22조) - 교원성과급 지급 평가시 우대 - 산업체 자문, 산학협력교육 등 배점 운영 -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국제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이전, 기술출자 등 산업체 경력교원에게 유리한 지표만으로 연구 분야 배점 만점 가능하도록 지표 설계	
추가 증빙자료 목록	
- 00 - 000(알리오 공시)_엑셀 - 000(알리오 공시) - 000(알리오 공시)_엑셀	

나. 연구·사업 부문

연구·사업 소명의견 - 1	
전략목표	2. 000
성과목표	2-1. 000
관련	평가의견서(안) 10쪽
평가항목	정상평가(질적 우수성/달성 과정/목표의 도전성) / 대내외 지적사항 중 택일
기관 소명내역	
요청내역	의견 삭제 / 의견 수정 / 항목 이동 중 택일
평가의견(안)	평가의견 수정(안)
소명의견	
추가 증빙자료 목록	

붙임7

정성평가 소명의견 검토의견서 작성 양식 (평가위원용)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 종합평가 소명의견 검토의견서

[○○○○ 연구원]

2020. .

종합평가위원회

□ **종합**

○ 연구지원 부문

-

○ 연구·사업 부문

-

< 소명의견 검토결과 요약표 >

(단위 : 건, %)

구분	평가(위) 평가 의견(안)	기관 요청 내역						소명의견 검토결과	
		수용	수정 요청				계	수용	불수용
			의견 삭제	의견 수정	항목 이동*				
연구 지원 부문	목표 달성도	120 %	100 83.3%	0 0%	19 15.8%	1 0.8%	20 16.7%	10 50.0%	10 50.0%
	정성평가	00 %							
	대내외 지적사항	00 %							
	소 계	00 100%							
연구 사업 부문	목표 달성도	00 %							
	정성평가	00 %							
	대내외 지적사항	00 %							
	소 계	00 100%							
합 계	00								

[요약]

가. 연구지원 부문

번호	영역	성과목표	평가의견 요약	소명의견 요약	검토결과
1	1. 000	1-1. 000	[정성평가-질적 우수성] • 000	[의견 삭제] • 000	수용 / 불수용
2			[정성평가-달성 과정] • 000	[항목 이동] • 000	
3			[대내외 지적사항] • 000	[의견 수정] • 000	

※ 소명의견 번호는 본문 번호와 일치하게 작성

나. 연구·사업 부문

번호	전략목표	성과목표	평가의견 요약	소명의견 요약	검토결과
1	1. 000	1-1. 000	[목표 달성도] • 000	[전면 수정] • 000	

※ 소명의견 번호는 본문 번호와 일치하게 작성

가. 연구지원 부문

연구지원 소명의견 - 1	
영역	2. 000
성과목표	2-1. 000
관련	평가의견서(안) 10쪽
평가항목	정상평가(질적 우수성/달성 과정/목표의 도전성) / 대내외 지적사항 중 택일
기관 소명내역	
요청내역	의견 삭제 / 의견 수정 / 항목 이동 중 택일
평가의견(안)	평가의견 수정(안)
<input type="checkbox"/> 달성과정의 적절성 ○ 산업체 경력 교원 및 외국인 교원 초빙의 경우 초빙 활동이 홍보나 국내외 저널·학회에 공고문 게시 등으로 단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능동적 홍보 및 제도적 장치완화, 지원 방안 등의 전략을 통한 실행 방안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	<input type="checkbox"/> 달성과정의 적절성 ○ 산업체 경력 교원 및 외국인 교원 초빙의 경우 초빙 활동이 홍보나 국내외 저널·학회에 공고문 게시 등으로 단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능동적 홍보 및 제도적 장치완화, 지원 방안 등의 전략을 통한 실행 방안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
소명의견	
<input type="checkbox"/> 달성과정의 적절성 ○ 국내외 우수 산업체 경력 교원 및 외국인 교원 유치를 위해 국내외 주요저널 및 학회 공고, 신문 공고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리쿠르팅 시행 - 우수 과학자에 대해서는 Search&Scout 형식의 특별채용 진행 -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간담회 개최 등 타겟 리쿠르팅 시행 ○ 상시 공개 초빙 제도 운영 - 초빙제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상시 공개 초빙을 시행함으로써 초빙심사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국내외 우수 인재 유입의 유연적 대응 ○ 산업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 - 교원 임용시 연구실적, 교육경력 및 실무경력연수 통산 인정(시행령 제22조) - 교원성과급 지급 평가시 우대 · 산업체 자문, 산학협력교육 등 배점 운영 ·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국제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이전, 기술출자 등 산업체 경력교원에게 유리한 지표만으로 연구 분야 배점 만점 가능하도록 지표 설계	
추가 증빙자료 목록	
- 00 - 000(알리오 공시)_엑셀 - 000(알리오 공시) - 000(알리오 공시)_엑셀	

평가위원회 소명 검토결과	
검토결과	수용(의견 삭제, 수정) / 불수용(의견 유지)* * 불수용 사유 필수 작성
평가의견(안)	평가의견 수정(안)
<p><input type="checkbox"/> 달성과정의 적절성</p> <p>○ 산업체 경력 교원 및 외국인 교원 초빙의 경우 초빙 활동이 홍보나 국내외 저널·학회에 공고문 게시 등으로 단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능동적 홍보 및 제도적 장치완화, 지원 방안 등의 전략을 통한 실행 방안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p>	<p><input type="checkbox"/> 달성과정의 적절성</p> <p>○ 산업체 경력 교원 및 외국인 교원 초빙의 경우 초빙 활동이 홍보나 국내외 저널·학회에 공고문 게시 등으로 단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능동적 홍보 및 제도적 장치완화, 지원 방안 등의 전략을 통한 실행 방안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p>
검토의견	
<p>○ 불수용 사유 등 기술</p>	

나. 연구·사업 부문

연구·사업 소명의견 - 1	
전략목표	2. 000
성과목표	2-1. 000
관련	평가의견서(안) 10쪽
평가항목	정성평가(질적 우수성/달성 과정/목표의 도전성) / 대내외 지적사항 중 택일
기관 소명내역	
요청내역	의견 삭제 / 의견 수정 / 항목 이동 중 택일
평가의견(안)	평가의견 수정(안)
소명의견	
추가 증빙자료 목록	

평가위원회 소명 검토결과	
검토결과	수용(의견 삭제, 수정) / 불수용(의견 유지)* * 불수용 사유 필수 작성
평가의견(안)	평가의견 수정(안)
검토의견	
<p>○ 불수용 사유 등 기술</p>	

붙임8

종합평가 시정조치 이행계획 양식 (대상기관용)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 기관평가 종합평가 시정조치 이행계획

2020. .

○○○ 연구원

I. 개선·조치계획 수립과정 및 이행점검 체계

개선·조치계획 수립과정

-

개선·조치계획 이행점검 체계

-

향후 추진계획

-

II. 요약

□ 직전 3개년도 개선·조치 실적 및 계획

(단위 : 건)

년도	구분		지적·권고 사항	개선 및 조치 내역					
				완료	미 조치	추진 중	향후 계획	합계	
20	계획서 점검	경영목표체계							
		연구지원							
		연구사업							
20	중간 컨설팅	중간평가							
		컨설팅(자율)							
		컨설팅(연구)							
20	종합 평가	종합분석							
		연구지원							
		연구사업							
합계 (3개년도)		종합/경영목표							
		연구지원							
		연구사업							

※ 유사한 지적·권고사항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 통합 관리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

II. 부문별 이행계획

No.	부문	성과목표	평가위원회 점검의견	평가대상기관 이행현황			비고 (반영쪽)
				이행 여부	이행내역 및 계획	완료 예정일	
종합 분석- 1	종합 분석	-	○	반영 / 추진중 / 미반영	○	18.12 월	
종합 분석- 2	종합 분석	-	○	반영 / 추진중 / 미반영	○		
연구- 1	연구 사업	1-1. ○○○	○ (질적 우수성) ○○○	반영 / 추진중 / 미반영	○		
연구- 2	연구 사업	1-1. ○○○	○ (달성 과정의 적절성) ○○○	반영 / 추진중 / 미반영	○		
연구 지원- 1	연구 지원	1-1. ○○○	○ (질적 우수성) ○○○	반영 / 추진중 / 미반영	○		
					○		
연구 지원- 2	연구 지원	1-1. ○○○	○ (달성 과정의 적절성) ○○○	반영 / 추진중 / 미반영	○		

붙임9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종합평가·중간컨설팅) 지침

2020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관평가(종합평가·중간컨설팅) 지침

2019.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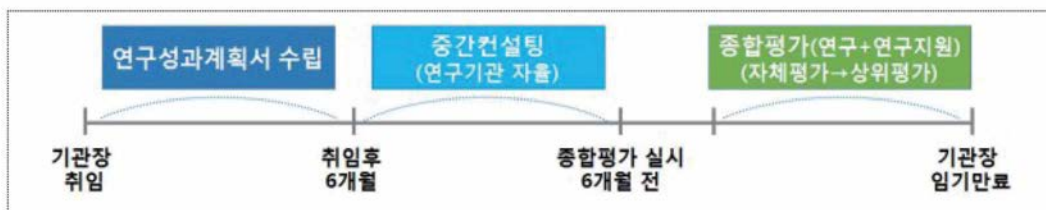
I.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개요	198
II. 중간컨설팅 세부 기준	199
III. 종합평가 추진 계획	201
IV. 종합평가 세부 기준	203
1. 자체평가	203
2. 상위평가	215
V. 종합평가 결과 환류	216
붙임1. 종합평가 상위평가 항목 및 지표	218
붙임2. 종합평가 자체평가보고서 표준양식	219

I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개요

◆ 연구기관이 기관의 고유임무와 연계하여 직접 성과계획(연구+연구 지원)을 수립하고, 기관장 임기에 맞추어 적절 여부에 대한 평가 실시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13.10월, 국과심 심의·확정)

- **연구성과계획서** : 신임 기관장 취임 시 연구기관에서 연구지원 부문과 연구부문의 **성과목표**를 제시
 - 연구성과계획서에 대해 연구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는 **자체점검**을, 성과평가를 총괄하는 **과기정통부**는 **상위점검**을 실시
- **중간컨설팅** : 연구기관 자율적으로 기관장 임기 중반에 외부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당초 연구성과계획서에 따른 **추진방향** 및 **성과 목표·지표**를 조정
 - 부처·연구회 및 과기정통부는 사후에 중간컨설팅의 적정성을 **확인**
- **종합평가** : 기관장 임기 종료 전 연구지원 부문과 연구 부문을 **종합**하여 연구성과계획서의 달성정도 및 성과의 우수성 등에 대해 부처·연구회는 **자체평가**를, 과기정통부는 **상위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는 차기 연구성과계획서, 예산·인력 조정 및 기관장 성과연봉 등에 반영



II | 중간컨설팅 세부 기준

□ 중간컨설팅 실시 결정

- 연구기관은 '컨설팅 실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컨설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부처·연구회 및 과기정통부는 환경 변화 등에 따라 필요 시 연구기관에 컨설팅 실시를 요청하고 점검할 수 있음

[컨설팅 실시요건]

- 명확한 외부 환경 변화 없이 당초 설정한 목표보다 추진성과가 **매우 미흡**하여 **원인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 목표치 하향 조정 불가능

-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컨설팅을 통한 성과점검 및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①법령 개정, ②연구환경의 급격한 변화(정부 중장기 계획 신규 수립 포함),
③공공기관 정책의 변화(경영부문) 등

☞ 성과목표·지표 수정 가능

□ 중간컨설팅 실시

- 연구기관은 '컨설팅 성립요건'을 준수하여 컨설팅을 실시해야 함

[컨설팅 성립요건]

- **(컨설팅 범위)** 연구부문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전체 배점(연구부문 80점+ 연구지원부문 20점)의 10%(10점) 이상에 해당하는 범위를 컨설팅 대상으로 설정

- **(컨설팅 기간)** 컨설팅 대상 사업의 심층검토를 위해 **최소 4주** 이상의 기간을 설정

※ 컨설팅은 현장점검을 1회 이상 실시 원칙

- **(컨설팅 시기)** 컨설팅은 종합평가 실시 **최소 6개월** 전 완료

※ 기관별로 2회 이상 컨설팅 실시 가능

- 연구기관은 '컨설팅단 구성기준'을 준수하여 **컨설팅단**을 구성해야 함
 - ※ 컨설팅단 구성 정보는 '성과평가정보공개서비스'에 서식에 맞게 입력
 - 컨설팅단에게 요청할 컨설팅 요구사항을 포함한 '**컨설팅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부처·연구회 및 과기정통부에 제출

[컨설팅단 구성기준]

- 컨설팅을 실시하는 연구지원 및 연구 부문별로 **2인 이상**의 컨설팅위원을 구성하여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 컨설팅위원 제외 기준 >

- ① 해당 연구기관이 발주한 사업(과제) 중 컨설팅 대상 사업(과제)의 책임자
- ② 국가R&D사업에 대해 현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③ 그 밖에 컨설팅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할 염려가 있는 자

□ 중간컨설팅 결과 확정

- 연구성과계획서의 수정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소관 이사회**를 통해 수정된 내용을 확정
 - 다만, 주요 내용의 수정·변경이 아닌 세부 내용의 변경일 경우 '연구성과계획서 점검단'의 확인·점검을 통해 확정 가능
 - ※ 예시) 기관의 주요 연구방향 변경, 성과목표 또는 전략목표의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소관 이사회를 통해 확정
 - ※ 예시) 성과목표 내 연구내용의 일부 보완, 일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변경 등의 경우, '연구성과계획서 점검단'의 확인·점검을 거쳐 확정 가능
- 연구기관은 컨설팅 의견에 대한 수용·불수용 등 처리결과와 사유 등을 포함한 '**컨설팅실시 결과보고서**'를 부처·연구회 및 과기정통부에 제출
 - ※ 연구기관은 컨설팅 결과를 '성과평가정보공개서비스(www.ntis.go.kr)'에 등록
 - '컨설팅실시 결과보고서'는 향후 종합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Ⅲ 종합평가 추진 계획

- 종합평가 체계·절차 : 자체평가(부처·연구회) → 상위평가(과기정통부)
 - 연구기관 : 성과목표·지표 설정·관리, 성과보고서 작성·제출
 - 부처·연구회 : 소관 연구기관의 경영실적과 연구성과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 과기정통부 : 기관평가 기본계획 수립, 자체평가 체계 및 평가결과 도출의 적절성 등에 대한 상위평가 실시, 최종 평가등급 확정



□ 종합평가 일정·기간

- 일정 : 기관장 임기 등을 고려하여 연 3차로 나누어 실시
 - 기관장 임기 만료일을 고려(임기 만료 전에 평가결과 확정)하여 차수별*로 대상기관을 선정
 - * 1차(1월~4월), 2차(5월~8월), 3차(9월~12월)
- 기간 : 자체평가(부처·연구회) 3개월*, 상위평가(과기정통부) 1개월** 등 총 4개월
 - * 연구기관의 실적보고서 작성 등 준비기간은 제외
 - **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기간 및 부적절 기관에 대한 재평가 기간은 제외

< 연간 종합평가 일정 >

구분	20.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종합평가	1차 자체평가		상위평가	2차 자체평가			상위평가	3차 자체평가		상위평가		

□ **종합평가 대상기관 : 총 16개**

구분	소관 기관	연구기관
1차 (2개)	과기정통부(1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회(1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차 (8개)	과기정통부(1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1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회(6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차 (6개)	과기정통부(1개)	한국과학기술원
	연구회(5개)	국가핵융합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 상위평가 미실시

※ 상기 평가일정은 실제 기관장 퇴임시기 및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기관장 중도 사퇴 시 평가방안]

사퇴 시기	실시 방안
취임 ~ 취임 후 1년 6개월	평가 없음 ※ 직원 능률성과급은 이전 평가 결과 활용
취임 후 1년 6개월 ~ 임기만료	사퇴 후 최초 종합평가 차수에 종합평가 실시 ※ 기관장 성과연봉, 직원 능률성과급 등은 종합평가 결과 활용

IV 종합평가 세부 기준

1. 자체평가

- 자체평가편람 : 부처·연구회는 연구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되, 과기정통부 종합평가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 편람 마련·시행
- 자체평가위원회 : 위원회의 투명성·독립성 및 위원의 다양성 고려
 - (역할) 연구성과계획서 점검, 중간컨설팅 결과 점검, 종합평가 수행
 - (선정기준) '자체평가위원 선정·제외 기준'에 따라 전문성 위주로 선정하고, 산·학·연 및 민간단체까지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자체평가위원 선정 기준]

- ① 해당 분야 실무경력 15년 이상 또는 연구개발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 ②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문가 / ③ 해당 분야 기업의 부장급 이상 전문가
- ④ 과학기술 관련 민간단체 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
- ⑤ 기타 상기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

[자체평가위원 제외 기준]

-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평가 대상기간 중 평가 대상기관이 주관한 연구부문 전략목표 내 사업(과제) 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
- ② 평가 대상기간 중 평가 대상기관이 주관한 전략목표 내 사업(과제)의 책임자
- ③ 국가R&D사업에 대해 현재 참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전문가
- ④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 ⑤ 상위평가 수행지원기관의 평가담당 부서 직원
- ⑥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 (단위) 부처·연구회 단위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분야 등 특성에 따라 복수의 위원회 구성 가능
- (선정시기) 연구성과계획서 점검, 중간컨설팅 결과 점검, 종합평가 수행 시기마다 평가위원을 선정·운영
 - ※ 연구성과계획서 점검위원의 50% 이상이 종합평가에 참여토록 고려
- (위원규모) 연구기관별 평가위원은 연구부문의 경우 전략목표 수*의 배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연구지원부문**은 3명 이상으로 구성
 - * 각 기관별로 고유 미션에 맞추어 3~5개로 구성
 - ** 연구지원부문: 성과 활용, 연구인력 운영, 예산·연구윤리 체계 등

- **(선정방법)** 자체평가기관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자체평가위원 선정
 - ※ 자체평가기관에서 직접 자체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금지
 - 선정위원장의 자체평가 위원장 겸임은 자체평가기관이, 선정위원의 자체평가 참여는 선정위원회·자체평가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평가위원 중도사퇴나 평가 참여 불가, 평가분야 확대 등의 사유 발생 시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위원 충원** 가능
 - ※ 평가위원 중도사퇴 시 ‘사퇴서’를 받아 처리
- **(운영지원)** 자체평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부처·연구회의 평가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지정
 -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한 **평가멘토단** 구성·운영
 - * 자체평가위원은 평가멘토단의 사전 검토내용을 참고하여 평가 실시

□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

- **(선정기준)** 위원은 연구분야 **이해도, 전문성,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촉
- **(위원임기)** 2년 이상(연임제한 없음)으로 자체평가기관이 정하여 운영
- **(위원규모)** 소관 연구기관의 규모·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구성
- **(운영지원)** 부처·연구회는 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평가위원 풀, 연구전문성, 과제수행현황, 평가이력 등의 정보 제공
 - ※ 상위평가 및 자체평가 위원 풀은 ‘성과평가정보공개서비스(www.ntis.go.kr)’에 입력
 -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 선정위원회 운영절차·활동 등 제출

□ **평가대상 기간 : 기관장 취임 이후부터 자체평가 직전 월까지 성과**

- 기관장 임기 종료까지 발생이 예상되는 성과는 **전문가 정성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나, **목표달성도에는 미반영**
- **연도별 목표치는 자체평가 직전 월까지 월할 계산**하여 평가
 - 특수성 인정이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이 제출하는 관련 자료*를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예외로 인정 가능(평가보고서에 관련 사항 명시 필요)
 - * 연도별 추이 및 연구흐름 등을 주요 내용으로 1쪽(성과목표별) 이내로 작성(서술형 지양)

□ 평가 방법

◆ 연구부문과 연구지원부문별로 점수(100점 만점)를 산출하고 연구부문은 80%, 연구지원부문은 20%의 가중치를 반영한 후 이를 합산하고 가감점 항목을 적용하여 해당기관의 최종 평가점수 산출

- 서면평가와 연구기관을 방문하는 현장평가*를 병행

* 연구책임자 등과 상의의 질적 우수성 달성과정 등에 관한 심층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평가 실시

※ 서면평가에 대한 검토회의와 현장평가(검토회의 포함)는 가급적 별도 일정으로 진행

① 연구부문

○ 연구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목표 단위로 성과지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와 성과의 질적 우수성 등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

* 정성평가지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연구지원부문에도 해당)

○ 성과목표별로 달성도(정량)에 40%, 질적 우수성 등(정성)에 60%의 배점을 부여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성과목표별 점수를 산출

○ 성과목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전략목표별 점수를 산출하고, 전략목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연구부문 평가점수를 산출

○ 당초 설정된 목표·지표 이외의 새로운 성과도 평가에 포함(연구지원부문에도 해당)

* 외부 환경의 변화,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발생된 새로운 성과는 관련이 높은 성과목표의 정성평가지 반영

② 연구지원부문

○ '임무중심형 연구환경 조성', '효율적 기관운영', '성과관리 활용·확산' 3개 영역은 성과목표 단위의 성과지표 달성도 정량평가와 3개 영역을 통합한 성과의 질적 우수성 등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

* 통합 정성평가 시 외부 지적사항을 정성평가등급 산정에 반영(평가의견에 반드시 언급)

* 통합 정성평가를 위한 실적보고서는 기관장 취임 이후 기관운영 실적(조직·인사·사업 관리·성과관리제도, 기관특성별 대표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하되, 간소하게 작성

○ ‘**현안 대응 및 경영자율**’ 영역*은 동 영역에 대한 **성과의 질적 우수성** 등의 **정성평가**만 실시

- * 현안 대응 및 경영자율 영역의 평가항목은 자체평가 기관 및 자체평가위원회에서 R&D정책 및 기관특성을 고려하여 필수항목을 피평가기관에 통보하며, 필수항목 이외의 항목은 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제시하여 평가 실시
- * ‘역할·책임(R&R, Role & Responsibility) 이행 실적’, ‘주요사업(과제)정보 관리 충실도(R&D조사·분석 시 최소 관리과제 단위 입력, 과제정보(연구목표·내용, 기대효과 등)의 명확성 등)’, ‘갑질 예방대책 추진 실적’ 필수 점검

○ **목표 달성도(정량)에 60%, 질적 우수성 등(정성)에 40%의 배점을 부여하여 점수를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연구지원부문 평가점수 산출**

구분	영역	목표달성도 평가 (가중치 60%)	정성 평가 (가중치 40%)
계획 수립	임무중심형 연구환경 조성	각 영역 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별 달성도 평가 (기존 평가방법과 동일)	기관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통합 정성평가 ※ 기관장 취임 이후 기관운영 실적에 대한 종합적 평가
	효율적 기관운영		
	성과관리·활용·확산		
현안 대응	현안 대응 및 경영 자율		현안 대응 노력 중심 정성평가

□ 세부 평가 방법

① 목표달성도 정량평가

○ **(산정단위) 성과지표별로 달성도(평가대상 기간 동안 계획 대비 실적 비율)를 산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성과목표별 달성도 산정**

- * 연구기관은 달성과정의 적절성 평가를 위해 연도별 계획대비 실적 제출

《 목표달성도 산출 예시 》

성과목표 (추진계획)	성과지표 (세부실행계획)	성과지표별 가중치	자체평가 인정달성도	목표 달성도
○○○ 개발 (배점 20점)	1. ○○○○	0.40	72%	84.55% (=0.4×0.72+0.35×1.00+0.25×0.83)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	0.35	100%	
	3. ○○○○	0.25	83%	

- ※ 증빙자료에 근거한 객관적 달성도 산정, 인정달성도 산출식 및 (불)인정 사유 기재
- ※ 정성적인 성과지표(예, 00 계획 수립, 00 개발 또는 기반구축 등)의 경우에도 달성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목표달성도 인정기준 및 의견 반드시 기재

- (지표유형별 산정방식) 지표의 성격에 따라 누적형, 독립형, 최종형으로 구분하고 각각 증가형, 감소형으로 구분

《 목표달성도 산출 예시 》

성과지표		구분	n-1	n	n+1	n+2	목표달성도
누적형	○○○○ 울	계획		4	5	7	$(6-3)/(7-3) \times 100 = 75.00\%$
		실적	3	4	5	6	
독립형	○○○ 수입	계획		24	29	41	$\{(23.5/24) \times 12/28 + (29/29 \times 12/28) + (40/41 \times 4/28)\} \times 100 = 97.20\%$
		실적	20	23.5	29.3	40	
최종형	○○○○ 오차율	계획		10	7	3	$3/3 \times 100 = 100\%$
		실적	13	11	8	3	

i) 증가형

- **누적형:** 계획서 수립 이후 실적이 누적되는 경우로서 계획서 작성 전년도(N-1년) 실적에서 마지막 평가 년도의 계획(N+2 계획치)까지의 계획량 대비 작성 전년도(N-1) 실적에서 마지막 평가 년도(N+2)까지의 실적치를 달성도로 산출

※ 성과지표의 성격 등에 따라, 평가 마지막 해 실적의 정확한 평가(측정)가 어려울 경우 마지막 해의 목표달성도는 제외하고 산출 가능(누적형·최종형에도 동일하게 적용)

《 목표달성도 산출 예시 》

성과지표	n-1년	n년		n+1년		n+2년		목표달성도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조사 (단위: 점)	76	78	78.5	81	81.2	83	*	$(81.2-76) \div (81-76) \times 100 = 104\%$ *○○○ 조사는 매년 7월에 실시하므로 종합평가 실적 제출일인 5.30일에는 n+2년의 조사 결과는 산출되지 않으므로 목표달성도 산출에서 제외

- **독립형:** 매년 수립된 계획 및 실적이 전년도 및 차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매년 달성도 값의 평균*으로 달성도로 산출 (연도별 달성도가 100%를 넘어도 각 연도 달성도는 100%만 인정하여 산출)

* 평가 대상기간 개월 수 대비 해당연도 개월 수를 연도별 비중으로 사용

- **최종형:** 기술스펙 등 최종년도의 목표가 핵심일 경우 최종년도 계획 대비 실적으로 달성도를 산출(달성도 산정 기준 제시 필수)

ii) 감소형*

- * '○○○검출 농도 ○○ 이하' 등 수치가 감소하는 것이 목표인 지표
- 달성될 경우: **증가형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
- 미달성될 경우: 달성도 산정시 역수 산정식(목표치÷실적치)이 아닌, **기준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한 변화량****으로 산정
- * 누적형, 최종형 지표는 연구성과계획서 작성 전년도, 독립형 지표는 직전년도
- ** (기준년도 실적-실적치) ÷ (기준년도 실적-목표치)

《 감소형 지표의 목표달성도 산출 예시 》

성과지표		구분	n-1	n	n+1	n+2	목표달성도
최종형	○○○○ 오차율 (% 이하)	계획		10	7	3	$3/5 \times 100 = 60\%$ (X)
		실적	13	11	8	5	$(13-5)/(13-3) \times 100 = 80\%$ (O)

② 질적 정성평가

- (산정단위) 연구 부문은 **성과목표별로**, 연구지원 부문은 모든 성과목표를 **통합하여 5단계 평가등급(S~D등급)** 부여

《 정성평가 등급별 가중치 》

등급	S	A	B	C	D
가중치	1.00	0.75	0.50	0.25	0.00

- (평가항목) '성과의 질적 우수성', '성과목표 달성과정의 적절성', '성과목표의 도전성·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성과목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밖의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성과목표에 따라 **1~2개의 항목만**으로 평가 가능
- * 연구성과계획서 점검단 의견 반영여부, 중간컨설팅 반영 결과, 외부 감사 및 평가결과,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성과목표 달성·미달성, 기관장 임기 종료까지의 예상 성과, 정부의 정책 등에 의한 새로운 성과, 초과달성 성과, 종합평가 결과 이행 등
- **기관특성 및 성과목표의 임무유형**에 따라 각 요소의 **비중을 달리하여 평가 가능**(단, 고려항목은 평가보고서에 명시)
- * 예: 연구지원 부문은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요소를 제외, 기초·미래선도형은 달성과정의 적절성 제외 등

i) 성과의 질적 우수성

- 국제적 수준, 국내외 공인기관에 의한 평가·인증 결과, 정부 공식 발표자료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연구부문의 기초·미래선도형) 성과 질적 우수성 판단 기준 (예시) 》

등급	전문가 정성평가 등급별 수준
S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성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거나, 소관 분야의 문제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breakthrough형 지식 또는 기술
A	국내 학문/기술적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지식 또는 기술
B	기존 지식 또는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 결과로 학문/기술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식 또는 기술
C	연구개발결과는 새롭지만 연구성과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학문/기술발전에 기여하기 힘든 지식 또는 기술
D	기존 지식 또는 기술과 차별성이 없거나 답습한 수준의 지식 또는 기술

- 비교 대상과의 실적발생시점*, 기술개발단계**를 고려한 세계 최고 수준 판정 필요

* (실적발생시점 기준 오류) 계획서 수립 시점(예: '15년)에서의 세계 최고 수준을 최종년도(예: '18년) 목표치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것에 대해 정성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판정

** (기술개발단계 기준 오류) 상용화된 제품의 성능치 또는 실용화 레벨에 있는 기술의 성능치와 해당 출연기관의 연구실 레벨에서의 성능치를 비교하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판정

ii) 성과목표 달성과정의 적절성

- 성과목표 달성과정이 계획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목표 달성과정의 적절성 판단 기준 (예시) 》

등급	전문가 정성평가 등급별 수준
S	성과목표가 계획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목표 달성과정이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될 만한 수준
A	성과목표가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며, 목표 달성과정이 효율적인 수준
B	성과목표의 대부분이 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졌으며, 목표 달성과정이 일반적인 수준
C	성과목표의 상당 부분이 계획과 어긋나게 추진되었으며, 일부 목표 달성과정이 일반적인 수준
D	성과목표가 계획과 달리 추진되었으며, 목표 달성과정이 미흡한 수준

iii) 성과목표의 도전성·혁신성

- 성과목표 등이 세계적 수준 또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을 만큼 도전적·혁신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연구부문)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판단 기준 (예시) 》

등급	전문가 정성평가 등급별 수준
S	성과목표의 도전성과 혁신성이 세계적 수준 또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정도
A	성과목표의 도전성과 혁신성이 기존 연구단계를 뛰어넘는 정도
B	성과목표의 도전성과 혁신성이 기존 해당분야 연구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정도
C	성과목표의 도전성과 혁신성이 기존 연구수준인 정도
D	성과목표의 도전성과 혁신성이 기존 연구수준 보다 후퇴된 수준

- 연구성과계획서 점검시 ‘매우 도전적’ 성과목표로 판정된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기본점수 60점을 부여하고 목표 달성도 평가 면제

《 매우 도전적 성과목표에 대한 정성평가 등급별 가중치 》

등급	S	A	B	C	D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 목표설정이 도전적·혁신적이거나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성과목표 미달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정성평가에 반영 가능

③ 부문별 평가점수 산출

《 연구부문 성과목표별 평가점수 산출 예시 》

성과지표 (배점)	성과목표 (배점)	성과지표 (비중, %)	목표달성도		정성평가	
			달성도 (%)	점수	등급	점수
① ○○○ (58)	①-① 연구수월성 중심 경영체제 강화 (18)	영향력지수 상위 20% 이상 논문 (20)	92	$18 \times [(0.20 \times 0.92) + (0.20 \times 1.00) + (0.30 \times 0.87) + (0.30 \times 0.84)] \times 0.4 = 6.4584$	A	$18 \times 0.75 \times 0.6 = 8.10$
		SMART 5등급 이상 특허 성과 (20)	100			
		평가 모델링 기술(30)	87			
		분석기술 고도화(30)	84			
	성과목표 소계		①-① : 6.46 + 8.10 = 14.56			
	①-② ○○○(20)	○○○				
		○○○				
		성과목표 소계	①-②			
	①-③ ○○○(20)	○○○				
		○○○				
		성과목표 소계	①-③			
	전략목표 소계		① = ①-① + ①-② + ①-③			
	② ○○○ (42)	②-① ○○○ (24)	○○○			
			○○○			
			○○○			
○○○						
성과목표 소계		②-①				
②-② ○○○(18)		○○○				
		○○○				
		성과목표 소계	②-②			
전략목표 소계		② = ②-① + ②-②				
연구지원부문 최종 점수(점)			① + ②			

※ 성과목표 점수 최종 산출 시 소수점 둘째자리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연구지원부문 평가점수 산출 예시 》

영역 (배점)	성과목표 (배점)	목표달성도 (60%)		정성평가 (40%)	
		달성도 (%)	점수	등급	점수
임무중심형 연구 환경 조성 (20)	우수 인력 양성 (10)	95	$10 \times 0.95 \times 0.6 = 5.70$	A	80×0.75 $\times 0.4 =$ 24
	연구 몰입 환경 조성 (10)	100	$10 \times 1.00 \times 0.6 = 6.00$		
효율적 기관운영 (25)	기관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8)	85	$8 \times 0.85 \times 0.6 = 4.08$		
	○○○○ (12)	80	$12 \times 0.80 \times 0.6 = 5.76$		
	○○○○ (5)	94	$5 \times 0.94 \times 0.6 = 2.82$		
성과관리 활용·확산 (35)	성과관리·활용·확산 체계 (7)	80	$7 \times 0.80 \times 0.6 = 3.36$		
	창업·중소·벤처기업 지원 체계 (8)	100	$8 \times 1.00 \times 0.6 = 4.80$		
	대외협력 및 개방 체계 (10)	90	$10 \times 0.90 \times 0.6 = 5.40$		
	대외 소통 및 정보공개·공유 기반 조성 (10)	95	$10 \times 0.95 \times 0.6 = 5.70$		
현안 대응 및 경영자율(20)					
연구지원부문 최종 점수(점)		$(5.7+6+4.08+5.76+2.82+3.36+4.8+5.4+5.7)$ $+ 24.00+15.00 = 82.62$			

[연구성과 인정 기준·범위]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성과”***를 성과로 인정
 - *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
 -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하되, 원칙적으로 오프라인/온라인에 게재된 자료만 인정
 - * 질적 지표 활용, 저자 역할(제1저자, 제2저자, 교신저자) 등
 - 특허: 국내·외 특허등록 기관에 등록된 특허
 - 기술료: 계약체결 후 기관의 수입으로 입금된 기술료
- 성과목표 간에는 **중복성과를 불인정**하고, 타 기관과의 **공동성과**는 기관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반영(불가피할 경우 정성평가에서 고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3항에 따른 연구성과*(민간수탁 사업으로부터 창출된 성과 제외)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이나 기탁된 성과만 인정**
 - *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연구시설·장비, 화합물, 생명자원, 신물질 등 9대 성과물
- **융합연구**에서 창출된 성과는 **예산 투입비율**에 따른 계획과 실적을 산출하여 사용
- 연구기관은 ‘**NTIS 사업및기관평가(www.ntis.go.kr)**’에 전년도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입력**하고, 부처·연구회는 ‘성과평가정보공개서비스’에 입력된 성과지표별 실적을 매년 확인·점검하며, 필요 시 관련 자료 요청
 - ※ 성과평가정보공개서비스에 자료 미입력 시 해당 지표는 최하 점수 부여
 - ※ 2차, 3차 종합평가 대상기관은 전년도 실적을 종합평가 실적 제출일까지 입력 가능

④ 가감점 적용

- (가점 항목) 기관장 취임 이후부터 종합평가 시점까지 아래의 항목에 대해 가점 부여 : 최대 2점(세계 유수의 상은 한도 외로 적용)

대상항목	가점 기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0.1점/건
(연구부문) 국무총리 표창(상) 이상 포상 (개인, 기관 포함)	국무총리: 0.1점/건, 대통령: 0.2점/건, 포장: 0.3점/건, 훈장: 0.5점/건
(비연구부문) 대통령 표창(상) 이상 포상 (개인, 기관 포함)	대통령, 포장, 훈장: 0.1점/건
세계 유수*의 상(노벨상, 필즈상 등)	1점 ~ 10점/건

* 자체평가위원회가 객관적 근거자료(연구계 및 언론 등)를 참고로 인정여부 결정

- (감점 항목) 건전한 평가문화 저해*: 3점(최대)

*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저하, 공정한 평가 저해, 평가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하는 허위기재, 과장자료, 실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 등을 제출

※ (예시) 연구기관 성과보고서 대비 성과 불인정 비율에 따른 감점

· 불인정률 5%이상~10%미만 0.3점 10%이상~25%미만 1.0점 25%이상~40%이하 1.5점 40%이상 3.0점

⑤ 종합평가 등급 부여

〈종합점수에 따른 최종 등급 부여 기준〉

기관평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종합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 총괄의견

- 연구기관의 연구·연구지원 계획·활동·성과와 기관의 임무·비전·중장기계획간의 연계성·부합성,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예산·사업구성의 효율성·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총괄의견에 반영
- 이를 토대로 기관의 당면과제 및 미래 발전전략 등을 제시

2. 상위평가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적절성'에 대한 상위평가 실시

○ 부처·연구회별 평가절차·체계 점검*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

* 평가계획, 평가운영, 평가보고서, 임무부합성·미래방향성에 대해 점검

- (평가계획) 계획수립 시기·절차·방법의 적절성, 계획 및 평가편람의 지침 준수여부 등 점검
- (평가운영) 자체평가위원회 선정 및 운영의 적절성, 평가운영(평가자료 제공, 소명절차 운영 등)의 적절성, 지침·편람 준수여부 등 점검
- (평가보고서) 보고서의 대국민 가독성, 평가의견의 구체성·논리성, 총평 등 평가의견의 기관 적합성 등 점검
- (평가결과 이행) 상위평가 및 자체평가 이행체계, 상위평가 의견 반영의 적절성 등 점검

※ 상위평가 시 달성도 산정오류 및 일부 성과목표의 평가 점수 및 등급 조정 필요사항은 상위평가위원회에서 직접 자체평가 점수(등급)를 조정함

○ 상위평가 점검결과는 과학기술자문회의, 국회, 성과평가 공개시스템 등에 부처·연구회별 등급을 공개하여 자체평가의 책임성 제고

※ 상위평가에서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결과가 계속하여 미흡하게 나온 부처·연구회는 구체적인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실시

○ 자체평가기관은 상위평가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수정하여 상위평가 결과 통보 2개월 이내에 상위평가기관에 제출

※ 평가의 일관성을 위하여 '상위평가 결과' 반영 이전의 자체평가보고서는 미 완료된 것으로 간주함

V 종합평가 결과 환류

- 기관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기관별 시정조치 이행계획 수립·시행
 -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은 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며, **이행 여부**는 차기 평가에 반영
 - 기관 비전(고유임무)과 중장기계획, 조직과의 연계성·부합성, 당면 과제(주요이슈) 및 미래 발전전략 등에 대한 기관의 조치계획 수립·시행 여부를 차기 연구성과계획서 점검 및 종합평가에 반영
 - ※ 자체평가 의견과 상위평가 의견을 구분하여 작성·제출
- 평가결과는 기관 고유임무 조정 및 기관장·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예산 등에 반영되어 기관 경영개선 등의 후속조치 시행
 - **(임무·기능 조정)**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임무 및 기능,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실시
 - 미흡한 성과목표와 관련된 사업 및 기관고유 임무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 조직* 등에 대한 해당기관 기능·역할 재편
 - * 기관 고유임무, 임무체계 또는 자율지표 등에 반영되지 않거나 성과가 미흡한 조직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
 - 종합평가에서 연속 최하등급 시 해당기관의 기능·역할 재편 검토
 - **(우수성과 발굴)**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은 연구기관 및 공로자는 정부포상(기관, 개인) 추천
 - **(계획서 연계)** 종합평가의 평가결과를 연계·활용하여 차기 계획서를 수립하고 기관 미래발전 방향을 도모
 - 평가결과 기관 고유임무와의 부합여부에 대한 평가의견은 차기 계획서 수립 시 반영

- **(예산연계)** 종합평가 결과(전략목표별 등급)에 따라 주요사업비에 대해 ‘매우미흡’ 등급 전략목표(사업)는 10%, ‘미흡’ 등급 전략목표(사업)는 5% 삭감하고, ‘매우우수’ 등급 전략목표(사업)는 5%, ‘우수’ 등급 전략목표(사업)는 3% 이상 증액하며, 이후 연도에는 전략목표별 연도별 달성성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
 - ※ 증액·삭감 폭은 자체평가 기관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단, 폭 축소는 지양)
 - 기관운영비 등의 산출 등에 종합평가 결과를 연계 가능
- **(인센티브 연계)** 연구기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성과연봉 및 직원 능률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지급
 - **(기관장 성과연봉)** 종합평가 실시 전까지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정산
 - * 성과가 극히 불량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성과급 미지급
 - **(직원 능률성과급)** 결산잉여금에 대한 능률성과급은 종합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률 차등 적용(단, 종합평가 실시까지 직전 평가 등급으로 지급률 적용)
 - * '19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른 능률성과급

붙임 1 **종합평가 상위평가 항목 및 지표****【자체평가 절차·체계 적절성 점검】**

평가항목	점검내용	배점
1. 자체평가계획 수립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계획 수립 시기 및 절차, 방법 등이 합리적으로 수행되었는가? 성과평가 실시계획 및 기관평가 지침에 맞추어 자체평가 계획 및 편람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40
2. 자체평가 위원구성·절차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적절히 추진되었는가?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및 평가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평가부담 경감 노력 및 소명절차 등이 적절하게 운영되었는가? 	40
3. 평가결과 이행 체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평가 및 자체평가 의견(지적사항)을 반영·이행하기 위한 체계가 적절히 구성되었는가? 	20

【자체평가 운영·결과 적절성 점검】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검내용	배점
1.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① 목표달성도 산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달성도 산정이 지침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는가? 	15
	② 정성평가 의견의 객관성·논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성평가의견이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었는가? 	20
2.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충실성	① 문제점·이슈 발굴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평가기관의 현안·문제점을 충실하게 발굴하여 제시하였는가? 	15
	②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구체성·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평가기관의 발전방향이 기관고유임무 부합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제시되었는가? 	15
3. 자체평가 운영의 적절성	① 평가 운영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적절히 수행되었는가? 	20
	② 평가조치 이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평가 지적사항 이행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고 반영되었는가? 	15
감점 항목		점검내용	감점
1. 평가보고서의 이해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보고서가 국민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가? 	-5

붙임 2 | 종합평가 자체평가보고서 표준양식

[종합평가 개요]

- 기본방향 및 평가근거
- 평가대상
- 평가내용 및 방법
 - 평가항목 및 내용
 - 평가방안 (목표달성도, 정성평가의 판단기준, 등급산출기준 등)
 - 종합점수 산출 방법(점수 산출, 가·감점 항목 등)
- 추진체계 및 절차
 - 평가 추진체계
 - 평가위원회 구성현황 및 세부역할
 -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적사항 이행내역(이전 상위평가 지적사항 이행내역 및 자체평가 지적사항 관리체계 등)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개요는 자체평가보고서에는 간략하게 기술하고 세부적인 체계·절차 부분은 상위 평가보고서(양식 추후 별도송부)에 기술하여 제출

[기관 종합평가 평가결과]

기관현황

※ 예산현황은 기관고유사업 내역사업(대과제) 구조까지 표시

비전 및 경영목표체계

평가점수 및 등급

※ 종합점수(등급)과 함께 전략목표별 평가등급, 관련된 예산액(기관고유사업:자체수입),

기관고유사업 대과제명, 인력(현황, 책임자명) 등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표현

평가결과 종합분석

- 연구부문 전략목표별 투입과 성과에 대한 종합 분석·평가의견
-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지원부문 추진성과의 효과성 분석
- 기관의 당면과제 및 발전전략 등

□ 연구부문 평가결과

○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성과목표	배점	목표달성도		정성평가		소계 (전략목표별 점수/등급 산출)
		인정비율	점수	등급	점수	
전략목표 1. ○○○○○			(기재)		(기재)	
성과목표 1-1. △△△						
성과목표 1-N. □□□						
전략목표 M. ○○○○○			(기재)		(기재)	(전략목표별 점수/등급 산출)
성과목표 M-N. ◇◇◇						
.....						
합 계						

○ 연구부문 총괄 의견

○ 전략목표별 평가 결과

[전략목표 M. ○○○○○]

◆ 성과목표 M-N. △△△

- 성과목표 주요내용 기술

《 평가지표 및 목표치 》

성과지표 (배점)	세부내용		목표 도출근거
○○○○○ (00)	2016년	○○○	△△△
	2017년	○○○	
	2018년 최종	○○○	
	2018년 조정	○○○	
○○○○○ (00)	2016년	○○○	△△△
	2017년	○○○	
	2018년 최종	○○○	
	2018년 조정	○○○	

《 평가결과(예시) 》

성과목표 배점	인정 목표달성도	달성도 점수	정성평가	정성평가 점수	소계
15	85 %	6.38	A	5.63	12.01

① 목표달성도 평가

성과지표 (배점)	연도	목표	실적		지표별 달성도		인정 목표달성도
			기관제시	인정	기관 제시	인정	
○○○○○ (00) [지표 특성]	'16	○○○			100%	90%	
	'17	○○○					
	'18.조정	○○○					
○○○○○ (00) [지표 특성]	'16	○○○					
	'17	○○○					
	'18.조정	○○○					

※ 지표 특성 : 누적형, 독립형, 최종형으로 구분하여 기재

▶ 목표달성도 검토기준 부합성 확인

구분		검토 의견 (특이사항 기재)	비고 (출처 등)
평가항목 및 목표치 관련 점검 사항		세부항목 및 비율 설정의 적정성, 임기말 목표치 반영 비율 조정 기준 등 기술	
인정/ 불인정 사유	달성도 성립 요건 판단기준	평가대상기간 내 성과, 평가지표별 목표 내용에 부합하는 성과, 성과계획서에 명시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성과 * 목표 도출 근거에 제시된 세부 목표치, 산출식, 검증방법 등	
	달성도 차감 요인 판단기준	성과가 허위 또는 부당 실적, 과다 계상 및 질적인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성과의 비율만큼 달성도에서 차감	
최종 인정 성과 및 달성도		기관이 제출한 성과 중 성립 요건, 차감 요인에 따른 불인정 달성 내용을 제외한 최종 인정 성과 최종 목표 달성도 산출식 기재 $10 \times [(0.6 \times 0.5) + (0.75 \times 0.5)]$	

② 정성평가

정성평가 결과 요약(1~n개로 표현 가능, 아래는 예시)				정성평가 등급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실적 등급조정	최종등급
질적 우수성	달성과정의 적절성	도전성. 혁신성	추가 항목			
높음 보통 낮음	높음 보통 낮음	높음 보통 낮음	높음 보통 낮음	S ~ D	유지 강등	S ~ D

◆ 평가의견

- ※ 평가항목(질적 우수성 등 기관 임무유형별로 편람에서 정한 항목)을 중심으로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 등을 함께 표현
- ※ 연구성과계획서 상의 목표(성과지표 이외의 성과목표에서 제시한 목표) 및 연도별 추진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성과의 우수성에 대한 현재의 국제적 연구수준 및 선진기관과의 비교, 변화된 연구환경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평가의견을 기술

- (질적 우수성) 등
- (추가항목)

출처 :
-
-

◆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내역

- 연구성과계획서 점검 내용
- 중간컨설팅 의견 내용
- 국회·감사 등 외부 지적사항

출처 :
-
-

◆ 개선 및 발전사항

-

□ 연구지원부문 평가결과

○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구분	성과목표	배점	목표달성도		정성평가	
			인정비율	점수	등급	점수
영역 1. ○○○○○						
	성과목표 1-1. △△△					
	성과목표 1-N. □□□					
영역 M. ○○○○○						
	성과목표 M-N. ◇◇◇					
.....						
경영자율(해당 시)	성과목표 1. ○○○					
현안대응(해당 시)				-		
합 계						

○ 전략목표별 평가 결과

[영역 M. ○○○○○]

◆ 성과목표 M-N. △△△

- 성과목표 주요내용 기술

《 평가지표 및 목표치 》

성과지표 (배점)	세부내용		목표 도출근거
○○○○○ (00)	2016년	000	△△△
	2017년	000	
	2018년 최종	000	
	2018년 조정	000	
○○○○○ (00)	2016년	000	△△△
	2017년	000	
	2018년 최종	000	
	2018년 조정	000	

《 평가결과(예시) 》

성과목표 배점	인정 목표달성도	달성도 점수
15	85 %	6.38

① 목표달성도 평가

성과지표 (배점)	연도	목표	실적		지표별 달성도		인정 목표달성도
			기관제시	인정	기관 제시	인정	
○○○○○ (00) [지표 특성]	'16	000			100%	90%	
	'17	000					
	'18.조정	000					
○○○○○ (00) [지표 특성]	'16	000					
	'17	000					
	'18.조정	000					

※ 지표 특성 : 누적형, 독립형, 최종형으로 구분하여 기재

▶ 목표달성도 검토기준 부합성 확인

구분	검토 의견 (특이사항 기재)	비고 (출처 등)
평가항목 및 목표치 관련 점검 사항	세부항목 및 비율 설정의 적정성, 임기말 목표치 반영 비율 조정 기준 등 기술	
인정/ 불인정 사유	달성도 성립 요건 판단기준	평가대상기간 내 성과, 평가지표별 목표 내용에 부합하는 성과, 성과계획서에 명시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성과 * 목표 도출 근거에 제시된 세부 목표치, 산출식, 검증방법 등
	달성도 차감 요인 판단기준	성과가 허위 또는 부당 실적, 과다 계상 및 질적인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성과의 비율만큼 달성도에서 차감
최종 인정 성과 및 달성도	기관이 제출한 성과 중 성립 요건, 차감 요인에 따른 불인정 달성 내용을 제외한 최종 인정 성과	
	최종 목표 달성도 산출식 기재 $10 \times [(0.6 \times 0.4) + (0.75 \times 0.6)]$	

②-1. 정성평가

※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지침'(16.6월) 이전 기준으로 구성되어 '경영자율'부분이 있는 기관

정성평가 결과 요약(1~n개로 표현 가능, 아래는 예시)				정성평가 등급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실적 등급조정	최종등급
질적 우수성	달성과정의 적절성	도전성, 혁신성	추가 항목			
높음 보통 낮음	높음 보통 낮음	높음 보통 낮음	높음 보통 낮음	S ~ D	유지 강등	S ~ D

◆ 평가의견

- ※ 평가항목(질적 우수성 등 기관 임무유형별로 편람에서 정한 항목)을 중심으로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 등을 함께 표현
- ※ 연구성과계획서 상의 목표(성과지표 이외의 성과목표에서 제시한 목표) 및 연도별 추진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성과의 우수성에 대한 다른 기관과의 비교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평가의견을 기술

- (질적 우수성) 등
- (추가항목)

출처 :

-
-

◆ 개선 및 발전사항

•

②-2. 연구지원 통합 정성평가

※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지침'(16.6월)에 따라 '연구지원'부문을 작성·개편한 기관

정성평가 결과 요약(1~n개로 표현 가능, 아래는 예시)				정성평가 등급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실적 등급조정	최종등급
조직·인사관리	사업관리	성과관리	추가			
높음	높음	높음	높음	S ~ D	유지 강등	S ~ D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낮음	낮음	낮음	낮음			

◆ 평가의견

※ 실적보고서에서 제시한 기관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평가의견을 제시하고 평가등급을 산정

◆ 대내외 지적사항 평가의견

- 국회·감사 등 외부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리스트
- 지적사항의 중요성, 이행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구체적으로 작성)

◆ 개선 및 발전사항

•

③ 현안대응

※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지침'(16.6월)에 따라 '연구지원'부문을 작성·개편한 기관

정성평가 결과 요약(1~n개로 표현 가능)			정성평가 등급
000	□□□	추가	
높음	높음	높음	S ~ D
보통	보통	보통	
낮음	낮음	낮음	

◆ 평가의견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항목별 평가의견 작성

우수 및 미흡사례

정책 제언

[참고자료]

멘토단 검토자료

연구성과계획서 점검의견 및 조치사항

중간컨설팅 내용 및 조치사항

이전 종합평가 평가내용 및 조치·이행내역

붙임10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및 연구회 자체평가 세부추진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0년도 자체평가 세부추진계획

202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목 차

I. 평가 개요	230
II. '19년도 과기정통부 자체평가 주요 성과	234
III. '20년도 자체평가 기본방향	236
IV. 주요 변경사항	237
V. 자체평가 세부 추진 내용	242
1. 기관운영계획서 수립 (신규제도 적용)	242
2.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신규제도 적용)	249
3. 중간컨설팅 (신규제도 적용)	256
4. 기관운영평가 (신규제도 적용)	264
5.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273
6. 추진일정	287
【붙임1】 기관평가제도 개편 전후 비교	288
【붙임2】 전년대비 달라진 점	289
【붙임3】 평가대상기관 외부 평가 수검 현황	290
【붙임4】 기관별 연구사업평가 주기 변화	291
【붙임5】 과기정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방안	292
【붙임6】 자체평가위원회 세부 권한 및 역할	293

I. 평가 개요

1 평가목적 및 법적근거

○ 평가목적

- 과기정통부 소관 직할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하 '연구회'> 포함)의 고유 임무유형 및 연구목표 등을 고려한 기관운영/연구사업에 대한 전주기 평가를 통해 기관의 중장기 발전 역량 강화

○ 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3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 「과기분야 출연(연)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
- 「2020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자문회의, '19.10.31)」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 및 직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평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제8조 (자체성과평가의 실시) 등

제6조 제①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할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그 출연연구기관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목표와 이에 따른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계획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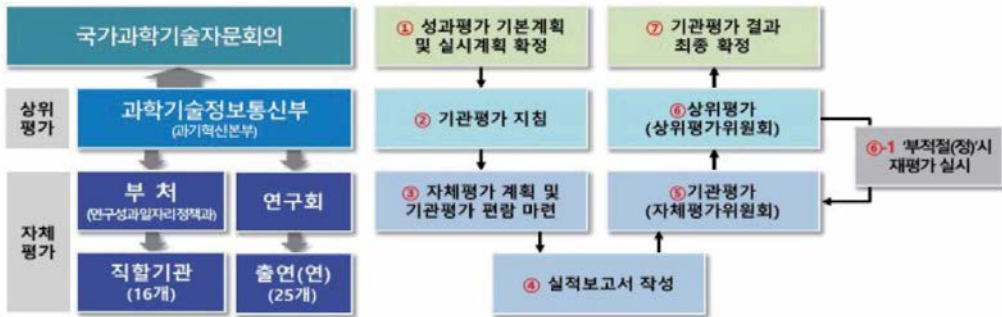
제8조 제①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할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자체성과평가를 실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감독관청 등)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및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

2 기관평가 체계

- **(상위평가)** 과기정통부(과기혁신본부)는 각 부처 및 연구회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 점검 (메타평가)
 -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및 ‘연구사업/기관운영 계획서, 중간컨설팅 및 종합평가, 기관운영평가 지침’ 마련
- **(자체평가)** 각 부처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체평가 수행
 - 각 부처 및 연구회는 상기의 과기정통부 ‘실시계획’ 및 ‘계획서 및 컨설팅·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평가 세부 추진계획’ 및 ‘평가편람’을 마련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 실시



< 기관평가 추진 체계도 >

○ 과기정통부 자체평가 주체별 기능 및 역할

주체	주요 역할	비고
과기정통부	· 과기부 소관 직할기관 자체평가 총괄 · 평가 시행계획 수립 및 중점 정책방향 제시	평가총괄조정
	· 지원육성 정책 수립, 의견 제시	관리감독부서*
전문기관	· 세부 평가편람 수립 ·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 기관평가 시행 및 개선	평가수행 (KSTEP 등)
평가위원회	· 세부 평가의견 제시	자체평가위원회

*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의 작성·제출 및 평가회의 시 가급적 참석

3 평가 대상 기관 및 평가 분야

○ 유형별 평가 대상기관 (총 16개)

구분	기관수	평가 대상기관
연구개발형	5	고등과학원(KIAS), 기초과학연구원(IBS), 국가수리과학연구원(NIMS), 한국뇌연구원(KBRI),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
교육 및 인력양성형	5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지원형	6	나노종합기술원(NNFC), 한국나노기술원(KANC),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과학기술인자리진흥원(COMPA),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4개 기관은 별도 평가 전문기관 선정·수행 예정

- 기관운영과 연구사업 부문을 분리 평가하여 기관의 중장기 연구 역량 강화
 - (기관운영) 기관장 임기(3~5년) 주기에 따른 맞춤형 기관운영평가
 - (연구사업) 중장기 연구목표에 따라 3년, 5년 또는 6년 주기의 연구사업 평가



4 '20년도 기관별 자체평가 일정

□ 총 20회 : 기관운영계획서 점검(5회), 연구사업계획서 점검(5회), 중간컨설팅(5회), 종합평가(3회), 기관운영평가(2회)

임무유형	기관명	기관장	임 기	평가유형					비고	
				기관운영 계획서	연구사업 계획서	중간 컨설팅	기관운영 평가	종합 평가		
연구 개발형	고등과학원	최재경	'20.01.01 ~ '22.12.31	○ ('20.4)	○ ('20.4)	-	-	-		
	기초과학연구원	노도영	'19.11.22. ~ '24.11.21.	○ ('20.3)	○ ('20.4)	-	-	-		
	국기수리과학 연구소	정순영	'18.01.30.~ '21.01.29.	-	-	-	-	○ ('20.5)		
	한국뇌연구원	서판길	'18.12.17.~ '21.12.16.	-	-	○ ('20.10)	-	-		
	한국원자력의학원	김미숙	'18.04.27. ~ '21.04.26.	-	-	○ ('20.2)	○ ('20.9)	-		
교육 및 인력 양성형	한국과학기술원	신성철	'17.02.23. ~ '21.02.22.	-	-	-	-	○ ('20.9)		
	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19.03.06. ~ '23.03.05.	-	-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국양	'19.04.01. ~ '23.03.31.	-	-	-	-	-		
	울산과학기술원	이용훈	'19.11.25. ~ '23.11.25.	○ ('20.3)	○ ('20.4)	-	-	-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	선임중	○	○	-	-	-	취임 후 4개월內	
지원형	정책· 시책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김상선	'18.08.03. ~ '21.08.02.	-	-	○ ('20.6)	-	-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원광연	'17.10.23.~ '20.10.22.	-	-	-	-	○ ('20.1)	
	사업화 장비 공공 교육 의료 서비스	과학기술 일자리진흥원	배정희	'19.01.21.~ '22.01.21.	-	-	○ ('20.10)	-	-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	조성찬	'17.03.28. ~ '20.03.27.	○ ('20.7)	○ ('20.7)	-	-	-	계획서 점검 동시진행
		나노융합기술원	이조원	'19.09.14. ~ '22.09.15.	-	-	-	-	-	
		한국나노기술원	이윤덕	'18.04.23. ~ '21.04.22.	-	-	○ ('20.2)	○ ('20.9)	-	

※ 중간컨설팅의 경우 평가 실시 6개월 전 소관 이사회 계획서 확정 시점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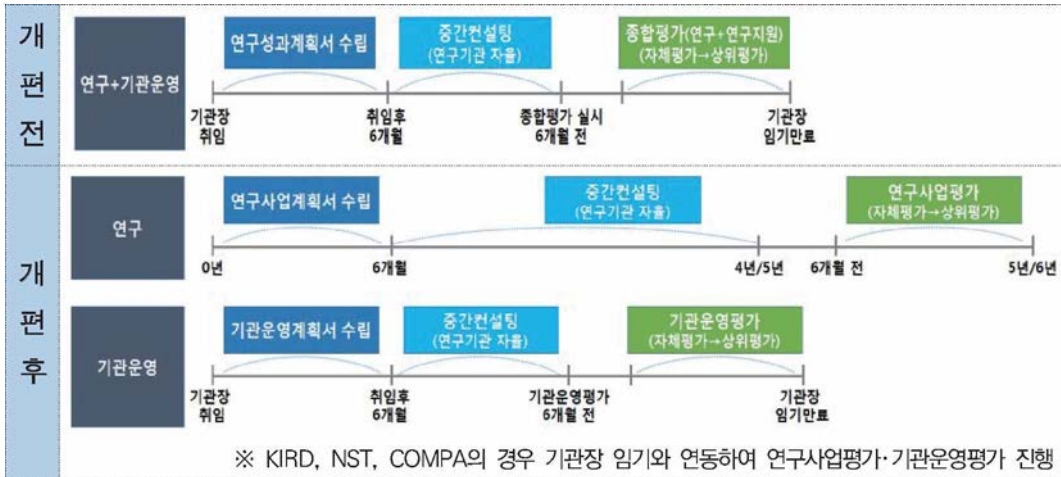
II. '19년도 과기정통부 자체평가 주요 성과

① 안정적 중장기 연구기반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촉진

○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하고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연구사업과 기관운영 부문 평가 분리

- 기관운영 평가는 기관장 임기에 맞춰 실시하고, 연구사업 부문은 기관장 임기와 무관하게 기관의 중장기 연구목표 및 전략에 따라 5년 또는 6년 주기로 평가

※ 3개 정부지원기관(연구회, 인력개발원, 일자리진흥원)은 기관장 임기 단위로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② 정성평가 중심의 컨설팅 지향형 R&D 전주기 평가로 전환

○ 기관운영/연구사업 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는 미제시, 종합평가 시 기존 지표 달성도 평가는 폐지, 정성평가 중심으로 전환

- (연구사업) 연구수행 적절성, 연구성과의 우수성 이외에 연구결과 영향력(파급 효과) 항목을 신설하고 R&D 전주기 정성평가(100%) 실시

※ 기관평가 결과의 예산배분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시 출연금 내역사업 단위의 전략목표 수립·평가

- (기관운영) 외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기관의 평가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목표에 대한 정성평가 비중 확대(52→70%)

③ 기관 R&R 재정립 중점 추진과제 이행여부 별도 평가 실시

- 기관별 R&R 재정립에 따른 기관장의 이행력 담보를 위하여 계획서(연구사업·기관운영), 중간컨설팅, 종합평가 등 주요 단계별 적용 실시

평가단계	R&R 이행내역 검토방안
계획서 점검	- 각 기관별 R&R의 이행·지원체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필수 연계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계성에 대한 점검 실시
중간컨설팅	- 대상 선정 시 R&R로 인한 계획서 수정 필요성 필수 검토
종합평가	- 기관 R&R 추진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별도의 평가방안을 수립하고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영역에서 최초 적용

④ 자체평가위원회 재구성 및 평가대상기관과의 소통 강화

- 과기정책·기관평가 이해도, 연구현장 신뢰도, 제척사유 검증 등을 통해 우수 평가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재구성 (38→45명)

※ (평가위원 후보자 Pool 추가 구성) ① 공모('18.11.12.~11.30) ② 추천 : 산하기관(52개), 부·처·청 등(39개), 대학(187개) 등(~11.30.), ③ 후보자 pool 규모 : '18년도 433명 → '19년도 583명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등 제재조치 이력 유무, WASET, OMICS 등 부실학회 참석 여부 사전 검증 등 제척 사유 사전 검증

- 평가대상기관 실무자 대상 평가 대응 심층 교육을 연 2회로 상설화하여 평가 실무 역량 강화 및 신규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평가대상기관 교육 : '19.5.22.(1차), '19.12.4 (2차) 실시

과기정통부 직할 출연(연) 평가 담당자 교육 ('19.5.22.)



Ⅲ. '20년도 자체평가 기본방향

- ◆ 중장기 연구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 촉진
- ◆ 컨설팅 지향형 R&D 전주기 평가 확립
- ◆ 자체평가 결과의 신뢰도 및 수용성 강화
- ◆ 평가자와 피평가기관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하고 공정한 평가문화 정착

구분	문제점	개선안	
		현재	향후
컨설팅 지향형 평가	계획서 점검 절차방식 미흡	점검 의견 반영 검토	→ 소명 절차 강화
	평가위원 평가방식 경직	평가 제도 중심 교육	→ 컨설팅·자문 역할 강화 위주 교육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 체계	기관별 전문분야 부합성 부족	소규모 상설 자체평가위원회	→ 자체평가 위원 풀 확대
	평가 연속성 부족	3대 임무형 위원회 운영	→ 책임평가 위원제 강화
	운영체계의 복잡성	3개 선정위원회	→ 선정위원회 일원화
평가문화 및 평가환류 체계	건전한 평가문화 부족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 평가대상기관까지 확대
		저해행위 제재 부족	→ 기관 대상 감점 사항에 명시 → 부적절 불성실 평가자 배제
	기관 정책 수요 미반영	외부 고객 수요자 인터뷰	→ 기관 내부 수요 (공급자) 인터뷰
	이행관리 체계 실효성 부족	반기별 점검	→ 평가 주기 내 3회 실시
	환류 정책의 현실화 부족	성과연봉 금액 제시	→ 연봉 비례로 기준 변경
기관운영 평가	기관장 책임 운영 필요	종합평가 내 연구지원 평가	→ 기관운영평가 최초 실시
	지표 설정 평가부담 가중	목표달성도 + 정성평가	→ 외부평가 활용+정성평가
	경영평가 비중 축소	기존 평가시 최대 20점	→ 기관운영평가 100점 만점 및 최종 5등급 부여

IV. 주요 변경사항

1. 컨설팅 지향형 계획서 점검을 통한 점검 결과의 수용성 제고

기존	개선
▶ 점검의견의 반영 사항의 적절성 검토 중심	▶ 계획서 점검 의견 소명 절차 강화
▶ 점검의견 이행계획의 적/부 평가	▶ 적/부 명시 방식 개선, 점검의견 중점 제시
▶ 기관의 외부 고객 중심 수요자 인터뷰	▶ 기관의 정책수요까지 확대한 수요자 인터뷰
▶ 평가 체계·제도 중심의 평가위원 교육	▶ 컨설팅·자문 역할을 포괄한 평가위원 교육

○ 계획서 점검 의견에 대한 수정·확정 절차 및 방식을 개선하여 수용성 제고

- 계획서 점검의견 초안의 무조건적 반영은 지양하고 평가대상기관의 타당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명절차 개선

※ 확정회의 시 점검의견의 수정본 반영 여부에 대한 선택점 점검을 기관 이의신청에 대한 대면 소명 절차로 변경 운영

- 계획서 점검 결과에 대한 적/부 명시 방식에서 점검의견을 중점 제시하는 컨설팅형 점검 지향



○ 계획서 점검 취지에 맞도록 점검위원의 컨설팅·자문 기능 및 역할 확대

- 계획서 점검을 통해 기관의 발전 전략이나 미래 방향성 등이 중점 제시될 수 있도록 점검위원에 대한 사전 심층교육 실시

※ 계획서 수립 점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처럼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대상기관의 시정 요구 제기 (19.10.16, 기관평가 제도 개선 회의)

②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개선을 통한 실질적 독립·책임평가 달성

기존	개선
▶ 공통위원으로 구성된 상설위원회 운영	▶ 상설 공통위원 폐지, 상시 자문단 운영
▶ 유형별 소규모 공통위원 운영	▶ 세부 분야별 평가위원 풀(pool) 확대
▶ 3대 유형별 선정위원회 개별 운영	▶ 평가위원 선정위원회의 통합 운영

○ 평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장 주도로 선정한 자체평가위원 풀(pool) 구성·운영

- 기존(18~19년) 자체평가위원과 유관기관 추천 및 자유 공모 등을 통한 신규 후보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자체평가위원 풀 확대 구성

* 학문분야별(물리·화학·생명·지구·수리과학, 기계·정보통신·원자력 등), 사업유형(정책, 교육, 성과관리, 기술사업화), 기관운영(조직·인사·예산 등) 등

○ 전문성·연속성을 고려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으로 책임평가* 강화

* 각 기관의 계획서 점검부터 종합평가까지 평가 전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평가 수행

- 가급적 풀 내에서 평가대상기관의 세부 사업 분야*에 부합하는 전문가로 자체평가위원 전원을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연속성 제고

* 다만, 평가대상기관별 세부사업 분야의 통일성, 유사성, 규모성을 감안하여 유사분야를 통합하는 등 평가위원의 관할 범위를 정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 소수 상시 자문단(10명 내외)을 운영하여 평가 일관성 및 책임성 지속 확보

- 자체평가위원은 최소 1주기(계획서점검~종합평가 또는 종합평가~계획서점검)에 참여토록 권장하고 차기평가 및 복수기관에도 적극 활용

○ 자체평가위원회 체계 개선에 따른 평가위원 선정위원회 일원화

- 유형별(3개) 상설 자체평가위원회를 전문 분야별로 통합 구성·운영하게 됨에 따라, 유형별로 운영 중인 평가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합* 운영

* 현 임무유형별 위원장 3인과 민간 외부전문가 5인 내외 등 총 8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임무유형별 위원장 중에서 호선, 선정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제한은 없음

③ 평가문화 및 평가환류체계 개선

기존	개선
▶ 공정한 평가문화 저해 행위 지속 발생	▶ 절차개선 및 교육 등 건전한 평가문화 확립
▶ 평가 지적·권고사항의 반기별 이행내역 점검	▶ 중간점검 계획 수립 전 이행내역 점검 후 반영
▶ 기관장 성과연봉 반영 기준 금액 제시	▶ 기관장 성과연봉 반영 기준 비율로 변경

○ 평가 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공정하고 건전한 평가문화 정착

- 공정한 평가문화 저해 방지를 위한 보안 서약서 작성 대상을 기존 평가위원에서 평가대상기관에도 적용
- 평가대상 기관에서 평가위원과의 직·간접적 개별 접촉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감점 기준 마련

※ 공정한 평가 문화 저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감점 기준 마련, 기관평가 편람에 반영

○ 공급자까지 인터뷰 제도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기관의 발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환류체계 마련

- 현 정책고객(수요자) 중심 인터뷰 제도를 기관 주체(공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대정부 정책 건의 사항 등 기관 발전 이슈 발굴 강화

※ 전략회의 및 현장평가 시 공급자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시간 부여 및 절차 추가



○ **자체평가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체계 개선**

- 기존 반기별 시행 중인 이행현황 점검 주기를 주요평가 시기별(평가주기 내 최소 3회*)로 실시하여 실효성은 높이고 기관의 평가부담은 완화

* 계획서 점검, 중간컨설팅 및 종합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중간컨설팅 횟수에 따라 추가 시행 가능

○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장 성과연봉 지급 기준의 현실화**

- 평가 등급별 지급 기준을 각 기관장의 기본연봉 대비 비율로 변경하고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기관장 성과연봉 반영 기준 》

구분	기관평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현행	성과연봉 (55백만원 예시 기준) (단위 : 백만원)	최대 55 최소 30	최대 44 최소 30	최대 38 최소 30	최대 30 최소 0	0
변경	기본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율	최대 39%	최대 33%	최대 27%	최대 21%	0

* 기본연봉 :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

4 신규 제도에 따른 기관운영 평가 최초 실시

기존	개선
▶ 기존 임무중심형 종합 평가 실시	▶ 신규 제도에 따른 기관운영평가 최초 실시
▶ 목표달성도 평가 + 전문가 정성평가	▶ 외부평가 공통영역 평가 + 전문가 정성 평가
▶ 기존 평가 시 연구지원 부문 최대 20점	▶ 기관운영평가 100점 만점으로 최종 5등급 부여

○ **기관장 임기 종료 기관 대상 기관운영 평가 최초 실시**

- 기관장 임기를 고려하여 연 3차*로 나누어 실시하되, 매 차수별 자체평가 3개월, 상위평가 1개월 등 총 4개월간 기관운영 평가 실시

* 1차(1월~4월), 2차(5월~8월), 3차(9월~12월)

※ 단, 기관장 취임 후 '1년 6개월' 내 기관장 중도 사퇴할 시 기관운영 평가 미실시

〈 2020년 기관운영평가 대상 기관 〉

대상 기관명		기관장	임기
연구개발형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	김미숙	'18.04.27. ~ '21.04.26.
지원형	한국나노기술원(KANC)	이윤덕	'18.04.23. ~ '21.04.22.

○ 기관운영계획서 상 달성 성과의 우수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기관운영계획서에 제시된 공통영역에 대한 정량평가 및 자율영역, 현안 대응영역 성과의 질적 우수성 등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 실시

※ (평가대상) 기관장 취임 이후부터 자체평가 직전 월까지 실적

〈 기관운영계획서 영역별 배점 및 평가 방법 〉

평가 영역	평가 기준	평가 방식
공통영역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평가결과를 환산 식에 따라 산출하여 점수 부여 평가 항목 성격에 따라 '가점형', '감점형', '등급형'과 '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산출 	정량평가 100%
자율영역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정의 적절성, 성과의 우수성, R&R 이행 달성도 등 	정성평가 100%
현안대응영역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정책 대응노력·성과 정성평가 등 	정성평가 100%

※ 영역별(현안대응영역 제외) 배점은 기관운영계획 수립 시 기관 특성에 따라 자체평가기관과 연구기관이 협의하여 ±10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경우, 조정된 배점에 따라 평가

- 개선된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한 세부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100점 만점)을 산출하고 5단계 최종등급(매우 우수 ~ 매우 미흡) 부여

《 자율영역·현안대응영역 정성평가 등급별 가중치 》

등급	S	A	B	C	D
등급별 가중치 (기존)	1.0	0.75	0.5	0.25	0.0
등급별 가중치 (개선)	1.0	0.85	0.70	0.55	0.40

《 종합점수에 따른 최종 등급 부여 방안 》

기관평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종합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이상	60점 미만

V. 자체평가 세부 추진 내용

1 기관운영계획서 수립 (신규 제도 적용)

□ 추진 개요

- 기관장 임기 중 연구기관이 역할·책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기관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관운영계획 수립
 - 기관장 취임 직후 3개월 이내 초안을 작성·제출하여 자체·상위 점검 후 6개월 이내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본 제출

	대상 기관명	기관장	임기	점검 및 확정 기간
연구개발형	고등과학원(KIAS)	최재경	'20.1.1~'22.12.31	취임 후 6개월 내 확정
	기초과학연구원(IBS)	노도영	'19.11.22~'24.11.21	
교육 및 인력 양성형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선임 예정	-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용훈	'19.11.25~'23.11.24	
지원형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KIRD)	선임 예정	-	
	나노종합기술원 (NNFC)	이조원	'19.09.16~'22.09.15	

* 신임 기관장 취임 시점에 따라 점검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기관운영계획서 작성 기준

- 기관 **역할·책임(R&R)**, 기관장 경영철학, 정부 정책* 및 대내외 수요 등을 반영하여 글로벌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영목표**를 설정

- 기관장 취임연도를 기준으로 임기 종료 시까지의 기관운영 목표 및 계획 작성

* ① 기관혁신 : R&D혁신방안('18.7),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18.6) 등, ② 윤리적 경영 :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18.7) 등, ③ 성과관리·혁신 : IP-R&D 실행방안('18.3) 반영 등

- **기관운영계획**은 경영목표 아래 모든 기관에 공통 적용되는 **공통영역**과 기관별로 수립하는 **자율영역**, **현안대응영역**으로 구분

(가) 공통영역(30점)

○ 계획서 수립 시 평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별도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향후 기관운영평가 시 기관이 기 수검 받은 외부평가결과를 반영

- 기관 R&R 이행과 연관성이 높은 순으로 외부평가 항목을 5개 이상* 선정

※ 연구보안평가를 제외한 외부평가별 배점은 최소 3점 최대 15점까지 설정 가능

* 수검하는 외부평가 개수가 5개 미만일 경우, 수검하는 외부평가 전체를 활용

구분	외부평가결과
전 기관 공통 필수(17개)	연구보안평가(5점 고정)
해당 기관에 한해 필수(2개)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심사
자율 선택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고객만족도 조사,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부패방지 사책평가, 여성과학기술인 승진·채용목표제, 재난관리평가, 정보화 업무 성과관리평가 등

(나) 자율영역(50점)

○ 기관장의 기관운영에 대한 철학 및 출연(연) 정책방향,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기관 R&R에 기여할 수 있는 3~5개의 성과목표 제시

※ 성과목표별 배점 총합은 50점, 목표별 최대 25점을 넘지 않도록 설정 (배점 설정 사유 제시)

※ 필요 시 기존 연구지원 부문의 공통영역(연구인력·환경, 효율적 기관운영, 성과관리·혁신) 참고하여 수립 가능

- 출연(연) 역할 및 책임(R&R) 재정립에 따라 연구기관은 기관 R&R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 활동 등을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수립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을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수립하고 성과목표별 예상 대표성과 및 파급효과 제시

※ 필요 시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작성 가능 (추후 달성도 평가 미실시)

※ 연도별 추진계획이나 예상 성과 등을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 가능

(다) 현안대응영역(20점)

○ 기관운영평가 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및 기술 환경 변화 등에 대한 기관의 대응 노력(성과) 및 필수 반영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영 성과 기술

- 계획서 수립 시 성과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기관운영평가 시 기관이 제출한 대응 노력 및 성과를 100% 정성평가 실시

〈 기관운영계획서 영역별 배점 및 평가 방법 〉

평가 영역	평가 방법
공통영역 (30점)	외부평가결과 활용(환산식에 따라 점수 부여)
자율영역 (50점)	전문가 정성평가(과정의 적절성, 성과의 우수성, R&R 이행 달성도 등)
현안대응영역 (20점)	정부정책 대응노력·성과 정성평가 등

※ 영역별(현안대응영역 제외) 배점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자체평가기관과 연구기관이 협의하여 ±10점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감사 등 외부 지적사항 등은 정성평가 시 차감 반영

□ **점검 방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는 기관운영계획서 초안에 대한 점검 실시
 - 역할·책임 부합성, 기관 발전 및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직전 평가결과 반영 여부** 등을 검토
- **상위평가(과학기술혁신본부)**는 자체점검의 계획서 작성지침 준수 여부 점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처)는 기관 운영 전략 등 내용상 점검, 상위평가는 필수항목 반영 여부 등 형식상 점검으로 상호배타적인 점검 병행 실시
 - 상위평가는 자체점검결과 초안 접수 후 별도 일정으로 검토를 추진하며 검토의견을 과기정통부 점검위원회에 통보
- 기관운영계획서 초안 점검의견에 대한 연구기관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명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점검절차 개선
 - 기관은 위원회의 점검의견 초안을 반영한 기관운영계획서 수정본과 점검의견 초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의견을 함께 제출
 - 점검위원회는 점검의견 초안 반영 여부와 함께 소명의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점검의견을 확정하고 이를 기관에 제공
- **연구기관**은 점검의견 확정본을 반영하여 기관운영계획서를 보완한 이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 (최종본 과학기술혁신본부 제출)

〈 기관운영계획서 점검 절차 개선(안) 〉

(: 기관수행, : 위원회 수행)

구분	D+1개월	D+2개월	D+3개월	D+4개월	D+5개월		D+6개월
현재(Before)		계획서 초안 제출		계획서 초안 점검	계획서 수정	수정본 점검	계획서 보완·확정
개선(After)		계획서 초안 제출		계획서 초안 점검	계획서 수정	수정본 점검 소명 검토	계획서 보완·확정

* 계획서 수정본의 초안 점검의견 반영결과 및 점검의견에 대한 소명 검토

- 現 임무중심형 종합평가가 종료되는 기관부터 신규 변경제도 순차 적용 - 신입 기관장 취임 일정에 따라 **연구사업계획서** 점검 일정(20.3~6)과 중복될 경우 기관운영계획서·연구사업계획서 점검 병행 실시

〈 기관운영계획서 추진 일정 〉

구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9.12.31 기관장 취임 (예시)	기관			기관운영계획서 작성·제출						보완 확정
	부처						계획서 자체점검			
	혁신본부							상임 점검		

〈 기관운영계획서 작성 기준 〉

◎ 기관장의 경영철학, 정부의 정책수요·방향*, 대내·외 환경분석 등을 바탕으로 R&R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운영 목표와 계획 제시

* △기관혁신 : R&D 혁신방안(18.7),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18.6) 등

△윤리적 경영 :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18.7) 등

△성과관리·확산 : IP-R&D 실행방안(18.3) 등

평가영역	평가방법(비중)	
	현재	개편
정량+정성 (80점)	달성도 평가(40%) + 통합 정성평가(60%)	외부 평가결과* 활용(30점) + 성과목표 정성평가**(50점)
정책현안 (20점)	정책현안 정성평가 (20점)	정책현안 정성평가(20점)
가점 (최대 2점)	-	대표 연구성과 우수성(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 비연구부문 국무총리 표창(상) 이상 포상(기관)

* 연구보안평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심사 등

** 기관장 경영철학에 따른 성과목표별 추진 실적 등 정성평가

점검 일정(안)

구 분	추진 일정	주요 내용
기관운영계획서 작성 방안 협의	D-2개월	• 기관운영계획서 작성 사전 실무자 대상 세부 작성 방안 교육 및 협의
점검위원회 구성	D-1개월	• 점검위원회 구성
기관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 마련	D-1개월	• 기관현황자료집, 점검의견서 양식
기관운영계획서 초안 접수	D+3개월 내	• 기관운영계획서 작성 초안 접수
전략회의 개최	D+4개월	• (위원회) 영역별 점검위원 위촉 • (위원회) 점검방법 및 세부전략 논의 • (기관) 기관운영계획 발표
서면평가 실시	D+4개월 (2주)	• (위원회) 점검위원회 서면검토 실시 • (위원회) 점검의견서(안) 및 질의서(안) 작성
서면질의	D+4개월	• (기관) 점검위원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 작성
검토회의·현장평가	D+4개월	• (위원회) 소위원회별 점검의견 검토 • (기관) 기관 답변 발표 및 질의응답
점검의견서 상위평가 제출	D+4개월 내외	• 점검의견서(안)에 대한 상위평가 점검
점검의견서 기관 통보	D+4개월 내외	• 점검의견서(안) 대상기관 통보
기관운영계획서 1차 수정	-	• (기관) 점검의견서(안)을 반영한 계획서 수정(1차) • (기관) 점검의견서(안) 반영결과 및 소명의견 제출
점검의견 확정회의	D+5개월 (소명포함)	• (위원회) 기관운영계획서 수정본 재점검 • (위원회) 점검의견서(안)에 대한 소명의견 검토 • (위원회) 점검의견서(안) 검토 및 확정
점검의견서 확정 통보	D+5개월 내	• 기관운영계획서 수정본에 대한 점검의견 확정 송부
기관운영계획서 이사회 심의·의결	D+6개월 내	• (기관) 점검의견서 반영 • (기관) 기관운영계획서 재수정·보완
기관운영계획서 최종본 제출	D+6개월 내	• (기관) 기관운영계획서 최종본 및 자체·상위평가 검토내용 반영내역 제출

□ 기관운영계획서 점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포함 총 5인 내외로 구성

-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해 과기정통부 상설 자체평가위원회 분야별 평가위원 중 기관운영계획서 점검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 점검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

- 점검위원은 기관 R&R 부합성, 기관 발전·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직전 평가결과 반영여부 등을 검토하며 영역·성과목표별 2인의 점검위원 배정(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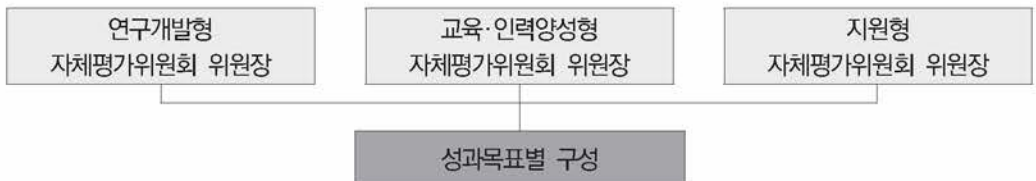
※ 세부 점검항목은 기관운영계획서 점검 편람에 제시

- 평가의 전문성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계획서 수립부터 기관운영평가까지 전주기에 걸쳐 동일 평가위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 (책임평가제)

- 필요 시 동일한 점검위원회가 복수의 기관에 대한 점검 병행 가능

○ 간사 기관은 자체점검의견 및 소명의견에 대해 타 기관 혹은 이전 평가결과를 토대로 쟁점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점검위원회는 이를 검토·조정

《 2020년도 기관운영계획서 점검위원회 구성(안) 》



대상기관	점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과학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기초과학연구원 ◦ 나노종합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위원장(1인) ◦ 간사위원(1인) ◦ 점검위원(4인 내외) ◦ 간사(전문기관) ※ 간사위원은 점검위원 병행
6개 기관	5인 내외(전문기관 제외)

※ 예산 및 환경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9.12 점검 착수, '20.3월 내 확정

□ 기관운영계획서 점검 세부 일정

활동	일정		주요내용				비고	
추진계획 확정·통보	2019.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평가 추진계획 기관 통보 ·세부 제도개선 의견 수렴 				〈공통〉	
제도개선 활동 및 2020년도 평가편람 개발	2019.11월 ~ 2019.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하평가자 의견수렴 및 벤치마킹 추진 ·2020년도 기관평가 평가편람 확정 				〈공통〉	
2020년도 세부 평가설명회	2019.12월 전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검편람 설명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 질의·응답 				〈공통〉	
〈 기관별 추진 일정 〉								
	나노종합 기술원 (NNFC)	고등과학원 (KIAS)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UST)	국기과학기술 인력개발원 (KIRD)	기초과학연구 원 (IBS)	울산과학기술 원 (UNIST)		
기관운영계획서 초안 접수	'19.12.15	D+3개월	D+3개월	D+3개월	D+3개월	D+3개월	·기관별 기관운영계획서 초안 접수	
점검위원회 전략회의	'19.12월	D+4개월	D+4개월	D+4개월	D+4개월	D+4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검위원 위촉 ·기관평가 제도개편 방안 교육 ·점검방법 및 세부전략 논의 ·기관별 기관운영계획 발표 	
서면점검 실시	'19.12~ '20.1월 (2주)	D+4개월 (2주)	D+4개월 (2주)	D+4개월 (2주)	D+4개월 (2주)	D+4개월 (2주)	·위원별 서면검토 및 점검의견서(안) / 질의서(안) 작성	
현장 검토회의	'20.1월	D+4개월	D+4개월	D+4개월	D+4개월	D+4개월	·질의응답	
점검의견서 상위평가 제출	'20.1월 (20.1.15)	D+4개월 내외	D+4개월 내외	D+4개월 내외	D+4개월 내외	D+4개월 내외	4개월 내외	
기관운영계획서 1차 수정 실시	'20.1~2월 (3주 내외)	(3주 내외)	(3주 내외)	(3주 내외)	(3주 내외)	(3주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별 기관운영계획서 수정(1차) ·기관별 점검의견 반영내역 및 소명의견 작성 	3주 내외
점검의견서(안) 확정회의	'20.2월	D+5개월	D+5개월	D+5개월	D+5개월	D+5개월	·기관운영계획서 1차 수정분에 대한 반영내역 및 소명의견 검토	
점검의견서 확정 통보	'20.2월	D+5개월	D+5개월	D+5개월	D+5개월	D+5개월	·점검의견서 확정 통보	
기관운영계획서 이사회 심의 의결	-	-	-	-	-	-	·기관별 점검의견 반영 기관운영계획서 수정·보완	
기관운영계획서 최종본 제출	'20.3.15	D+6개월 내	D+6개월 내	D+6개월 내	D+6개월 내	D+6개월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운영계획서 최종본 제출 ·자체평가/상위평가 검토 내용 반영 	6개월 이내

※ 평가일정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신규 제도 적용)

□ 추진 개요

○ 세계적 연구기관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기관의 중장기 연구목표·전략**에 따라 3년* 또는 5년·6년 단위의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 3개 정부지원기관(연구회, 인력개발원, 일자리진흥원)은 기관장 임기 단위로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 기관은 '20.3월까지 연구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제출하여 자체·상위점검 후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20.6.)

	대상 기관명	확정 시기	평가 주기	최초 연구사업평가 시점
연구개발형	고등과학원(KIAS)	'20.6월 내	6년	'25.6월
	기초과학연구원(IBS)		5년	'24.6월
교육 및 인력 양성형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5년	'24.6월
	울산과학기술원(UNIST)		5년	'24.6월
지원형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0.10월 내*	3년	'22.1월*

* 정책·지원형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경우 신임 기관장 취임 일정에 따라 계획서 수립 및 향후 연구사업평가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 기관의 고유임무, **역할 책임(R&R)**에 대한 **중장기적 수행체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계획서 작성연도를 포함한 3·5·6년 단위의 구체적인 **연구사업 계획** 수립

○ 연구사업계획은 기관 R&R을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목표**와 내역 사업별 **전략목표**, 전략목표를 구체화하는 **성과목표**로 구성

○ 기관 R&R 및 중장기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출연금 내역사업** 및 **정책지정 사업**(연 50억 원 이상) 단위로 **전략목표** 제시하여 예산 구조와의 일치성 향상

- 원칙적으로 **내역사업 당 1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되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복수의 내역사업이 하나의 전략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허용하나,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복수의 전략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제한

- 일반적인 **수탁과제**는 별도로 전략목표를 수립하지 않고 출연금 내역사업 및 정책지정 사업의 전략목표 아래 성과목표로 포함
 - ※ 전략목표별 관련 인력 및 예산, 사업(과제), 인력 투입계획을 명기하고 미 포함되는 사업(과제) 및 조작예산은 제외 사유와 함께 별도 제시
 - ※ ETRI, ADD 등 수탁과제가 다수인 기관은 자체평가기관과 협의하여 전략목표 수 등 조정 가능
 - ※ 전략목표 배점의 총합이 100점이 되도록 설정하고 전략목표별 하위 성과목표의 배점을 배분(배점 설정 근거 제시)
-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연구개발 추진내용으로 R&R에 부합하는 순으로 전략목표별 **3개 이내** 제시
 - ※ 성과목표와 기관 R&R 간 연계성을 대조표로 제시
- 성과목표별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별 예상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 한국나노기술원 등 기관 출연금이 없는 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작성 가능
 - ※ 필요 시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작성 가능(추후 달성도 평가 미실시)
 - ※ 추진계획이나 예상 성과 등을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 가능
- 성과목표를 **5대 임무 유형*** 중 1가지와 일치시키고 **세계 최고 연구집단과의 수준 비교** 시 임무 유형에 따라 비교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
 - ※ 공공·인프라형, 산업화형은 성과활용·확산 추진체계·계획 필수 명시(타 임무유형은 필요 시 작성)

임무 유형	유형별 주요 고려사항	비교 대상
기초·미래선도형	창조적 지식창출 또는 미래 신산업창출을 위한 연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공공·인프라형	사회현안 해결 및 국방목적 등 국책사업 또는 연구지원 인프라 분야에 대한 연구	사회 수요 및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
산업화형 (실용화형)	기술사업화 및 중소기업지원 등 작간접적으로 산업육성을 목표로 하는 연구	국내외 민간 수요 및 기술수준
연구·교육형	인력양성, 전문 교육 훈련 등 이공계 관련 우수 인적자원 육성에 관련된 연구 및 활동	정부 및 국내외 연구기관 수요
정책연구·지원형	국가정책연구 및 시책지원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13.10.18., 국과심)을 통해 제시된 기관별 고유 임무유형 (① 기초·미래선도형, ② 공공·인프라형, ③ 실용화형, ④ 연구·교육형, ⑤ 정책연구·지원형)

- 성과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도전성에 대한 근거 제시
 - ※ 연구기관은 기존 제도에 따른 매우 도전적 목표 수준으로 모든 성과목표를 혁신적이고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자체평가위원회는 계획서 점검 시 성과목표의 도전성 점검
 - ※ 정책연구·지원형 성과목표는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 가능

- 향후 연구사업평가 시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는 폐지하고 R&D 전주기에 걸쳐 **정성평가 실시**(연구수행의 적절성, 연구성과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영향력)
 - * 평가 시 기관에서 창출한 성과의 연구 생태계 기여도, 경제·사회적 기여도 등을 조사·분석한 Case Study 보고서(대상기간 10년) 제출

□ **점검 방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는 연구사업계획서 초안에 대한 점검 실시 - **역할·책임 부합성, 기관 발전 및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직전 평가결과 반영여부** 등을 검토
- **상위평가**(과학기술혁신본부)는 자체점검의 계획서 작성지침 준수 여부 점검 - 상위평가는 자체점검결과 초안 접수 후 별도 일정으로 검토를 추진하며 검토의견을 과기정통부 점검위원회에 통보
- 연구사업계획서 초안 점검의견에 대한 연구기관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명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점검절차 개선
 - 기관은 위원회의 점검의견 초안을 반영한 연구사업계획서 수정본과 점검의견 초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의견을 함께 제출
 - 점검위원회는 점검의견 초안 반영 여부와 함께 소명의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점검의견을 확정하고 이를 기관에 제공
- **연구기관**은 점검의견 확정본을 반영하여 연구사업계획서를 보완한 이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 (최종본 과학기술혁신본부 제출)

〈 연구사업계획서 점검 절차 개선(안) 〉

(: 기관수행, : 위원회 수행)

구분	'20.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현재(Before)	계획서 초안 제출			계획서 초안 점검	계획서 수정	수정본 점검	계획서 보완·확정
개선(After)	계획서 초안 제출			계획서 초안 점검	계획서 수정	수정본 점검 소명 검토	계획서 보완·확정

* 계획서 수정본의 초안 점검의견 반영결과 및 점검의견에 대한 소명 검토

- 現 임무중심형 종합평가가 종료되는 기관부터 신규 변경제도 순차 적용
 - 기관운영계획서 점검 일정과 중복될 경우 기관운영계획서·연구사업 계획서 점검 병행 실시

〈 연구사업계획서 추진 일정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가대상기관	연구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보안 확정
부처				계획서 자체점검		
혁신본부					상위 점검	

〈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

- 기관 사업수행의 투명성과 통일성을 위해 기관 출연금의 내역사업 단위로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예산 구조와의 일치성 향상
 - 법령 및 정관상의 기관 고유임무에 대해 중장기적 수행체계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수립
 - 수탁 과제는 관련성 있는 전략목표 하위 성과목표에 포함 가능하나, 정책지정 사업은 별도 전략목표를 수립
- 전략목표(연구사업)별 3개 이내로 평가시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성과목표를 제시하여 구체적 계획 수립
- 성과목표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성과목표별로 연계된 인력·예산·과제를 명시
- 성과목표별로 최종 목표와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별 예상성과, 분야별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의 수준비교 등을 작성 (※ 목표치 설정은 불필요하나, 정량지표 제시 가능)

점검 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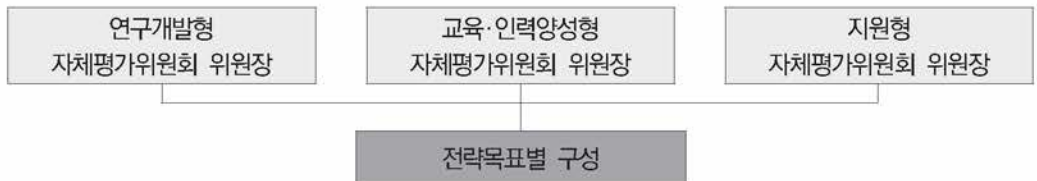
구분	추진 일정	주요 내용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방안 협의	'19.12월	•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사전 실무자 대상 세부 작성 방안 교육 및 협의
점검위원회 구성	'19.12월	• 점검위원회 구성
연구사업계획서 가이드라인 마련	'19.12월	• 기관현황자료집, 점검의견서 양식
연구사업계획서 초안 접수	'20.3월 내	•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초안 접수
전략회의 개최	'20.4월	• (위원회) 전략목표별 점검위원 위촉 • (위원회) 점검방법 및 세부전략 논의 • (기관) 연구사업계획 발표
서면평가 실시	'20.4월 (2주)	• (위원회) 점검위원회 서면검토 실시 • (위원회) 점검의견서(안) 및 질의서(안) 작성
서면질의	'20.4월	• (기관) 점검위원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 작성
검토회의·현장평가	'20.4월	• (위원회) 소위원회별 점검의견 검토 • (기관) 기관 답변 발표 및 질의응답
점검의견서 상위평가 제출	'20.4월 내외	• 점검의견서(안)에 대한 상위평가 점검
점검의견서 기관 통보	'20.4월 내외	• 점검의견서(안) 대상기관 통보
연구사업계획서 1차 수정	-	• (기관) 점검의견서(안)을 반영한 계획서 수정(1차) • (기관) 점검의견서(안) 반영결과 및 소명의견 제출
점검의견 확정회의	'20.5월	• (위원회) 연구사업계획서 수정본 재점검 • (위원회) 점검의견서(안)에 대한 소명의견 검토 • (위원회) 점검의견서(안) 검토 및 확정
점검의견서 확정 통보	'20.5월	• 연구사업계획서 수정본에 대한 점검의견 확정 송부
연구사업계획서 이사회 심의·의결	'20.6월	• (기관) 점검의견서 반영 • (기관) 연구사업계획서 재수정·보완
연구사업계획서 최종본 제출	'20.6월 내	• (기관) 연구사업계획서 최종본 및 자체·상위평가 검토내용 반영내역 제출

□ 연구사업계획서 점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포함 **총 10인 내외**로 구성

-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해 과기정통부 상설 자체평가위원회 분야별 평가위원 중 연구사업계획서 점검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 ※ 점검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기관별 연구 분야 및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
- 점검위원은 기관 R&R 부합성, 기관 발전·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목표의 도전성, 직전 평가결과 반영여부 등을 검토하며 전략목표별 2인의 점검위원 배정(장·정)
- 평가의 전문성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계획서 수립부터 기관운영평가까지 전주기에 걸쳐 동일 평가위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책임평가제)
- 필요 시 동일한 점검위원회가 복수의 기관에 대한 점검 병행 가능
- 간사 기관은 자체점검의견 및 소명의견에 대해 타 기관 혹은 이전 평가결과를 토대로 쟁점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점검위원회는 이를 검토·조정

《 2020년도 연구사업계획서 점검위원회 구성(안) 》



대상기관	점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과학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기초과학연구원 ◦ 울산과학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위원장(1인) ◦ 간사위원(1인) ◦ 점검위원(8인 내외) ◦ 간사(전문기관) ※ 간사위원은 점검위원 병행
5개 기관	10인 내외(전문기관 제외)

※ 예산 및 환경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구사업계획서 점검 세부 일정

활동	일정					주요내용	비고
추진계획 확정·통보	2019.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평가 추진계획 기관 통보 세부 제도개선 의견 수렴 	〈공통〉
제도개선 활동 및 2020년도 평가편람 개발	2019.11월 ~ 2019.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벤치마킹 추진 2020년도 기관평가 평가편람 확정 	〈공통〉
2020년도 세부 추진계획 설명회	2019.12월 전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검편람 설명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 질의·응답 	〈공통〉
〈 기관별 추진 일정 〉							
	고등과학원 (KIAS)	과학기술연합 대학대학교 (UST)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 (KIRD)*	기초과학연구원 (IBS)	울산과학기술원 (UNIST)		
연구사업계획서 초안 접수	'20.3월	'20.3월	'20.7월	'20.3월	'20.3월	기관별 연구사업계획서 초안 접수	〈공통〉
점검위원회 전략회의	'20.4월	'20.4월	'20.8월	'20.4월	'20.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검위원 위촉 기관평가 제도개편 방안 교육 점검방법 및 세부전략 논의 기관별 연구사업계획 발표 	
서면점검 실시	'20.4월 (2주)	'20.4월 (2주)	'20.8월 (2주)	'20.4월 (2주)	'20.4월 (2주)	위원회 서면검토 및 점검의견서(안) / 질의서(안) 작성	
현장 검토회의	'20.4월	'20.4월	'20.8월	'20.4월	'20.4월	질의응답	
점검의견서 상위평가 제출	'20.4월	'20.4월	'20.8월	'20.4월	'20.4월		〈공통〉
연구사업계획서 1차 수정 실시	'20.4-5월	'20.4-5월	'20.8-9월	'20.4-5월	'20.4-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별 연구사업계획서 수정 (1차) 기관별 점검의견 반영내역 및 소명의견 작성 	3주 내외
점검의견서(안) 확정회의	'20.5월	'20.5월	'20.9월	'20.5월	'20.5월	연구사업계획서 1차 수정분에 대한 반영결과 및 소명의견 검토	
점검의견서 확정 통보	'20.5월	'20.5월	'20.9월	'20.5월	'20.5월	점검의견서 확정 통보	
기관운영계획서 이사회 심의·의결	-	-	-	-	-	기관별 점검의견 반영 연구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연구사업계획서 최종본 제출	'20.6월	'20.6월	'20.10월	'20.6월	'20.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사업계획서 최종본 제출 자체평가/상위평가 검토 내용 반영 	〈공통〉

※ 평가일정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신임 기관장 취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정부지원형 기관)

3 중간컨설팅 (신규 제도 적용)

□ 추진 개요

- 연구기관의 중간성과 점검 및 계획서 추진 방향 조정을 위한 중간컨설팅 실시
 - 기관운영평가 실시 최소 6개월 전 중간컨설팅 완료

	대상 기관명	기관장	임 기
연구개발형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	김미숙	'18.04.27. ~ '21.04.26.
	한국뇌연구원(KBRI)	서판길	'18.12.17. ~ '21.12.16.
지원형	한국나노기술원(KANC)	이윤덕	'18.04.23. ~ '21.04.2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김상선	'18.08.03. ~ '21.08.02.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COMPA)	배정희	'19.01.21. ~ '22.01.21.

□ 중간컨설팅 실시 결정

-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컨설팅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부처 및 과기정통부(과기혁신본부)는 이에 대한 사후 적정 여부 확인
 - 단, 과기정통부는 연구기관의 자율컨설팅 실시 시 '중간컨설팅 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 시 컨설팅 중간점검 실시 가능
- 과기정통부(부처)의 평가주기별 이행내역 현황 검토, 연구기관의 자체적 계획서 성과 점검 및 연구환경 변화 등에 따라 컨설팅 실시 여부 결정
 - 중간컨설팅 시 세부 요구사항을 포함한 '중간컨설팅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소관 부처 및 과기혁신본부에 제출
 - 중간컨설팅 수행 시 각 연구기관은 제시된 성립요건의 필수 준수 이행

[컨설팅 성립요건]

- 연구기관은 컨설팅 실시 시기 및 실시 범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연구 부문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함. 또한 컨설팅 실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래 조건을 준수해야 함
 - (최소 범위) 컨설팅 실시 시 전체 배점의 10%(10점) 이상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설정
 - (컨설팅 기간) 컨설팅 대상 사업의 심층검토를 위해 최소 4주 이상 컨설팅 기간 설정
 - ※ 컨설팅은 현장점검을 1회 이상 실시 원칙
 - (컨설팅 시기) 연구기관이 실시하는 컨설팅은 기관운영평가 실시 최소 6개월 전 완료되어야 함
 - ※ 기관별로 '컨설팅 성립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회 이상 컨설팅 실시 가능

□ 컨설팅 대상 선정 방안

- 연구기관의 핵심사업 및 예산·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성과목표 또는 중간성과 점검 결과 목표 대비 성과 달성이 미흡한 경우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 명확한 외부 환경 변화 없이 당초 설정한 목표보다 추진성과가 매우 미흡하여 원인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 ※ 정량평가 폐지에 따라 추진성과 실적이 미흡하여도 도전성·혁신성 부분에서 정성적 평가가 가능하므로 목표에 따라 간사기관과 협의 후 컨설팅 진행
 -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컨설팅을 통한 성과점검 및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성과목표 수정 가능)
- 기관 R&R 재정립 시 성과목표와 R&R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계획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필수 실시
 - ※ R&R로 인한 중간컨설팅 대상 선정 사유는 기존의 "정부정책 변화"로 기재

[외부환경 변화]

- ① 법령 개정, ② 연구환경의 급격한 변화(정부 중장기 계획 신규 수립 포함), ③ 공공기관 정책의 변화(경영부문) 등

□ 컨설팅 결과 확정

- 기관운영계획서의 수정 발생 시 원칙적으로 소관 이사회를 통해 확정하되 주요 내용의 수정·변경이 아닌 세부 내용의 변경일 경우 ‘기관운영계획서 점검단’의 확인·점검을 통해 확정 가능
 - 기관의 주요 연구방향 변경, 성과목표의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소관 이사회를 통해 확정
- 연구기관이 실시한 컨설팅실시 결과보고서는 ‘성과평가 정보공개서비스 (www.ntis.go.kr)’ 등록 및 부처·연구회 및 과기정통부에 제출
 - ※ 주요 양식은 향후 ‘성과평가 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해 안내 예정
 - 컨설팅 의견에 대한 수용·불수용 등 처리결과와 사유 등을 포함한 ‘컨설팅실시 결과보고서’는 향후 기관운영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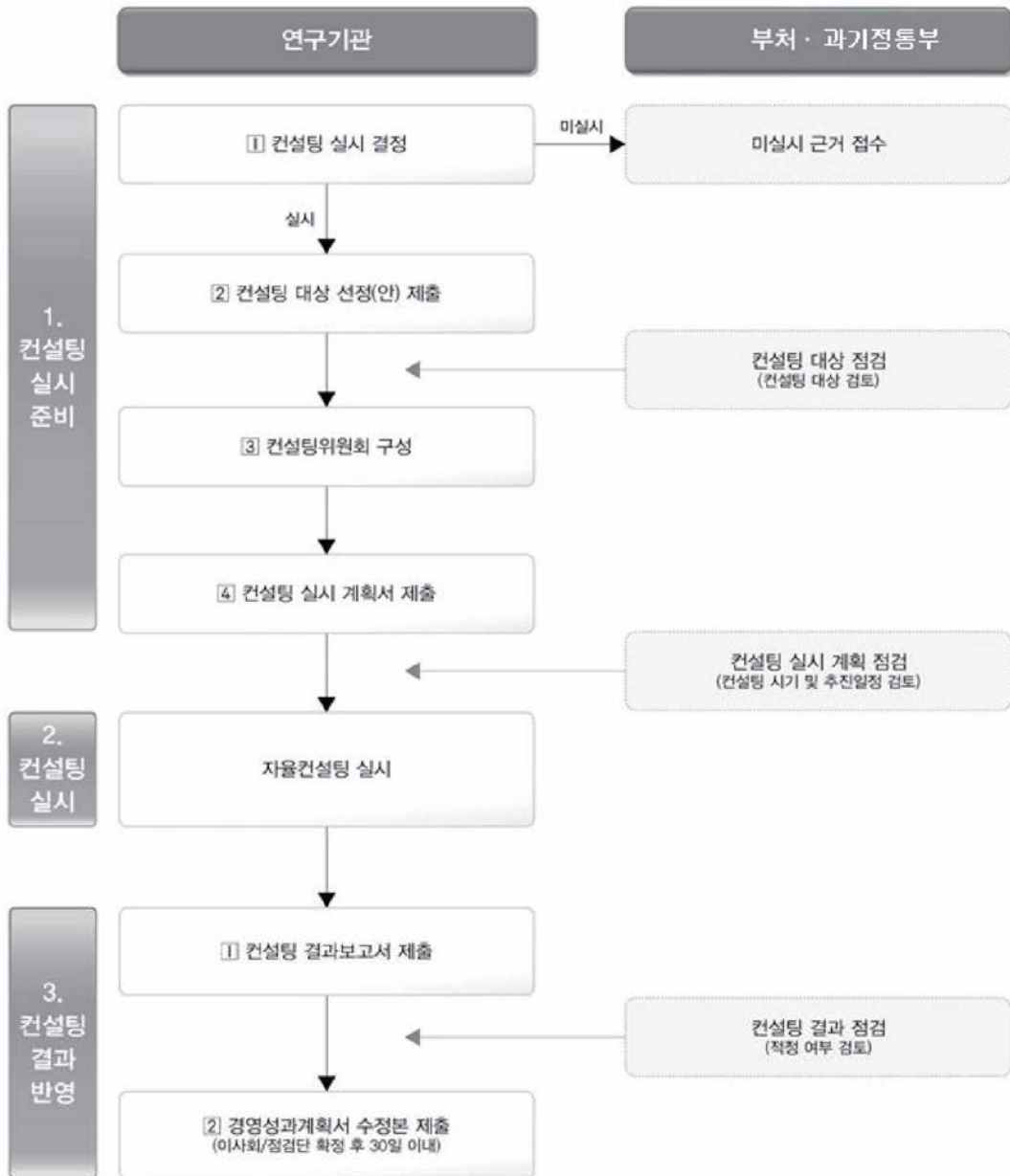
□ 컨설팅위원회 구성

- 연구기관은 컨설팅단 구성 기준을 준수하여 전문성 있는 컨설팅단을 구성·운영

[컨설팅단 구성 기준]

- 2인 이상의 컨설팅위원을 구성하여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 컨설팅위원 제외 기준
 - ① 해당 연구기관이 발주한 사업(과제) 중 컨설팅 대상 사업(과제)의 책임자
 - ② 국가R&D사업에 대해 현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③ 그 밖에 컨설팅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할 염려가 있는 자

□ 중간컨설팅 추진 절차



컨설팅 대상 선정(안) 작성

1 작성방안

- 컨설팅 대상 성과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선정 사유 기술
 - ※ 컨설팅 대상 선정(안) 양식 [붙임 1] 참고 (분량 제한 없음)
 - ※ 제출 방법: 메일 제출

2 작성 항목 및 내용

- 컨설팅 대상 제안
 - 연구기관의 기관운영의 전 영역·성과목표를 배점과 함께 제시하고 컨설팅 대상 성과목표 표기
 - ※ 컨설팅 대상의 배점 합계 및 백분을 제시

기관 운영	영역	부문 내 배점	전체 배점	컨설팅 대상 여부
	성과목표명			
	성과목표명			
	기관운영 합계 (점)	100	30	
	총 계 (점)	-	100	/100 (%)2

- 컨설팅 대상 선정 사유
 - 컨설팅 대상 영역·성과목표(추진계획)의 추진실적(달성도 포함) 및 선정사유 제시

영역명					
성과목표명	달성도	○○%1)	배점	00점 / 30점2)	
추진실적	○ 컨설팅 대상 성과목표 추진실적 상술				
	-	-			
	1. ○○○3)				
선정사유	○ 컨설팅 대상 성과목표 선정사유 상술				
	-	-			

□ 기관 자율 중간컨설팅위원회 구성

- 기관 자율 중간컨설팅을 실시 할 경우 해당 기관은 컨설팅위원회 자격 기준 및 제외 기준 등을 준수하여 전문성 있는 컨설팅위원회를 구성·운영
- 객관성 확보를 위해 영역(성과목표)별로 최소 2인 이상이 병행하여 점검하도록 컨설팅위원 선임

《 2020년도 기관 자율 컨설팅평가위원회 구성(안) 예시 》



분과	중간컨설팅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자율 중간컨설팅 위원회 (4) - 공통영역 - 자율영역 - 현안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컨설팅 위원장 (1) • 간사위원 (1) • 컨설팅위원 (2) ※ 간사위원은 컨설팅위원 중 호선
1개 위원회	4인

※ 예산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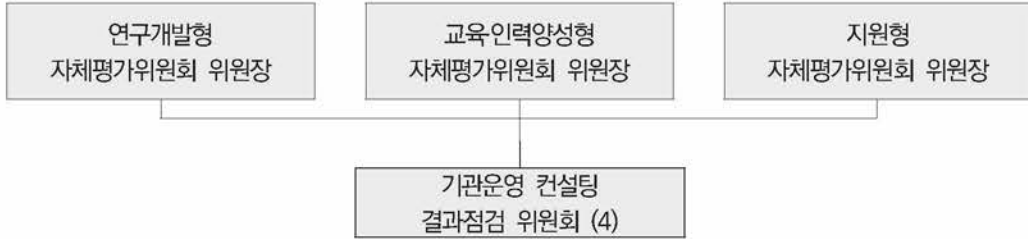
《 중간컨설팅 위원회 구성 과정 》

전문가 후보	2배수	위촉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공모 ◦ 관계 전문가 DB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과 성과목표 부합성을 기준으로 위촉 우선순위 부여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심의(NTIS 등록 기준) ◦ 서면심의(제출 서류 기준)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심의 ◦ 평가위원 선임

□ 컨설팅 결과 점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포함 총 4인 내외로 구성

《 2020년도 컨설팅 결과 점검위원회 구성(안) 》



대상기관	점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원자력의학원 ◦ 한국나노기술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뇌연구원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위원장 (1) ◦ 검토위원 (2) ◦ 간사(전문기관) (1)
5개 기관	4인 내외

※ 예산 및 환경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020년도의 경우 기관운영평가만 실시 예정

□ 중간컨설팅 세부 일정

활동	일정					주요내용	비고
〈 기관별 추진 일정 〉							
	KIRAM S	KANC	KISTE P	KBRI	COMP A		
컨설팅 대상 선정(안) 제출						◦ 컨설팅 대상 선정	
컨설팅 대상 점검*						◦ 컨설팅 대상 검토 ◦ 컨설팅 대상 기관 이행내역 검토	
컨설팅 실시 계획서 제출						◦ 컨설팅 위원회 구성 ◦ 컨설팅 계획 수립	
전략회의						◦ 컨설팅위원 위촉 ◦ 컨설팅방안 및 세부전략 논의	◦ 간사위원 호선 및 전담자표 설정 등
서면검토						◦ 위임별 서면검토 실시 ◦ 컨설팅 의견 초안 및 질의서 작성	
현장방문						◦ 기관 방문 (기관당 1일) ◦ 컨설팅 의견(안) 논의 및 종합검토	
컨설팅(안) 작성						◦ 컨설팅보고서(안) 보완작성	◦ 컨설팅보고서 초안
확정회의	'19년 12월	'19년 12월	'20년 4월	'20년 8월	'20년 8월	◦ 기관별 소명 의견 반영 ◦ 중간컨설팅 보고서 확정	◦ 중간컨설팅 보고서
컨설팅 결과 초안 제출*	'20년 1월	'20년 1월	'20년 5월	'20년 9월	'20년 9월	◦ 컨설팅 실시 결과보고서 초안 제출 (컨설팅 종료 후 2주 이내)	
컨설팅결과 점검 수검*	'20년 1월 (2주)	'20년 1월 (2주)	'20년 5월 (2주)	'20년 9월 (2주)	'20년 9월 (2주)	◦ 부처 서면검토	
컨설팅 결과 최종 제출*	'20년 2월	'20년 2월	'20년 6월	'20년 10월	'20년 10월	◦ 컨설팅 실시 결과보고서 최종본 제출	◦ 컨설팅 실시 결과보고서 (최종)
기관운영계획서 수정 제출	'20년 2월	'20년 2월	'20년 6월	'20년 10월	'20년 10월	◦ 기관운영계획서 수정 ◦ 기관별 이사회 심의·의결 및 계획서 수정 제출(결과 제출 후 30일 이내)	◦ 대상기관 → 정부

※ 평가일정은 예시이며 기관 자율로 결정

*부처·과기정통부 실시

4 기관운영평가 (신규 제도 적용)

□ 추진 개요

-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 취임 시 수립한 **기관운영계획서 상 달성 성과의 우수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기관장 임기 만료 전 평가결과 확정

	대상 기관명	기관장	임 기
연구개발형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	김미숙	'18.04.27. ~ '21.04.26.
지원형	한국나노기술원(KANC)	이윤덕	'18.04.23. ~ '21.04.22.

□ 실시 일정

- 기관장 임기 만료일을 고려하여 연 3차*로 나누어 실시하고, 차수별로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실시

* 1차(1월~4월), 2차(5월~8월), 3차(9월~12월)

《 연간 평가 일정 (안)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관운영평가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자체		상위		자체		상위		자체		상위	

- 기관장이 중도 사퇴할 경우 평가방안

사퇴 시기	평가실시 방안 및 시기	평가결과 활용
취임 ~ 취임 후 1년 6개월	○ 평가 없음	○ 이전 평가 등급 활용 - 단, 기관장 성과연봉은 미지급
취임 후 1년 6개월 ~ 임기만료	○ 기관운영평가 실시 (사퇴 후 가장 빠른 차수의 평가 일정 적용)	○ 기관운영평가결과 활용 내용 준용

※ 정부지원형 3개 기관(3년주기)의 경우 기관장 중도 사퇴 시 연구사업평가 함께 실시

□ 평가 방안

- 공통영역에 대한 정량평가 및 자율영역, 현안대응영역 성과의 질적 우수성 등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 실시하여 영역별 점수 산출
 - (공통영역) 정량평가 100% + 전문가 정성평가 0%
 - (자율영역·현안대응영역) 정량평가 0% + 전문가 정성평가 100%

공통영역 (30점) 외부평가결과 100%	자율영역 (50점) 전문가 정성평가 100%	현안대응영역(20점) 전문가 정성평가 100%
------------------------------	--------------------------------	---------------------------------

- 공통영역 30점, 자율영역 50점, 현안대응영역 20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100점 만점)를 산출하고 5등급(매우우수~매우미흡)으로 구분
 - * 계획서 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영역별 배점이 사전 조정된 경우 해당 배점에 따라 산출

(가) 공통영역

- 기관운영계획서에 제시된 외부평가항목에 대한 항목별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부여
 - * 점수 산출에 대한 근거를 제시

(나) 자율영역

- 기관운영계획서에 제시한 각 성과목표별 과정의 적절성, 성과의 질적 우수성, R&R 이행 기여도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등급 부여

(다) 현안대응영역

- 정책·기술환경변화 등에 대한 대응노력·성과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등급 부여
 - 현안대응영역은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이행 노력 성과, 예측 어려운 정책 및 기술 환경 변화 등에 대한 기관의 대처 내용(성과) 등에 대하여 정성평가 100% 실시
 - ※ 정부의 긴급한 정책 소요에 대한 대응실적, 출연연 정책 이행실적, 감사지적사항 관련 평가 실시

□ 평가 대상

○ 기관장 취임 이후부터 자체평가 직전 월까지 실적

※ 기관장 임기 종료까지 발생이 예상되는 성과의 경우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반영 여부 결정

○ 당초 설정된 목표 이외의 **새로운 성과*도 평가에 포함**

* 외부 환경의 변화,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성과는 관련이 높은 성과목표에 연구기관이 제시하며, 해당 자율영역 성과목표 평가 시 반영

□ 세부 평가 방안

(가) 공통영역

○ 개별 평가 항목별로 환산 백분율을 계산하고 이를 종합하여 점수화 실시

※ 평가 항목 성격에 따라 '가점형', '감점형', '등급형'과 '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산출

※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유형 최종 결정

〈 평가점수 유형별 산정 방식 〉

평가점수 유형	환산 백분율	비고
가점형	$(X-M) / (N-M)$	X: 평가 점수 N: 만점 M: 기본 점수 (해당 항목의 하한선)
감점형	$(N-X) / N$	X: 평가 점수 N: 최대 감점값
등급형	$(N-X) / (N-1)$	X: 평가 등급 N: 전체 등급수
복합형	개별 유형 산식 적용	가점형, 감점형, 등급형 중 두 가지 이상 존재

- 평가 기간 동안 한 번 이상의 평가 기록이 존재할 경우, 환산 백분율의 연도별 평균값을 통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정

※ 평가 기간 동안 평가 기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공통영역 점수 산정시 해당 항목을 제외하여 총점을 계산한 후 30점 만점으로 환산

《 공통영역 점수 산출 예시 》

항목 (배점)	구분	'20	'21	'22	평균 환산 백분율*	항목별 점수*
가점형 (6점)	점수	76	84.5	91.5	$(76+84.5+91.5)/3 = 84\%$	$6 \times 0.84 = 5.04$
	만점/기본점수	100/0	100/0	100/0		
	계산식	$76/100=76\%$	$84.5/100=84.5\%$	$91.5/100=91.5\%$		
감점형 (6점)	점수	-30	-12.5	-24.5	$(70+87.5+75.5)/3 = 77.67\%$	$6 \times 0.7767 = 4.66$
	최대 감점값	-100	-100	-100		
	계산식	$(-100+30)/(-100) = 70\%$	$(-100+12.5)/(-100) = 87.5\%$	$(-100+24.5)/(-100) = 75.5\%$		
등급형 (6점)	등급	A	A	S	$(66.667+66.667+100)/3 = 77.78\%$	$6 \times 0.7778 = 4.67$
	등급체계	S/A/B/C (4등급)	S/A/B/C (4등급)	S/A/B/C (4등급)		
	계산식	$(4-2)/(4-1)=66.667\%$	$(4-2)/(4-1)=66.667\%$	$(4-1)/(4-1)=100\%$		
복합형 (6점)	복합	양호	80	평가 없음	$(100+50)/2 = 75\%$	$6 \times 0.75 = 4.50$
	점수/등급	양호/보통/미흡(3등급)	100/60			
	계산식	$(3-1)/(3-1)=100\%$	$(80-60)/(100-60)=50\%$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자율영역

- 전문가 정성평가는 성과목표별로 '성과의 질적 우수성', '달성과정의 적절성', 'R&R 이행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구분	정성평가 시 고려 사항 (예시)
질적 우수성	기관운영의 효율성·효과성, 기관의 개선노력, 성과 창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달성과정의 적절성	성과목표 달성과정이 계획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R&R 이행 달성도	성과목표가 기관의 역할 및 책임 이행에 달성 및 기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성과목표의 특성 등을 고려, 상기 항목 중 선택 또는 이외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성과목표에 따라 1개 내지는 1~2개의 항목만으로 평가 가능

- 성과목표(추진계획)별로 5단계 평가등급(S~D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 부여된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정성평가 시 고려 항목]

-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토대로 기관운영계획서 점검단 의견 반영 여부, 중간컨설팅 반영 결과, 외부 감사 및 평가결과,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성과목표 달성/미달성, 기관장 임기 종료까지의 예상 연구성과, 정부의 정책 등에 의한 새로운 성과, 초과달성 성과, 중간컨설팅 평가 결과 이행, 각 기관별 정책(연구)수요자 및 육성전담부서심층 인터뷰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등급 부여* 시행

* 자체평가위원회는 기관특성 및 성과목표에 따라 각 항목의 비중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음

(다) 현안대응영역

- 정책·기술환경변화 등에 대한 대응노력·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단계 평가등급(S~D등급)을 부여 후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평가항목은 기관운영평가 전 자체평가기관과 연구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 (예 : 정부의 긴급한 정책 소요에 대한 대응실적, 출연연 정책 이행실적, 감사지적사항 등)

《 자율영역·현안대응영역 정성평가 등급별 가중치 》

등급	S	A	B	C	D
등급별 가중치	1.0	0.85	0.70	0.55	0.40

연구성과 인정 기준·범위

- 기관이 제시한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를 기준으로 성립 요건, 차감 요인에 따라 인정 목표 달성도 산정하고 가중 합산하여 성과목표의 인정 목표 달성도 산출
 - ※ 성립 요건 : 평가대상기간 내 성과, 평가지표별 목표의 내용에 부합하는 성과, 성과계획서에 명시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성과인지를 검토 후 부적절 시 달성도에서 차감
 - * 기관 제시 달성도 100% 초과 시 100%까지만 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성과”***를 성과로 인정
 - *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
 -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하되, 원칙적으로 오프라인/온라인에 게재된 자료만 인정
 - * 질적 지표 활용, 저자 역할(제1저자, 제2저자, 교신저자) 등
 - 특허: 국내외 특허등록 기관에 등록된 특허
 - 기술료: 계약체결 후 기관의 수입으로 입금된 기술료

- 성과목표 간에는 **중복성과를 불인정**하고, 타 기관과의 **공동성과**는 기관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반영(불가피할 경우 정성평가에서 고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3항에 따른 연구성과*(민간수탁 사업으로부터 창출된 성과 제외)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이나 **기탁된 성과만 인정**
 - *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연구시설·장비, 화합물, 생명자원, 신물질 등 9대 성과물

- **융합연구**에서 창출된 성과는 **예산 투입비율**에 따른 계획과 실적을 산출하여 사용

- 연구기관은 ‘NTIS 사업및기관평가(www.ntis.go.kr)’에 **전년도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입력하고, 부처·연구회는 ‘성과평가정보공개서비스’에 입력된 성과지표별 실적을 매년 확인·점검하며, 필요 시 관련 자료 요청
 - ※ 성과평가정보공개서비스에 자료 미입력 시 해당 지표는 최하 점수 부여
 - ※ 2차, 3차 종합평가 대상기관은 전년도 실적을 종합평가 실적 제출일까지 입력 가능

□ 기관운영평가 산출 시 가·감점 기준

○ 가점 항목

- 적용 대상 기간 : 기관장 취임 이후 ~ 기관운영평가 시점
- 가점 한도 : 최대 2점

대상항목	가점 기준
(비연구부문) 대통령 표창(상) 이상 포상 (기관)	국무총리: 0.1점/건, 대통령, 포장, 훈장: 0.2점/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0.1점/건 (단, 11건 이상부터 0.05점/건 부여)

* 기관장 임기내 창출된 성과로 선정된 건에 대하여 가점 부여

○ 감점 항목

- 건전한 평가문화 저해*: 3점 (최대)

- *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저하, 평가기간 중 평가위원회/부처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 등 공정한 평가 저해, 평가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하는 허위자료, 과장자료, 실적 미 부합 등 불성실한 자료 및 무분별하고 과도한 소명자료 제출
 - * 평가위원회와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거나 평가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
 - * 불성실 자료 제출과 과도한 소명자료 제출, 보안 서약서 위반 등을 구분하여 최대 3점내에서 합산하여 감점 처리
- ※ (예시) 연구기관 성과보고서 대비 성과 불인정 비율에 따른 감점
- 불인정률 5% 이상 ~ 10% 미만 : 0.3점, 10% 이상 ~ 25% 미만: 1.0점, 25% 이상 ~ 40% 이하: 1.5점, 40% 이상: 3.0점

□ 기관운영평가 점수 산출

- 세부 영역별 점수 합산을 통하여 부문별 합산점수를 산출하고, 가중치를 반영하여 5단계 최종등급(매우 우수 ~ 매우 미흡) 부여

《 영역별 비중 (예시) 》

부문	평가 방식	부문별 점수
공동영역	정량 100%	30점
자율영역	정성 100%	50점
현안대응영역	정성 100%	20점

《 종합점수에 따른 최종 등급 부여 방안 》

기관평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종합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 평가결과 활용

① (기관장 성과연봉) 평가 최종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기관운영평가 때까지 기관 자율적으로 적정 성과연봉을 결정하고, 기관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정산 실시

※ 중도사퇴로 인한 평가 미시행 시, 기관운영성과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기관장 성과연봉 미지급 원칙

기관장 성과연봉 지급 방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본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율	최대 39%	최대 33%	최대 27%	최대 21%	0

* 기본연봉 :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

② (능률성과급) 결산잉여금에 대한 능률성과급*은 기관운영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률 차등 적용

* 기관운영평가 실시까지 직전 평가 등급으로 지급률 적용

기관평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능률성과급 지급률 (%)	50	47.5	45	42.5	40

③ (임무 및 기능 조정) 최하등급을 받거나 기관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조직(센터, 부서 등)은 해당 기능 조정

* 기관 고유임무, 임무체계 또는 자율지표 등에 반영되지 않거나 성과가 미흡한 조직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

④ (예산 연계) 기관운영평가에 따라 평가결과 확정 이후 기관운영 계획에 포함된 주요사업비, 운영비 등의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

※ 차년도 예산배분 시 성과가 우수하거나 미흡한 성과목표와 연계되는 주요사업비 조정

⑤ (우수성과 확산) 우수성과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은 연구기관·공로자는 정부포상(기관, 개인) 추천

⑥ (계획서 연계) 기관운영평가의 평가결과를 연계·활용하여 차기 기관운영계획서를 수립하고 기관 미래발전 방향 도모

※ 계획서 수립 시 평가결과의 이행내역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기관 성과 점검 및 계획 수립에 대한 자율성·책임성 부여

⑦ (기타) 미흡 기관 컨설팅 등 연구 현장에 밀접한 평가 결과 환류 정책 마련

□ 기관별 기관운영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위원장 포함 총 9인 내외로 구성

- 유형별 평가위원장은 각 기관의 연구분야 및 평가경험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기관운영평가위원회를 선정하며 필요 시 기관 특성 반영을 위해 위원 충원 가능
- 기관별 직전 점검·평가위원을 중심으로 기관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 및 기관이해도를 바탕으로 컨설팅·자문 기능 강화
- 평가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의견 실명제 실시

《 2020년도 기관운영평가위원회 구성(안) 》



※ 예산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관운영평가 세부 일정

활동	일정		주요내용	비고
추진계획 확정·통보	2019.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평가 추진계획 기관 통보 세부 제도개선 의견 수렴 	〈공통〉
제도개선 활동 및 '20년도 평가편람 개발	2019.10-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벤치마킹 추진 2020년도 기관평가 평가편람 확정 	〈공통〉
2020년도 세부 추진계획 설명회	2019.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편람 설명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 질의·응답 	〈공통〉
〈 차수별 추진 일정 〉				
	〈3차〉	〈3차〉		
	KIRAMS	KANC		
평가위원회 구성	2020. 8월	2020.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평가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확정 	
평가자료 접수	2020. 8월 말	2020. 8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운영실적보고서 접수 	
전략회의 개최	9월 중순	9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위원 위촉 평가방법 및 세부전략 논의 실적 발표 및 질의 응답 (기관 내부 정책 수요 포함) 	
서면평가	9월 중순부터 2주	9월 중순부터 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별 서면검토 실시 평가의견 초안 및 질의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의견 초안 서면질의서
평가의견 검토회의	10월 초	10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현장평가	10월 중순	10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장 인터뷰 정책(연구)수요자 인터뷰 실적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결과(안) 접수	10월 중순	10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별 평가결과(안)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별 평가결과(안)
소명의견 수렴	2주	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기관 소명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명의견서
종합분석 회의	11월 초	11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분석 방안 논의 	
평가결과 확정회의	11월 중순	11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별 소명사항 반영, 평가의견 수정·보완 평가결과 도출 및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평가 결과
기관평가결과 제출	11월 말	11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등급 및 평가결과 정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서 제출
상위평가 수검	12월 중	12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등급 확정 	

※ 평가일정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5 |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 추진 개요

-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 취임 시 수립한 연구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도와 전문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질적 성과 중심 평가 실시

- 기관장 임기 만료 전에 평가결과 확정

대상 기관명		기관장	임 기	평가시기
지원형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원광연	'17.10.23. ~ '20.10.22.	1차
기초과학연구형	국가수리과학연구소(NIMS)	정순영	'18.1.30. ~ '21.1.29.	2차
교육 및 인력양성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성철	'17.2.23. ~ '21.2.22.	3차

□ 실시 일정

- 기관장 임기 만료일을 고려하여 차수별로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실시

* 1차(1월~4월), 2차(5월~8월), 3차(9월~12월)

《 연간 평가 일정 (안)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합평가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자체		상위		자체		상위		자체		상위	

※ 일정은 실제 기관장 취임·퇴임 시기 및 관계부처·연구회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기관장이 중도 사퇴할 경우 평가방안

사퇴 시기	평가실시 방안 및 시기	평가결과 활용
취임 ~ 취임 후 1년 6개월	○ 평가 없음	○ 이전평가 등급 활용 - 단, 기관장 성과연봉은 미지급
취임 후 1년 6개월 ~ 임기종료 전	○ 종합평가 실시 (사퇴 후 가장 빠른 차수의 종합평가 일정 적용)	○ 종합평가결과 활용 내용 준용

□ 종합평가 방안

- 연구(80%) 및 연구지원(20%) 부문에 대해 성과목표별 달성도 평가와 성과의 질적 우수성 등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 실시
 - (연구 부문) 목표 달성도 40% + 전문가 정성평가 60%
 - (연구지원 부문) 목표 달성도 60% + 전문가 정성평가 40%
- 연구 부문과 연구지원 부문의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5등급(매우우수~매우미흡)으로 구분

(가) 연구지원부문

- 연구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영역별 성과목표 달성도 점검과 연구지원 부문(공통 3개 영역) 통합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등급 부여
 - 연구지원 및 현안대응 영역*은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이행 노력 성과, 예측 어려운 정책 및 기술 환경 변화 등에 대한 기관의 대처 내용(성과) 및 필수 반영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지원 실적에 대하여 정성평가 100% 실시
- * 평가수행기관 및 자체평가위원회는 기관특성을 고려하여 피평가기관에 필수 평가항목 통보
- * '기관 R&R 이행 실적', '주요사업(과제)정보 관리 충실도(R&D조사·분석 시 최소 관리과제 단위 입력, 과제정보(연구목표·내용, 기대효과 등)의 명확성 등)', '갑질 예방대책 추진 실적' 필수 점검
- ※ 통합 정성평가 시 외부 지적사항을 정성평가등급 산정에 반영(평가의견에 반드시 언급)

(나) 연구부문

- 연구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최종 성과목표별 달성도 점검 및 전문가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등급 부여
 - 성과목표 미달성 시 최초 목표치의 도전성, 미달성 사유(환경변화 등) 및 기타 성과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정성평가에 반영
 - 중간컨설팅 시행 시 실시된 컨설팅 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 점검
- 연구성과계획서 점검 시 세계적 수준의 도전·혁신목표로 인정된 경우 달성도 평가 미실시 및 정성평가 기본점수 60% 부여
-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시 제시 한 전략목표별 정책(연구)수요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는 정성평가 및 기관발전전략에 활용

□ 평가 대상

○ 기관장 취임 이후부터 자체평가 직전 월까지 실적

* 4/4분기 기관장 취임 기관은 취임년도 실적(목표치 미제시)에 대한 목표 달성도 미실시

[공통 사항]

- 기관장 임기 종료까지 발생이 예상되는 성과는 '전문가 정성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나, '목표 달성도'에는 미반영
- 연도별로 목표치는 자체평가 직전 월까지 월할 계산하여 계획 대비 실적 평가
 - 특수성이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에 따라 예외사항으로 인정 가능
 - * 연도별 추이 및 연구흐름 등을 주요 내용으로 1쪽(성과목표별) 이내로 작성(서술형 지양)
- 공공기관 통합공시, 자체감사활동 등 외부 평가결과 적극 활용
- 기존 실적 보고서 분량 제한 폐지 및 평가의견과 종합분석 의견 간 연계 강화

○ 당초 설정된 목표·지표 이외의 새로운 성과*도 평가에 포함

* 외부 환경의 변화,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성과는 관련이 높은 성과목표에 연구기관이 제시하며, 해당 성과목표의 '정성평가' 시 반영

○ 연구성과는 연구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 또는 NTIS 등록·기탁된 성과*만 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3항에 의한 논문, 특허, 화합물, 생명정보, 생물자원, 신물질, 연구시설·장비, SW 등

구분	인정 기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지정 사항* 준용 * 질적 지표 활용, 저자 역할(제1저자, 제2저자, 교신저자) 등
특허	국내외 특허등록 기관에 등록된 특허
기술료	계약체결 후 기관의 수입으로 입금된 기술료

○ 융합연구에서 창출된 성과의 인정 범위

- 예산 투입비율에 따른 계획과 실적을 산출하여 사용

※ 연구기관 내에서 동일한 성과를 다른 성과목표에 중복 불인정

□ 세부 평가 방안

(가) 종합분석

- 모든 영역(연구지원) 및 성과목표(연구/자율)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분석 시행
 - 연구부문 전략목표별 투입과 성과에 대한 종합 분석·평가의견
 -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지원부문 추진성과의 효과성 분석
 - 기관의 당면 과제(주요이슈) 및 미래 발전전략(전략목표별) 등을 별도로 제시
 - ※ 주요 이슈 및 미래 발전전략의 경우 기관 내부 심층 인터뷰를 통한 대정부 정책 건의 사항 등 포함

(나) 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별 달성도(평가대상기간 동안 계획 대비 실적 비율)를 점수화
 - ※ 성과지표 성격에 따라 ‘누적형’, ‘독립형’과 ‘최종형’으로 구분하여 산출
- 성과목표 간에는 중복성과 불인정, 타 기관과의 공동성과는 기관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반영
 - * 기여도 산정이 불가피할 경우는 정성평가에서 고려

《 목표 달성도 산출 예시 》

성과지표		구분	n-1	n	n+1	n+2	목표 달성도
증가형 (누적형)	○○ 울	계획		4	5	7	$(6-3)/(7-3) \times 100$ = 75.00%
		실적	3	4	5	6	
증가형 (독립형)	○○ 수입	계획		24	29	41	$\{(23.5/24) \times 12/28 + (29.3/29 \times 12/28) + (40/41 \times 4/28)\} \times 100 = 97.20\%$
		실적	20	23.5	29.3	40	
증가형 (최종형)	○○ 오차율	계획		10	7	3	$3/3 \times 100 = 100\%$
		실적	13	11	8	3	
감소형 (최종형)	○○ 오차율 (% 이하)	계획		10	7	3	$3/5 \times 100 = 60\%$ (x) $(13-5)/(13-3) \times 100 = 80\%$ (O)
		실적	13	11	8	5	

- ※ 달성도 점검 시 증빙자료에 근거한 객관적 달성도 산정, 인정달성도 산출식 및 (불)인정 사유 기재
- ※ 정성적인 성과지표(예, oo 계획 수립, oo 개발 또는 기반구축 등)의 경우에도 달성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도 인정기준 및 의견 기재

(다) 전문가 정성평가

- 전문가 정성평가는 성과에 대한 질적 우수성 위주로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평가요소를 도입하여 시행

※ 기존 질적 우수성, 달성과정의 적절성, 목표의 도전혁신성 등의 정성평가 사전 고려 항목 폐지

구분	정성평가 시 고려 사항 (예시)
질적 우수성 (필수)	국제적 수준, 국내외 공인기관에 의한 평가인증 결과, 정부 공식 발표자료 및 외부 지적사항(국회, 감사 등) 등
달성과정의 적절성 (선택)	성과목표 달성과정의 계획대비 체계적인 이행 여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달성 여부 및 외부 지적사항(국회, 감사 등) 등

- 성과목표의 특성 등을 고려, 상기 항목 중 선택 또는 이외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성과목표에 따라 1개 내지는 1~2개의 항목만으로 평가 가능
- 기관장 중도 사퇴 시 성과 미진 성과목표별 임기 내 예상 성과 및 중도사퇴로 인한 영향분석 결과 반영
- 성과목표(추진계획)별로 5단계 평가등급(S~D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 부여된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전문가 정성평가 등급 및 점수 부여 기준 》

등급	S	A	B	C	D
등급별 가중치	1.0	0.75	0.5	0.25	0.0

[정성평가 시 고려 항목]

-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토대로 이의 목표 달성도, 외부평가결과,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성과목표 달성/미달성, 기관장 임기 종료까지의 예상 연구성과, 정부의 정책 등에 의한 새로운 성과, 초과달성 성과, 중간컨설팅 평가 결과 이행, 각 기관별 정책(연구)수요자 및 육성전담부서심층 인터뷰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등급 부여* 시행

* 자체평가위원회는 기관특성 및 성과목표의 임무유형에 따라 각 요소의 비중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음
(예: 연구지원부문은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요소를 제외, 기초연구형은 달성과정의 적절성 제외 등)

□ 종합점수 산출

○ 세부성과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등급 부여

- 목표 달성도는 0~100%, 전문가 정성평가*는 5단계 등급(S~D)으로 평가하고, 각 평가결과를 **4:6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여 점수 산출

※ 연구지원부문의 경우 성과목표별 목표 달성도 60%, 통합정성평가 40% 비중으로 점수 산출

- 세부항목별 배점에 평가점수를 승산하여 세부항목별 종합점수 산출

※ 세부항목별 종합점수 = 배점 × 평가점수 (1.0 만점) [= 목표 달성도(0~100%) (0.4점 만점) + 5단계 전문가 정성적 평가(S~D) (0.6점 만점)]

《 성과목표(영역)별 평가점수 산출 예시 》

성과목표 (배점)	성과지표 (비중, %)	목표 달성도		정성평가	
		달성도(%)	점수	등급	점수
연구수월성 중심 경영체제 강화 (15)	영향력지수 상위 20% 이상 논문 (20)	95	$15 \times [(0.20 \times 0.95) + (0.20 \times 1.00) + (0.30 \times 0.91) + (0.30 \times 0.84)] \times 0.4 = 5.49$	A	$15 \times 0.75 \times 0.6 = 6.75$
	SMART 5등급 이상 특허 성과 (20)	100			
	평가 모델링 기술(30)	91			
	분석기술 고도화(30)	84			
해당 성과목표 점수(점)		5.49 + 6.57 = 12.24			

※ 성과목표 점수 최종 산출 시 소수점 둘째자리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세부항목별 종합점수 합산을 통하여 부문별 합산점수를 산출하고, 가중치를 반영하여 **5단계 최종등급(매우 우수 ~ 매우 미흡)** 부여

《 평가별 / 부분별 비중 》

부문	종합평가	가중치
연구	100%	0.8
연구지원	100%	0.2

《 종합점수에 따른 최종 등급 부여 방안 》

기관평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종합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 **종합점수 산출 시 가·감점 기준**

○ **가점 항목**

- 적용 대상 기간 : 기관장 취임 이후 ~ 종합평가
- 가점 한도 : **최대 2점** (세계 유수의 상은 한도 외로 적용)

대상항목	가점 기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0.1점/건
(연구부문) 국무총리 표창(상) 이상 포상 (개인, 기관 포함)	국무총리: 0.1점/건, 대통령: 0.2점/건, 포장: 0.3점/건, 훈장: 0.5점/건
(비연구부문) 대통령 표창(상) 이상 포상 (개인, 기관 포함)	대통령, 포장, 훈장: 0.1점/건
세계 우수*의 상(노벨상, 필즈상 등)	1점~10점/건

* 자체평가위원회가 객관적 근거자료(연구계 및 언론 등)를 참고로 인정여부 결정

○ **감점 항목**

- **건전한 평가문화 저해* : 3점** (최대)

*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저하, 평가기간 중 평가위원회/부처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 등 공정한 평가 저해, 평가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하는 허위자료, 과장자료, 실적 미 부합 등 불성실한 자료 및 무분별하고 과도한 소명자료 제출

* 평가위원회와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거나 평가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

* 불성실 자료 제출과 과도한 소명자료 제출, 보안 서약서 위반 등을 구분하여 최대 3점내에서 합산하여 감점 처리

※ (예시) 연구기관 성과보고서 대비 성과 불인정 비율에 따른 감점

· 불인정률 5% 이상 ~ 10% 미만 : 0.3점, 10% 이상 ~ 25% 미만: 1.0점, 25% 이상 ~ 40% 이하: 1.5점, 40% 이상: 3.0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 위반 시 연구지원부문의 통합정성평가에 반영

- 종합평가 및 계획서 점검에 대한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결과에 따라 최대 3점 차감**

지연·미이행률	5%이상 ~ 10%미만	10%이상 ~ 25%미만	25%이상 ~ 40%미만	40%이상 ~
감점	-0.3점	-1.0점	-1.5점	-3.0점(최대)

※ 중요도를 고려하여 지연은 0.5, 미이행은 1.0의 가중치 부여

목표 달성도 산정 예시

● 성립요건 적용 예시

유형	성과지표	기관 제시 달성도			산정	인정 달성도
		목표	계획 수립 및 적용	실적		
평가기준 미이행	성과연봉제 적용	목표	3개 계획(안) 수립	100%	미실행된 '적용' 부분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만 50% 인정	50%
		실적	3개 계획(안) 수립			
평가대상 기간 불일치	정부 3.0 확산	목표	공공데이터 6건 개방	200%	12건 중 평가 대상기간 중 실적이 아닌 6건 제외	100%
		실적	12건 개방			
목표 내용 불일치	친화적 연구비 관리	목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100%	제도개선으로 제시된 성과가 친화적 연구비 관리에 적합하지 않아 50%만 인정	50%
		실적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 차감요인 적용 예시

유형	성과지표	기관 제시 달성도			산정	인정 달성도
		목표	실적	실적		
허위 부당 실적	핵심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 조직 설립	목표	4건	100%	실적 중 1건이 서류상 조직으로 판명되어 달성도 25% 차감	75%
		실적	4건			
과다계상	논문게재	목표	100건	120%	실적 중 60건이 타 기관과 공동융합연구를 통해 게재되어 60건 중 50%만 인정	90%
		실적	120건			
질적 수준	국제 컨퍼런스 개최	목표	3회 개최	133%	모든 실적이 국외 연구자는 초빙 연사나 패널 참여 등에 한정되고, 실제 성과 발표·보고는 국내 참여자가 절대 다수 차지하여 모두 불안정	0%
		실적	4건 개최			

연구지원부문 평가방법

구분	영역	목표달성도 평가 (가중치 60%)	정성 평가 (가중치 40%)
계획 수립	임무중심형 연구환경 조성	각 영역 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별 달성도 평가 (기존 평가방법과 동일)	기관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통합 정성평가 ※ 기관장 취임 이후 기관운영 실적에 대한 종합적 평가
	효율적 기관운영		
	성과관리· 활용·확산		
현안 대응	현안 대응 및 경영 자율		현안 대응 노력 중심 정성평가

- ※ 통합 정성평가 시 외부 지적사항을 정성평가등급 산정에 반영(평가의견에 반드시 언급)
- ※ '현안대응 및 경영 자율' 영역에 대한 평가항목은 평가수행기관 및 평가위원회에서 R&D정책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하여 피평가기관에 통보(피평가기관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평가내용 및 평가항목 개수 고려)

평가점수 도출방안(연구 예시)

성과목표 1. ○○○○				
배점 ^a	평가점수 ^b			종합점수 ^{bxa}
a	인정 목표 달성도	k	b = (k x 40%) + (m x 60%)	b x a
	전문가 정성평가	m		

□ 평가점수(b) = [인정 목표 달성도 (40% 반영) + 전문가 정성평가 (60% 반영)]
 < 목표 달성도 : 40% >
 ○ 기관이 제시한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를 기준으로 성립 요건, 차감 요인에 따라 인정 목표 달성도 산정하고 가중 합산하여 성과목표의 인정 목표 달성도 산출
 ※ 성립 요건 : 평가대상기간 내 성과, 평가지표별 목표의 내용에 부합하는 성과, 성과계획서에 명시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성과인지를 검토 후 부적절 시 달성도에서 차감
 ※ 차감 요인 : 허위 또는 부당 실적, 과다 계상, 질적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실적으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달성도에서 차감
 * 기관 제시 달성도 100% 초과 시 100%까지만 인정

< 전문가 정성평가 : 60% >
 ○ 평가위원의 정성적 판단에 따라 S(매우 우수)에서 D(매우 미흡)까지 5단계 등급(안)을 부여하고,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여부 검토 후 최종 등급 부여
 ※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여부가 부적절 시 등급(안) 한 단계 강등
 ※ 최종 등급에 따라 0.0~1.0점 부여

< 평가점수 = 목표 달성도 + 정성평가 >
 ○ 평가점수(b) = (인정 목표 달성도 k x 40%) + (정성평가 m x 60%)
 ※ 예1) 인정 목표 달성도가 90%, 전문가 정성평가가 'B'인 경우 :
 평가점수 0.66 [= 0.36 (= 0.9 x 40%) + 0.30 (= 0.5 x 60%)]
 ※ 예2) 인정 목표 달성도가 110%, 전문가 정성평가가 'C'인 경우 :
 평가점수 0.55 [= 0.40 (= 1.0 x 40%) + 0.15 (= 0.25 x 60%)]

□ 종합점수(bxa) = [평가점수 b x 배점 a]
 ※ 예) 배점이 10인 지표의 평가점수가 0.84인 경우 : 종합점수 8.4 (= 10 x 0.84)

□ 평가결과 활용

① (기관장 성과연봉) 종합평가 최종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종합평가 때까지 기관 자율적으로 적정 성과연봉을 결정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정산 실시

※ 중도사퇴로 인한 평가 미시행 시, 기관운영 및 연구성과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기관장 성과연봉 미지급 원칙

기관장 성과연봉 지급 방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본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율	최대 39%	최대 33%	최대 27%	최대 21%	0

* 기본연봉 :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

② (능률성과급) 결산잉여금에 대한 능률성과급*은 종합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률 차등 적용

* 종합평가 실시까지 직전 평가 등급으로 지급률 적용

기관평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능률성과급 지급률 (%)	50	47.5	45	42.5	40

③ (임무 및 기능 조정) 종합평가 결과 연속 최하등급을 받거나 기관고유임무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 세부 성과미흡 조직(센터, 연구그룹 등)은 임무 조정

④ (예산연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결과 확정 이후 첫 주요사업비*, 기관운영비 등 기관 고유임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연계·조정

* 평가 차년도 예산검토 시 성과가 우수하거나 미흡한 '전략목표'와 연계되는 주요사업비 조정

기관평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예산연계	5% 이상 증액	3% 이상 증액	-	5% 삭감	10% 삭감

⑤ (우수성과 발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기관 및 공로자는 정부포상(기관, 개인) 추천

⑥ (계획서 연계) 종합평가의 평가결과를 연계·활용하여 차기 계획서를 수립하고 기관 미래발전(운영) 방향 도모

* 계획서 수립 시 평가결과의 이행내역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기관 성과 점검 및 계획 수립에 대한 자율성·책무성 부여

⑦ (기타) 미흡기관 컨설팅 등 연구 현장에 밀접한 종합평가 결과 환류 정책 마련

□ 종합평가 운영 방안

- **(전략회의)** 평가위원의 평가이해도 제고 및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심층 워크숍 형태의 전략회의 실시
 - 평가제도 개요 및 정책방향 소개, 평가 착안사항 제시, 기관 현황 설명 등 평가체계·제도 관련 사전 교육 이외 컨설팅·자문 기능 및 역할의 집중 교육을 추가하여 컨설팅 지향형 평가 강화
 - 평가대상기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연구부문 질적 분석자료에 대한 심층 논의 및 피 평가기관과의 질의응답 시간 확대 실시
 - ※ 필요시 평가대상기관 연구자와 평가위원 간 심층 인터뷰 실시
- **(현장평가·수요자인터뷰)** 현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평가대상기관의 평가결과 수용성 강화를 위하여 수요자인터뷰 병행 추진
 - 현장평가 대면질의 시 실무 담당자 위주의 심층·대면 회의형태로 진행함으로써 평가의견의 실효성 제고
 - 기존 외부 고객 위주의 수요자 인터뷰 대상을 내부 정책수요자로 확대 반영함으로써 기관의 주요 이슈 및 애로사항에 대한 고려 제고
- **(소명의견 검토회의)** 소명의견에 대한 적정성 논의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소명의견 검토에 대한 평가위원 간 합의 강화
 - 소명의견 검토회의 시 부문별 평가위원회 전체가 참여함으로써 평가의견의 일관성 제고
 - 평가위원회 전체가 기관 미래 발전전략에 대하여 종합 논의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개별 정성의견과 종합분석 의견간의 연계성 제고
- **(확정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대상기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대면 소명 절차 및 평가의견과 등급 간 종합·조정 대폭 확대
 - 확정회의 시 기관의 대면 소명 시간을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평가 수용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평가의견 등급 부여에 대한 집중 검토를 실시하여 평가의견과 등급 간 연계·부합성 제고

□ 기관별 종합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위원장 포함 총 22인 내외로 구성
 - 유형별 평가위원장은 각 기관의 연구분야 및 평가경험 등을 고려하여 상설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기관별 종합평가위원회를 선정하며 필요 시 기관 특성 반영을 위해 위원 충원 가능
 - 기관별 직전 점검·평가위원을 중심으로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 및 기관이해도를 바탕으로 컨설팅·자문 기능 강화
 - 평가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의견 실명제 실시

《 2020년도 종합평가위원회 구성(안) 》



대상기관	분과	종합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한국과학기술원 	◦ 종합분석분과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평가위원장 (1) ◦ 연구지원부문 간사위원 (1)
	◦ 연구지원부문 소위원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부문 간사위원 (1) ◦ 종합분석위원 (4)
	◦ 연구부문 소위원회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지원부문 평가위원 (4) ◦ 멘토단 (4) ◦ 연구부문 평가위원 (8~10)
	◦ 멘토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사(전문기관) (1) ※ 간사위원은 종합분석분과 참여
3개 기관	4개 분과	22인 내외

※ 예산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종합평가 세부 일정

활동	일정		주요내용	비고	
추진계획 확정·통보	2019.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평가 추진계획 기관 통보 세부 제도개선 의견 수렴 	〈공통〉	
제도개선 활동 및 '20년도 평가편람 개발	2019.10~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벤치마킹 추진 2020년도 기관평가 평가편람 확정 	〈공통〉	
2020년도 세부 추진계획 설명회	2019.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편람 설명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 질의·응답 	〈공통〉	
〈 차수별 추진 일정 〉					
	〈1차〉	〈2차〉	〈3차〉		
	NST	NIMS	KAIST		
평가위원회 구성	'19.12월	4월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평가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확정 	
평가자료 접수	'19.12월 말	4월 말	8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성과실적보고서 접수 	
멘토단 사전분석 회의	'20.1월 초	5월 초	9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성과 질적 수준 분석 	
전략회의 개최	'20.1월 초	5월 초	9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위원 위촉 평가방법 및 세부전략 논의 	
서면평가	'20.1월 초부터 2주	5월 초부터 2주	9월 초부터 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별 서면검토 실시 평가의견 초안 및 질의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의견 초안 서면질의서
평가의견 검토회의	'20.2월 초	6월 초	10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현장평가	'20.2월 중순	6월 중순	10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장 인터뷰 정책(연구)수요자 인터뷰 연구성과실적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결과(안) 접수	'20.2월 중순	6월 중순	10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별 평가결과(안)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별 평가결과 (안)
소명의견 수렴	'20.2월 (2주)	2주	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기관 소명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명의견서
종합분석 회의	'20.3월 초	7월 초	11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분석 방안 논의 	
평가결과 확정회의	'20.3월 중순	7월 중순	11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별 소명사항 반영, 평가의견 수정·보완 평가결과 도출 및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평가 결과
기관평가결과 제출	'20.3월 말	7월 말	11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등급 및 평가결과 정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서 제출
상위평가 수검	'20.4월 중	8월 중	12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등급 확정 	
공개설명회	'20.4월 중	8월 중	12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결과 임직원 대상 설명회 	

※ 평가일정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6

추진 일정

일정	주요내용	비고
2019.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기관평가 추진계획 의견 수렴 ◦ '20년도 기관평가 편람 작성 및 의견 수렴 	-
2019.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기관평가 추진계획 및 편람 확정 / 기관 배포 ◦ '20년도 기관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안) 마련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상위평가 시행 (자체평가 '19.9~11) ◦ '20년도 기관평가 편람 설명회 ◦ 나노종합기술원 기관운영계획서 점검 시행 ('19.12~'20.2.) 	-
2020.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종합평가 시행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종합평가 결과 임직원 설명회 개최 	-
2020.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과학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기관운영계획서 점검 시행 (~'20.6.) 	
2020.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중간컨설팅 결과에 대한 적정성 점검 시행 (~'20.4.) ◦ 고등과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기관운영계획서 점검 시행 (~'20.7.) ◦ 고등과학원, 기초과학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연구사업계획서 점검 시행 (~'20.6.) 	-- 중간컨설팅 기관 자율 시행으로 일정 변경 가능
2020.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종합평가 시행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종합평가 결과 임직원 설명회 개최 	-
2020.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기관운영·연구사업계획서 점검 시행 (~'20.10.) ◦ '21년도 기관평가 추진계획 작성 및 의견수렴 ◦ '21년도 기관평가 편람 작성 및 의견 수렴 	-
2020.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상위평가 시행 ◦ 2차 중간컨설팅 결과에 대한 적정성 점검 시행 (~'20.8.) 	-- 중간컨설팅 기관 자율 시행으로 일정 변경 가능
2020.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학기술원 종합평가 시행 ◦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나노기술원 기관운영평가 시행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종합평가 결과 임직원 설명회 개최 ◦ '21년도 기관평가 추진계획 확정 및 직할 기관 송부 	-
2020.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도 기관평가 편람 작성 및 의견 수렴 ◦ '21년도 기관평가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 	-
2020.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도 기관평가 추진계획 확정 및 직할 기관 송부 	
202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학기술원 상위평가 시행 ◦ '21년도 기관평가 편람 확정 및 편람 설명회 ◦ 3차 중간컨설팅 결과에 대한 적정성 점검 시행 (~'20.12.) 	-- 중간컨설팅 기관 자율 시행으로 일정 변경 가능

붙임1 기관평가제도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편 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평가(연구+연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사업/기관운영 구분 	
연구부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퇴임 예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임기와 무관 (3개 정부지원 기관은 기존 유지)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임기와 연계(3년 또는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사업 특성에 따라 5년 또는 6년 (3개 정부지원 기관은 기존 유지)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취임 6개월 이내) →중간컨설팅(임기중, 기관자율) →종합평가(임기만료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직전평가 종료 직후 6개월내) →중간컨설팅(임기중, 기관자율) →연구사업평가 (계획기간 만료전 6개월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사업 단위와 별개로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수립 • 성과지표 달성도 정량평가 + 우수성과 정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사업(내역사업 및 정책지원사업) 단위로 전략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 달성도 정량평가 폐지 / 수행의 적절성, 성과의 우수성, 영향력 정성평가
연구지원부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퇴임 예정 기관 	〈좌 동〉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임기와 연계(3년 또는 4년) 	〈좌 동〉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계획서(취임 6개월 이내) →중간컨설팅(임기중, 기관자율) →종합평가(임기만료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운영계획서(취임 6개월 이내) →중간컨설팅(임기중, 기관자율) →기관운영평가(임기만료 6개월 이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지표 달성도(60%) 및 정성평가(40%) -연구환경 조성, 효율적 기관운영, 성과관리에 대해 기관자율로 지표 설정 •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정성평가(20%) -현안대응 중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지표 평가(30%) -외부평가 결과 활용 • 연구지원 정성평가(50%) -기관 자율적으로 목표 수립 • 현안대응 정성평가(20%)
	〈신설〉(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연구성과의 우수성 	

붙임2		전년대비 달라진 점	
부문	2019년도 세부계획	2020년도 세부계획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사업평가와 기관운영평가를 분리 연구사업평가 주기 확대(3·4년 →3·5·6년) 평가위원 풀 추가 확보 및 우수평가위원 재선임 전담 간사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위원회 위원풀 확대 운영 책임평가위원제 강화 선정위원회 일원화 (3개→1개) 컨설팅 지문 역할 강화한 평가위원 심층 교육 실시 지적사항 이행관리 체계 간소화 (반기별→평가 3회) 성과연봉 지급 기준을 기본연봉 비례로 변경 	
기관운영 계획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영역은 외부평가 활용 (30%) 자율영역은 자율 성과목표 수립 (50%) 기관 R&R 재정립 방안 반영 광주과학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나노기술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명절차 개선 적/부 명시 지양 및 점검 의견 중심의 컨설팅형 점검 지향 기초과학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고등과학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5개) 	
연구사업 계획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6년 단위 연구사업 계획서 수립 달성도 정량 평가 폐지 출연금 내역 사업 단위로 전략목표 수립 기관 R&R 재정립 방안 반영 광주과학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나노기술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명절차 개선 적/부 명시 지양 및 점검 의견 중심의 컨설팅형 점검 지향 기초과학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고등과학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5개) 	
중간컨설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R&R 재정립에 따른 컨설팅 실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컨설팅 실시 전 이행관리 점검 실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개) 	
기관운영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실시 목표달성도 평가 + 전문가 정성평가 연구지원부문 최대 20점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제도에 따른 기관운영평가 최초 실시 기관운영평가 100점 만점으로 최종 5등급 부여 외부평가 공동영역 평가 + 전문가 정성 평가 기관 R&R 이행 기여도 평가항목 신설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나노기술원 (2개)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 절반 이후 기관장 중도 사퇴시에 한해 종합평가 실시 * 취임 후 1년 이내 중도사퇴 시 기관장 성과연봉 미지급 반기별 현장 점검 실시 및 종합평가 시 점검 결과 반영 기초과학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고등과학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자 인터뷰 시 기관 발전 이슈 발굴 강화를 위해 내부 수요자 포괄하여 확대·운영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최대 3점 감점 실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개) 	

붙임3 **평가대상기관 외부 평가 수검 현황**

유형	연구개발형					교육 및 인력 양성형						지원형					
	고등 과학원	기초 과학 연구원	국가 수리 과학 연구소	한국뇌 연구원	한국 원자력 의학원	한국 과학 기술원	경주 과학 기술원	대구 경북 과학 기술원	울산 과학 기술원	과학 기술 연합 대학원 대학교	정책·시책	사업화	창비·공공 (교육·의료) 서비스				
구분											한국 과학 기술 기획 평가원	국가 과학 기술 연구회	과학 기술 일자리진흥원	국가 과학 기술 인력 개발원	나노 종합 기술원	한국 나노 기술원	
고객만족도	기재부	X	X	X	X	○	○	○	○	○	X	X	X	○	X	X	X
	과기부	○	○	○	○	X	X	X	X	X	○	○	X	○	○	○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권익위	X	○	X	X	○	○	○	○	X	X	X	X	X	X	X	X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기재부	X	○	○	○	○	X	○	○	X	○	X	○	○	X	○	○
공공기관 자체감사 활동실적평가*	감사원	X	○	X	X	○	○	○	○	X	○	X	X	X	X	X	X
	과기부	X	X	X	X	X	X	X	X	X	X	○	X	X	X	X	X
국가안전 대진단*	과기부	○	○	○	○	○	○	○	○	X	○	○	○	○	○	○	○
부패방지 시책평가	과기부	○	○	○	○	X	○	○	○	○	X	○	X	○	○	○	○
여성과기인 승진/채용 목표제	과기부	X	○	X	○	○	X	X	X	X	X	X	X	X	X	X	○
연구보안평가	국정원	○	○	○	○	○	○	○	○	○	○	○	○	○	○	○	○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	과기부	○	○	○	○	○	○	○	○	X	○	○	○	○	○	○	○
정보화 업무 성과관리 평가	과기부	X	○	X	X	○	○	○	○	X	○	○	○	X	X	X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과기부	X	X	X	X	X	X	○	○	X	X	X	X	○	X	X	X

* 해당 평가의 경우 기관이 제출 평가 수검 현황이 아닌 각 평가 실시계획 상 기재된 평가대상기관 표기
 ※ 평가 항목은 가나다 순으로 명기, 각 기관별로 3개 이상 수검 받은 평가만 제시
 ※※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구,연구관리체계평가)

붙임4 기관별 연구사업평가 평가주기 변화

설립목적	사업성격	기관명	평가주기		
			당초	변경(안)	
연구개발	연구개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5년	6년 (32개)	
		고등과학원			
		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5년	5년 (11개)
		한국원자력의학원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력양성 연구개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연구지원	연구지원 연구개발	나노종합기술원	5년	5년 (11개)	
		한국나노기술원			
정부 지원	정책지원	정책지원 연구개발	5년	3년 (3개) * 기관장 중도사퇴 시 평가	
	인재성장	교육·경력개발			
	기관지원·관리	기관지원·관리			
	성과활용·확산 지원	성과활용·확산 지원			

붙임5

과기정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방안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방안

▣ **추진방향**

- 자체평가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위원 참여 다양화
 - 민간위원장 주도의 상설화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 계획서 점검부터 컨설팅 결과점검, 평가(기관운영, 연구사업)까지 동일한 평가위원회가 수행토록 하여 전문성 및 기관이해도를 바탕으로 컨설팅자문 기능 강화
 - 산학연 및 민간단체까지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도록 평가위원 구성

▣ **세부 운영방안**

- (운영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구성단위) 직할기관의 임무 특성을 고려하여 3개 유형의 평가위원회 구성
 - ※ 임무 유형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유형별 소관 연구기관 평가를 전담하며 필요시 기관 특성 반영을 위해 평가위원 총원 가능
- (선정방법) 중앙부처 및 해당 출연기관 추천과 공모 병행
- (운영기간) 유형별 독립평가위원회에서 계획서 점검부터 평가(기관운영, 연구사업) 시까지 평가 실시
- (위원구성) 산학연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하되, 독립평가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강화
 - 평가위원장은 전문성, 공정성, 경험 등을 고려하여 민간분야에서 선정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제한은 없음
 - 평가위원은 연구부문의 경우 전략목표 수의 배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연구지원부문*은 3명 이상으로 구성
 - * 연구지원부문: 성과 활용, 연구인력 운영, 예산·연구윤리 체계 등
 - 평가위원은 평가위원풀을 2~3배수로 마련하여 선정위원회가 최종 결정
 - ※ 평가위원은 해당 기관의 연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산학연·민간단체를 고루 인배하되 기관특성을 고려
- (역할) 계획서 점검, 컨설팅 결과 점검, 기관운영·연구사업평가 수행 등
- (간사) 독립평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평가수행기관을 간사로 지정
- (위원총원) 평가위원 중도사퇴나 평가 참여 불가, 불성실 평가 및 평가분야 확대 등의 사유 발생 시 평가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평가위원 총원 가능
 - 매년 유관기관 추천 등을 통해 전문가 집단으로 평가위원 풀 재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은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한다.(시행시기 2019년부터)

※ '20년도 추진계획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시 운영방안 수정·보완 예정

붙임6 자체평가위원회 세부 권한 및 역할

구분	평가위원장	간사위원	종합분석위원	평가위원	멘토단	평가 간사기관
계획서 점검	총괄	○	-	-	-	-
	평가조정	○	○	-	-	△ (의견제시)
	평가	-	○	○	○	-
	수정 요청	-	○	-	-	○
	컨설팅	○	○	○	○	-
	평가위원 평가	○	○	-	-	○
중간 컨설팅	총괄	○	-	-	-	-
	평가조정	○	○	-	-	△ (의견제시)
	평가	-	○	-	○	○
	수정 요청	-	○	-	-	○
	컨설팅	-	-	-	○	-
	평가위원 평가	○	○	-	-	○
종합 평가	총괄	○	-	-	-	-
	평가조정	○	○	-	-	△ (의견제시)
	평가	-	○	-	○	○
	수정 요청	○	○	○	-	○
	컨설팅	○	○	○	○	-
	평가위원 평가	○	○	-	-	○

◆ 문의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 박태희 사무관 (044-202-4721, hee2606@korea.kr)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기관평가팀
 - 김현민 제도혁신센터장 (043-750-2349, tuffy@kistep.re.kr)
 - 김이경 기관평가팀장 (043-750-2429, kimyk@kistep.re.kr)
 - 김선교 부연구위원 (043-750-2491, sunkyo@kistep.re.kr)
 - 우기쁨 연구원 (043-750-2479, joygwoo@kistep.re.kr)
 - 정수현 연구원 (043-750-2519, shjung@kistep.re.kr)
 - 윤진상 연구원 (043-750-2631, yjs@kistep.re.kr)
 - 민지홍 연구원 (043-750-2656, jihongmin@kistep.re.kr)